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공 백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는 일상적으로 청소년문제행동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지만 학문적으로 문제행동에 대한 정의는 제 학자들간에 논의 되어야 할 것들이 많다. 이것은 청소년문제행동의 개념이 청소년이란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과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가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인 가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학문적으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제행동에 대한 접근이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문화인류학 등 제학문의 고유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정의와 개념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사전적 의미에서 문제는 2가지이다. 첫째는 문제란 난처하게 하고, 수학적 문제 같은 해결을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하며, 둘째는 어렵거나, 문제아 같은 까다로운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청소년문제행동은 청소년이 때때로 부모, 또래, 지역사회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갈등적인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범법적 행위(예를 들면, 성적폭행, 신체의 공격과 약물의 사용 등)나 범법적인 요건, 그리고 심리적인 고통을 초래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는 행동으로 간주된다.

또한 역사적 관점에서 문제행동은 1950년대 초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부적응'으로, 50년대 이후는 프로이드의 심리학적 영향으로 인하여 '정서적 장애'로 1960년대 후기에는 문제행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Frank M. Hewett & Feank D. Taylor. 1980)

현재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문제행동에 대한 정의는 타인 또는 자신에게 해를 주거나 재산상에 피해를 야기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청소년 문제행동은 청소년비행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문제행동에 포함된다. 즉,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이 법으로 금지하는 행동을 행하는 경우로서, 법률적이고 사회적인 분류이며 심리적이고 개인적 특성을 표현하는 용어는 아니다. 따라서 청소년문제행동의 범위에서 청소년비행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인 행위도 청소년문제행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한상철외 2003. p.23)

이와 같이 청소년문제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해 모호한 측면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범주별 하위과제에서 이에대한 관점을 연구 접근방법측면에서 제시하고, 종합보고에서는 청소년분야의 제학자들간의 학문적 논의를 통하여 그 의견을 학술적 측면에서 별도의 논의를 통해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범위를 청소년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9세-24세를 대상으로 하며, 그 유형을 학생청소년, 일탈 및 범죄 청소년, 탈북 및 귀국청소년, 여성청소년, 근로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에 따라 문제행동에 대해 접근토록 하였다.

오늘날 청소년(9세-24세)은 현재 총인구의 25.6%를 차지하고 있으며 1985년을 기점으로 느리게 감소하고 있다. 청소년의 남녀 성비는 남자 105 대 여자 100이며 신분별로는 학생청소년은 62%, 근로청소년 20%, 군입대 등으로 인한 복무청소년이 17%, 무직 및 기타 청소년이 1%정도이다.

청소년은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에서 그들의 열정적인 참여, 질서 그리고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구현 등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폭력, 성매매, 가출, 범죄, 약물중독, 게임중독등 심각한 문제행동에 대한 경험(10%이상)과 잠재적 문제행동 가능성에서 청소년 가치의식(청소년의 소외감 51.3%, 필요시 거짓말 36.1%, 편법이 이익 19.4%)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과 학교주

변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영향을 미쳐 사회문제로 고착화 될 가능성이 높게 제시되고 있다.(이종원의, 2002, pp. 10-55)

이는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급박하게 변화하는 외부환경 변화 적응하는 청소년을 육성해야하는 은 국가적 입장에서 볼 때 청소년문제 행동은 변화의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사회적 부적응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대책을 제시해야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구체적인 부문별 해결방안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청소년을 범주화하고 각 범주별 대상청소년의 특성과 중심문제에 대해 기술하는 것이 세분화된 청소년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위의 사안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청소년대상영역별 문제현상과 필요성을 제시한다.

① 근로청소년은 현재 전체근로자 중에서 13% 정도로서 아르바이트 및 임시직으로 일하는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청소년은 낮은 임금,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금전만능주의, 배금주의 사회풍조에 편성하고, 음주, 유흥업소 출입, 과소비의 주축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근로청소년들만의 독특한 문제행동성향을 연구하여 긍정적인 직업관과 사회관을 만들어가는데 요구되는 대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② 청소년범죄는 18-19세의 고연령층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14세에서 17세까지의 연소층의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으로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재산범의 비율이 적은 편이며 그 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과 폭력범의 비율이 높고 증가율도 높은 편이다. 따라서 청소년 세계에서의 비행 및 범죄경험과 확산과정, 그리고 재범의 원인과 실태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문제행동에 대한 예방과 대책 마련에 제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③ 탈북청소년은 아직까지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귀국청소년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그 규모가 차이가 높으나 현재 IMF이후 지속적인 증가하고 있으며 구체적 통계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약 5만여명 정도가 된다. 현재 탈북청소년과 귀국청소년들은 문화적 충돌과 한국사회 적응 과정에서 학업부적응, 진로 및 직업선택의 어려움, 부정적인 사회관계망 형성과 사회적 갈등 등 문제행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주변 청소년에 대한 문화적 영향과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청소년 문제행동 현상은 청소년이 오늘날과 미래 우리사회의 공존하는 존재로서 청소년의 사회적 역작용이 심각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문제행동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의 축적하고, 예방 및 대책방안 수립하는 것은 청소년이 역동적이고 올바른 삶의 가치를 갖도록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에 대한 자료축적을 통한 현상을 규명하고, 사례조사를 통한 예방과 대책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실행가능한 정책적인 전략을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문제행동에 대한 예방과 종합대책을 위하여 다음의 연구내용을 수행한다.

○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

- 하위 주제별 예방 및 정책 대안 요약
- 청소년문제행동에 대한 예방과 대책관련 국외 사례분석

○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 특성분석 및 기초 조사
-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사례제시

- 일탈 및 범죄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 일탈 및 범죄청소년의 문제행동 특성분석 및 기초 조사
 - 일탈 및 범죄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사례분석

- 탈북 및 귀국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 탈북 및 귀국 청소년의 문제행동 특성분석 및 기초 조사
 - 탈북 및 귀국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사례분석

- 근로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 근로청소년의 문제행동 특성분석 및 기초 조사
 - 근로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사례분석

- 여자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 여자 청소년의 문제행동 특성분석 및 기초 조사
 - 여자 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사례제시

3. 연구방법

1) 연구추진방법

○ 본 연구의 연구방법의 특성은 전문연구기관간 협동연구를 수행하는 과제으로써 한국청소년개발원이 본 과제의 주관기관이 되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형사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음.

수행기관	기관별 과제명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 대책 연구
통일연구원	탈북 및 귀국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일탈·범죄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근로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여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

○ 연구책임자 회의 : 본 연구의 통일성 및 내용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연구책임자 회의를 통하여 연구내용, 이론적 배경, 공통 조사항목 등에 대한 상호통일성을 기함

2) 연구방법

○ 실증적 연구 :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에 관한 객관적 1차 자료와 2차자료로 질문지와 면담을 통한 조사결과 자료를 종합 분석한다.

○ 전문가 자문회의 및 평가회의 : 연구방향과 내용에 대한 외부인력의 자문과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학술 워크숍 : 청소년문제행동에 대한 제학자들간의 의견수렴을 통한 통일적 개념화를 추구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외부적 발표를 통하여 학문적 파급효과를 가져오하고자 한다.

II. 학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대책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및 시사점
5. 효과적인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대책

공 백

II. 학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대책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는 단순한 지식의 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휴일과 방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생활의 장으로서도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오늘날 사회가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점차 약화됨에 따라 학교는 교육과 사회화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는 기관으로써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가 입시 위주의 교육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학생이나 학부모, 또 사회가 기대하는 만큼 충분히 그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대화의 광장(1992)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주된 고민의 1위와 2위가 각각 성적과 진로 문제로 나타났듯이, 입시위주의 교육은 대다수의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성취와 관련된 압력과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입시위주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오직 공부만을 강요하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다른 소질이나 취미를 살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학생들로 하여금 소외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며 또한 학교에 대한 흥미를 잃고 방황하게 만들고 있다(김준호, 1990; 김준호 외, 1993).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성적이나 진학문제로 인한 자살이 전체 청소년 자살인구의 31%나 될 정도로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심하게 느끼고 있다고 한다. 또한 시험을 앞두고 불안정도가 높아져서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을 보이고 있는 학생들도 상당수에 이

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이중, 1992; 한준상, 1995). 교우관계 역시 경쟁적인 인간관계로 인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황정규, 1990).

증가 추세에 있는 중도탈락¹⁾ 학생과 전체 학생의 10%를 차지하는 학교가 어쩔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들에게 있어 학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장소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학생의 부적응 문제는 예방과 보호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에게 예방 및 보호 차원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하며, 또한 학교 제도에 있어서도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에서는 지식위주의 학교교육과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부적응 학생의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 청소년들은 어떤 문제행동을 보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문제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는 얼마나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도상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나아가 각종 학교 청소년 문제들의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한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1) 입학생 수 대비 졸업생 수로 산출한 학업 중단 청소년은 2000년 기준 4%인 70,721명에서, 2001년 5%인 72,741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2000년의 경우 입학생의 약 4%가 재학 중 학업을 중단하였고, 2001년의 경우 약 5%가 학업을 중단하였다. 현재 고등학교 졸업이 당연시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각급의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미졸업률과 다음 학교로 진학하지 못한 비진학률을 적용하여 고등학교 졸업에까지 이르지 못한 비율을 계산하면 10% 정도가 된다. 또한 현재 학교에는 학교에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들도 존재하고 있고 규모는 전체 학생의 거의 10%에 이른다(윤여각 외, 2002)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영역 및 범위 탐색

- 효과적인 지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영역과 범위를 탐색한다.

2)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실태 분석

(1)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현황 파악

-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내용, 문제행동의 경험, 행동의 유형, 행동 표출의 정도 분석 등 문제 현황을 파악한다.

(2) 문제행동의 원인 탐색

-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예: 학습 측면/ 생활 측면)을 탐색한다.

(3) 학생의 고민이나 갈등 해결 양상 분석

- 문제행동별 학교 청소년들의 고민 및 갈등 해결양상을 학교급별, 성별로 분석한다.

3)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지도 실태 분석

(1)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파악

- 교사 및 학부모의 문제행동 파악 정도, 문제행동 파악 방법, 문제행동 파악시의 애로사항 등을 알아본다.

(2)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 실태

-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행동 지도 현황, 방법, 내용, 문제점 등 현장지도 실태를 파악한다.

4)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 대책 탐색

- 예방 및 사후지도의 차원에서 문제행동의 형성 배경과 요인, 문제행동의 내용, 문제행동 지도 접근 및 방법과 단위학교 수준 및 사회, 국가차원에서의 역할을 탐색한다.

3. 연구방법

1)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

-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국내·외 관련문헌 및 선행연구, 관련 통계자료 및 조사도구 검토·분석

2)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 관련 상담사례 분석

- 학교 청소년 문제의 실상을 분석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의 상담사례 수집, 검토 및 분석

3)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 분석 및 예방·대책을 위한 조사 실시

-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조사도구를 제작하기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한 면담 실시
-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실증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학년(초등 5, 중2, 고2: 고등학교의 경우 인문, 실업)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성(남, 여)을 고려해 표집한 200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 150여명의 관련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질문조사 실시

4) 전문가 의견수렴

-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지도 대책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

4. 연구결과 및 시사점

연구결과 및 시사점은 연구내용별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영역 및 범위 탐색

청소년기의 연령을 규정하는 데는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며, 관련법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 연구가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에 초점을 둔다고 할 때, 이 역시 학교 청소년의 연령을 규정하는 것과 같이 어떤 기준이나 범위에 한정해 문제의 내용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관련 문헌 검토이나 면담결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김진화 등(2002)에 의해 제시된 문제행동에 대한 분류의 경우,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대상(예: 청소년 폭력)과 장소(예: 가정 부적응, 학교 부적응), 그리고 문제의 특성(예: 성일탈, 유해시설 접촉)등이 함께 혼재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현장교사를 대상으로 한 면담 결과에서도 학생들의 문제 행동이 50여 가지에 이를 정도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문제 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공통의 몇 가지 기준에 의해 구분되고, 접근될 필

요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가 특히 학교 청소년에 한정해 수행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문제 중 어떤 문제가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인지, 이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영역과 범위를 탐색해 보기 위해, 관련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1) 관련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 결과

관련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결과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청소년 문제행동과 특별히 학교 청소년의 문제행동간에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예컨대 하영근과 최상은 청소년 문제행동의 영역을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의 세 가지로 범주화 하였고, 김진화 등은 심리적 문제, 가정부적응 문제, 학교부적응 문제, 청소년 폭력, 유해약물 오용 남용, 성일탈, 유해미디어 이용, 유해시설 접촉, 청소년 범죄 등 아홉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또한 이종원 등은 규범적 문제행동, 법률적 문제행동, 사이버 문제행동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영역 중 학교와 관련된 영역으로는 김진화 등의 경우 ‘학교부적응 문제 영역’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집중력부족’, ‘성적저하’, ‘시험불안’, ‘공부에 대한 무관심’, ‘중퇴’, ‘학교공포증’, ‘등교거부’, ‘중도포기’, ‘학교회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종원 등의 경우, 학교나 학생에 관한 문제행동은 주로 규범적 문제행동 영역에 치중되며, 규범적 문제행동의 영역에는 ‘화장’이나 ‘머리염색’ 등 학생의 의복, 용모와 관련된 표출형 문제행동, ‘음주’ ‘흡연’ ‘음란 포르노물 열람’ 등의 유흥이나 풍속형 문제행동, ‘부모님이나 교사에 대한 반항’과 같은 권위 반항형 행동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이러한 학생관

런 문제행동은 일부 사이버 문제행동의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학교관련 영역의 문제행동들은 학교 부적응 관련 연구에 제시된 ‘학교 부적응 유형’과 유사하다. 즉 한국청소년 연구회(200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업관련 유형’, ‘학교폭력관련 유형’, ‘학교교칙관련 유형’, ‘교우관련 유형’ ‘문화적차이 및 정서장애 관련 유형’ 등 5가지의 학교부적응 유형은 특정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기보다는 대체로 학생 신분으로서 해서는 안되거나 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는 내용들이라는 유사성을 갖는다.

기존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에서도 학교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일반적인 청소년 문제행동으로 제시된 문제행동의 영역보다는 축소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김순홍 외(2003)의 ‘청소년 생활 통계연보 2003’에 의하면, 청소년 문제 행동의 내용으로 제시된 사항 중 학교 청소년의 경험률이 높은 문제행동은 ‘흡연(56.8%)’,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비디오 시청(77.9%)’, ‘음란도서 열람(56.8%)’ 및 ‘컴퓨터 CD나 인터넷 사이트(68.0%)’ 등이었으며, ‘환각제나 본드, 부탄가스 흡입(1.1%)’은 거의 극소수의 학생들만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2.8%의 학생들만이 ‘어른 몰래 술을 마신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많은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학교 청소년의 문제행동 범위가 좁혀질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말은 극소수의 학생들만이 경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취급하자는 뜻은 아니다. 극소수의 학생이 경험하는 문제행동을 많은 학생이 경험한다는 전제하에 우선적으로 강조함에 따라 실제로 쉽게 예방 지도할 수 있는 문제행동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질문조사 결과

학생 질문조사 결과, 흔히 발생하는 문제 행동으로는 전체 20여 가

지의 문제행동 중 8가지로서 '수업관련', '학교 교칙 관련 행동', '폭력 관련 행동', '사이버상의 음란 사이트 접촉' 등에 관한 행동이었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가 생각하는 학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행동은 학부모의 경우, ① 집단따돌림 (13.7%), ② 불손한 언행 및 비속어 사용 (13.7%), ③ 수업태도 불량 및 학습의지 저조(12.4%), ④ 음주흡연 (7.7%), ⑤ 음란물, 음란사이트 이용(7.6%), ⑥ 부모님과 선생님 속이기(6.6%), ⑦ 늦은 귀가, 무단결석 및 가출(5.8%), ⑧ 불건전한 이성교제 및 성관련 문제(4.9%)이었으며, 교사의 경우는 ① 수업태도 불량 및 학습의지 저조(30.6%), ② 불손한 언행 및 비속어 사용(21.7%), ③ 집단 따돌림(8.9%), ④ 음란물, 음란사이트 이용(8.3%), ⑤ 부모님과 선생님 속이기(7.6%), ⑥ 늦은 귀가, 무단결석 및 가출(4.5%), ⑦ 폭력사용, 패싸움 가담(4.5%)이었다.

<표 II-1> 흔히 발생하는 학교청소년 문제행동 (순위별 결과)

문제행동	조사대상 수	실제 경험자 수	조사대상 수	경험에 대한 생각(해도 된다)
1. 수업시간에 딴 짓하는 것	2052(100.0)	1304(63.5)	2078(100.0)	322(15.5)
2. 수업시간에 잠자기	2052(100.0)	1126(54.8)	2082(100.0)	650(31.2)
3. 수업시간에 불손한 언행	2045(100.0)	612(29.9)	2088(100.0)	156(7.5)
4. 지각, 결석	2044(100.0)	583(28.5)	2085(100.0)	481(23.1)
5. 용의 복장 위반	2041(100.0)	447(21.9)	2083(100.0)	642(30.8)
6. 공공장소에서 소란 피우기 및 공공기물 파손	2035(100.0)	304(15.0)	2089(100.0)	71(3.4)
7.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및 음란사이트 접촉	2034(100.0)	293(14.4)	2093(100.0)	208(9.9)
8. 집단 괴롭힘	2033(100.0)	152(7.5)	2094(100.0)	70(3.3)

질문조사 결과 역시 관련 문헌이나 기존의 통계자료에서처럼 학교 청소년 문제 행동의 영역과 범위가 수업이나 학교 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일반적인 청소년 문제행동의 영역에 비해 축소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문헌 검토 결과, 학교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지도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청소년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 접근은 학교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에 초점을 두어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 청소년 문제 행동의 영역 및 범위의 설정과 관련하여 학교 청소년 문제 행동은 흔히 발생하는 문제 행동과 발생하는 비율이 낮은 문제 행동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이때 흔히 발생하는 문제 행동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문제로, 학교 수업, 학교 생활(특히 친구 관계, 규칙위반 등)에 관한 내용이며, 발생률이 낮은 문제 행동은 비교적 심각한 수준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다. 학교 청소년 문제 행동의 비행화 과정에 비추어 흔히 발생하는 경미한 수준의 문제가 사전에 예방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할 때, 학교 청소년 문제 행동의 지도는 흔히 발생하는 문제행동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2)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실태 분석

(1) 학교 청소년의 문제 현황 및 원인 파악

① 학생의 가정과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초·중·고등학생들의 60.5%가 가정 분위기에 만족하고 있으며 낮

은 학교급(초등학교)의 학생들일수록 더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중·고등학생들은 공통적으로 가정에서 가장 불만스럽게 느끼는 점으로서 부모님이 자신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었다. 두 번째로 불만스러운 점으로 중학생과 일반고 학생들은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을, 초등학생들은 '형제(자매)와 사이가 좋지 않은 점'을, 그리고 실업고 학생들은 '경제력이 부족하여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 볼 때 많은 학생들이 가정에 대해 느끼는 불만족은 부모가 자신들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지나치게 간섭하는 등 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갈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입시 위주의 교육 상황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좋은 상급학교에 진학시키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청소년기 자녀들의 여러 가지 특성, 욕구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공부만을 강요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모-자녀간 이해 부족과 갈등은 오히려 자녀들을 빗나가게 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기 자녀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려는 부모의 노력이 필요하며, 부모들의 자녀 이해를 위한 다양한 연수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해서는 초·중·고등학생들의 1/3 정도만이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실업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그리고 서울·대도시보다 읍면지역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학업·학교생활과 관련한 자신감, 자아의식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매우 만족하는 학생들은 적게는 8.3%에서부터 36.3%까지의 분포로서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약간 만족한다는 학생들까지 포함한다면

63.1%에서 87.7%로서 학교생활 만족도나 학업에 대한 자신감 면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각 질문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으로는 초·중·고등학생들 중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모든 문항에서 가장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고 자신과 학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다. 반면 일반고등학생과 실업고등학생들은 10개 질문 중 각각 5개 질문에서 가장 낮은 학교생활 만족도와 자신감을 보였다. 그리고 지역별 경향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읍면지역 학교의 학생들이 서울, 대도시, 중소도시 학생들보다 낮은 학교생활 만족도, 공부·학교생활에 대한 낮은 자신감,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성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으로서 첫째는,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상급학교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학교 공부, 학교에서의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 학업과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낮게 나타난 자신감과 만족도는 학교 교육에 대한 위기를 염려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입시 위주의 경쟁적인 교육 풍토와 지식 위주의 평가 방법 운영으로 인해 공부 잘 하고 모범적인 소수의 학생만이 인정받고 대우받는 교육 현실 속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낮은 자신감과 만족도를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처럼 학교생활과 자신에 대해 불만족한 학생들이 문제행동을 경험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가정, 학교, 사회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두 번째 특징은 서울, 대도시, 중소도시보다 일관성있게 읍면지역 학교 학생들이 자신감과 공부 및 학교생활 측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가 대도시 중심으

로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어 열악한 생활과 교육 환경에 처해 있는 농촌 지역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불만족, 나아가 부정적인 자아의식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촌 지역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가정과 학교생활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실제로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인식(‘해도 되는’ 행동으로 인식하는 경향) 및 실제 행동과 상관이 크게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정의 자녀교육과 학교운영이 학생들에게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해준다.

② 학생들의 하교 후 배회

80%가 넘는 초·중·고등학생들은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하교 후 바로 집에 가기보다는 혼자서 또는 친구와 함께 돌아다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학교급의 학생들일수록 더 배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교 후 배회하는 주된 이유는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즐겁고, 다음으로는 집에 가면 답답하거나 불안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교 후 밖에서 보내는 시간은 대체로 1-2시간 정도(71.6%)가 가장 많았으며, 초·중학생보다 고등학교, 특히 실업고 학생들이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등학생들이 하교 후 주로 들르는 장소는 PC방, 전자오락실, 노래방의 순이었다. 학교급별 경향에 있어서는 중학생들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PC방과 만화가게에 가장 많이 들르고 있으며 중·고등학생들에 비해 이와 같은 장소에 들르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적은 편이다.

그리고 읍면지역 학생들이 PC방과 전자오락실 출입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남학생들은 주로 PC방과 전자오락실에, 여학생들은 노래방

에 주로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에 기초해 볼 때, 하교 후에 배회하는 정도나 시간에 있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오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PC방, 전자오락실, 노래방, 만화가게 출입도 중학교 시기에 급격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무조건 컴퓨터 게임, 인터넷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결과 부모들의 눈을 피해 PC방이나 전자오락실에서 그 욕구를 해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장소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발생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과 최근 컴퓨터, 인터넷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불가결한 부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부모들이 자녀들의 욕구를 적절히 가정 안에서 해소시켜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놀이, 여가 프로그램과 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③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

64.1%의 초·중·고등학생들은 학교나 가정에서 학생 신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이 높을수록 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반수가 넘는 초·중·고등학생들은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자기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들은 문제행동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업시간에 잠자기’, ‘수업시간에 불손한 언행하기’, ‘수업시간에 딴 짓 하기’, ‘지각·무단결석’, ‘부모님 속이기’는 학교생활이나 교사, 부모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에 관한 행동들이다. 수업시간에 잠을 자거나 딴 짓 하기, 지각 및 결석하기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행동에 있어서는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 비율이 다소 낮았

으나, 수업시간에 불손한 언행을 하거나 부모님 속이기 등 교사와 부모의 권위와 직접적으로 마찰이 있을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폭력·절도 비행 중 초등학교에서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 괴롭힘(왕따 시키기)’ 행동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절도 및 금품갈취’ 행동은 전체 조사대상 학생의 99.1%가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하였다.

성과 관련된 문제행동들은 ‘이성과의 성적 접촉 및 성관계’, ‘성추행’, ‘성매매’, ‘성폭력’ 등이 조사되었다. 이 중 ‘이성과의 성적 접촉 및 성관계(91.6%)’ 행동을 제외한 나머지 행동들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99% 이상) 학생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자살 시도’의 경우 전체의 4% 정도의 학생들이 ‘해도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약물(유해, 환각성)복용’ 행동에 대해서는 ‘자살 시도’보다 더 엄격한 규제 인식과 행동을 보여 대다수(99% 이상)의 학생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인식과 실제 행동들은 학생들의 가정분위기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학생문제 행동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에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④ 문제행동의 경험

학생들이 경험한 문제행동에 대한 경험 여부와 경험 횟수에 대한 분석 결과와 경험했던 행동에 대한 처음 경험 시기, 경험 이유 분석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5가지 문제행동 유형별 경험 여부 및 경험 횟수에 대해 분석한 결과 5가지 문제행동에 대한 경험률은 적게는 1.5%부터 25.1%가

지의 분포를 보인다. 이들 5가지 문제행동 중 학생들은 가출, 음주, 흡연, 비디오방 출입, 성인용 술집 출입, 나이트클럽 출입 경험(25.1%)이 가장 많고 본드, 가스, 환각제, 마약 경험(1.5%)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추행, 성관계, 성매매 경험은 2.5% 정도이며 물건 훔치기, 훔친 물건 사고팔기와 패싸움, 폭력써클 가입, 폭행, 위협, 기물파손, 흥기소지 행동을 경험한 학생도 각각 11.2%와 9.9%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경향에 있어서는 중학생들이 본드, 가스, 환각제, 마약 경험이 가장 많았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행동의 경험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에서 경험률이 매우 낮다가 중학교 시기에 증가하였으며 고등학교 시기에 급격히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5가지 문제행동 중 가출, 음주, 흡연, 비디오방 출입, 성인용 술집 출입, 나이트클럽 출입의 경우에만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경험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 경험횟수에 있어서는 대체로 5가지 문제행동에 대해 6개월에 1-2번 경험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해 볼 때, 학생들의 문제행동 경험률과 횟수는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나 이러한 행동을 그냥 방치해 둔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경험하게 되고 더 큰 문제행동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지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둘째로, 문제행동별 경험 시기와 경험 이유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 2,108명 중 10% 이상의 학생이 경험해 보았다고 한 문제행동은 ‘채팅/게시판에서 상대방에게 욕설/폭언을 하는 것’, ‘머리를 염색하고 외출하는 것’, ‘흡연’, ‘성인용 음란/포르노물(비디오, 만화 등)을 보는 것’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체 학생의 5% 이

상 10% 미만이 경험한 문제행동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하는 것’, ‘인터넷을 통하여 성인용 음란/포르노물을 열람하는 것’, ‘이성친구와 포옹/키스 등의 성적인 접촉을 하는 행동’이다.

전체 응답 학생들의 5% 이상이 경험해 본 문제행동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최초로 경험한 시기를 보면, ‘머리를 염색하고 외출하는 것’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23.8%), ‘흡연’, ‘음주’, ‘성인용 음란/포르노물(비디오/만화 등)을 보는 것’,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하는 것’, ‘이성친구와 포옹/키스 등의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것’, ‘인터넷을 통하여 성인용 음란/포르노물을 열람하는 것’, ‘채팅/게시판에서 상대방에게 욕설/폭언을 하는 것’ 등의 문제행동은 중학교 시기에 최초로 경험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중학교 시기에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지도가 요청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행동들은 적은 비율이지만 초등학생 시기부터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관심을 갖고 지도될 필요가 있음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문제행동을 경험하게 된 이유로는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대체로 단순한 호기심이나 친구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그들의 호기심이나 관심을 살피고, 친구관계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고민이나 갈등 해결 양상 분석

초·중·고등학생들은 고민이나 걱정거리, 갈등이 생겼을 때 주로 취미활동에 몰두함(44.1%)으로써 해결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님, 형, 누나에게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하거나, 속으로 삭히는 등 비교

적 건전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남학생들은 취미활동에 몰두함으로써, 여학생들은 부모님, 형, 누나에게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통해 고민이나 갈등을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기초해 볼 때, 교사나 부모들은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겪게 되는 고민, 걱정거리, 갈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청소년기 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고민, 갈등, 걱정거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하겠다.

문제행동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 반이 조금 넘는 학생(53.9%)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리지 않고 있으며, 학교급이 높은 학생들일수록 알리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알리지 않는 주요 이유로 50%에 가까운 학생들은 말해봤자 나아질 것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꾸중과 체벌이 두려워서(21.3%), 한 번 알게 되면 문제학생으로 낙인찍힐까봐(7.0%) 알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지 않았던 문제행동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아셨을 때, 타이르고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한(47.6%)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꾸중과 징계를 받은(20.9%)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일으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후에 51.4%의 학생들은 문제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1.8%의 학생들은 지도를 받은 적이 없었고, 약 20%가 넘는 학생들은 별 도움이 안되었거나 오히려 더 반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터해 볼 때, 반 이상의 학생들은 문제행동을 하지만 부모님이나 선생님 모르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님 또는 선생님이 알게 되는 문제행동, 즉 드러난 문제행동은 그만큼 적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학생들이 문제행동을 알리지 않고 하는 이유는 앞의 결과에서 시사하는 바처럼 우선적으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학생들의 생활에 무관심하고, 학생들 또한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신뢰할 만한 대화상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시기 청소년들은 문제행동을 친구관계, 유해한 사회환경을 통해 접하게 될 기회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제를 발생시키는 상황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문제행동을 알게 된 경우에도 꾸중이나 체벌 등 징계보다도 대화를 통해 이해시키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나 교사들이 학생의 발달, 학생의 생활과 문화 등 학생들의 제반 특성을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수가 요구된다. 특히,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문제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 지도 실태 분석

질문지 조사를 통해서 분석한 청소년 문제행동 지도 실태는 다음과 같다.

(1) 학부모와 교사의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

① 학생의 고민과 특성에 대한 인식

요즘 학생들의 고민과 특성에 대해 교사들은 '결혼가정에서 오는 심리적 문제'(32.5%)를 가장 큰 학생들의 고민으로 보는데 비해 학부모는 '주의집중과 학업에 대한 자신감 부족'(34.9%)과 '상급학교 진학 문제'(21.6%)를 들고 있어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들의 심각한 고민거리를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주의집중과 학업에 대한 자신감 부족'은 교사와 학부모가 공통으로 느끼는 요즘 학생들의 고민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가 모두, 요즘 학생들의 특성으로 '일(공부)하기 싫어하고 편안한 것만 추구한다'에 공통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들의 고민거리로 인식하고 있는 영역과, 학생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특성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② 학생 문제행동의 원인 및 책임소재에 대한 인식

학생 문제행동의 원인으로 교사와 학부모 모두, '불안정한 가정환경'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이어 교사는 '가정교육의 부재'를 학부모는 '불량친구'와 '청소년 유해환경'과 같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회적 환경을 그 원인으로 들고 있다.

문제행동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부모가 모두 '사회환경'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③ 학부모와 교사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학생 문제행동

교사와 학부모가 보는 심각한 학생 문제행동 중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인 문제행동은 '수업태도 불량 및 학습의지 저조'와 '불손한 언행 및 비속어 사용' '집단 따돌림'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들은 학부모보다 '수업태도 불량 및 학습의지 저조'를 문제행동으로 보는 경향이 더 높은 반면, 학부모들이 문제행동으로 보고 있는 '음주 흡연'에 대해서는 문제행동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급과 성에 따라서 심각한 문제

행동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예컨대, ‘수업태도 불량 및 학습의지 저조’와 ‘본드 및 환각제나 약물 사용’은 자녀의 학교급이 높은 학부모가 더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인식하는데 비해, ‘불손한 언행 및 비속어 사용’과 ‘음란물 및 음란 사이트 이용’, ‘집단 따돌림’은 자녀의 학교급이 낮은 학부모들이 더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인식한다. 또한 ‘유해업소 출입’과 ‘음란물, 음란 사이트 이용’은 남학생 학부모가, 그리고 ‘불건전한 이성교제’와 ‘집단 따돌림’은 여학생 학부모들이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 문제지도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학생의 학교급과 성에 따라 그 강조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④ 학생의 고민, 갈등, 문제행동 및 학교생활 파악 방법과 파악시 애로사항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교사들은 학생의 문제(고민·갈등)를 파악함에 있어 주로 ‘학생들의 표정·태도·행동변화에 대한 관찰’(43.9%)과 ‘수업시간이나 평소의 교류를 통해’(33.1%)하고 있다.

학부모들 또한, 자녀의 학교생활 파악을 주로 ‘자녀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법’(52.7%)과 ‘평소 자녀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는 방법’(22.4%)에 의해 하고 있고, 교사와 학부모 모두 학부모와 학교 교사와의 면담이나 전화를 통한 방법은 매우 적게 쓰고 있다. 그러나 학생과 자녀의 말이나 행동관찰을 통해서 학생의 문제를 파악하는데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실제로 교사와 학부모 모두는 학생이나 자녀의 문제행동을 파악하는 데서의 어려움 또는 애로사항으로, 교사는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75.1%)는 것과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어도 가정에서 이를 학교에 알리기 꺼린다’(64.1%)에 응답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자녀들이 ‘학교생활 또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말을 잘 안 한다’(33.7%)거나, ‘자녀의 일로 교사를 찾아가거나 상담을 청하기가 어

럽다'(25.6%)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애로사항은 학교 소재지역이나 자녀의 성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대도시 학부모들은 학교에 찾아가 상담을 청하기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큰 반면, 읍면지역의 학부모들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 학교를 못 찾는 경향이 더 크다거나, 자녀가 남학생인 경우는 여학생에 비해 학교생활에 대해 학부모에게 말을 하지 않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등 차이가 난다. 따라서 학교에서 학생지도 전략 개발시 지역적 특성과 학생의 성에 따른 차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학생과 자녀의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의 연계지도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실태

① 교사의 문제행동 지도경험 및 지도방법

교사들이 학생 문제행동을 지도해 본 경험은 주로 학생들의 '수업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에 관한 것이 많은 반면, 보다 전문적인 지도능력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는 '가출·무단결석 등의 부적응 행동'과 '우울·자살충동 등의 정서장애 행동'에 대한 지도경험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또한 교사들이 학생의 문제행동 지도를 위해 자주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주로 '훈계'와 '상담'이며, '특별 프로그램이나 외부기관과의 연계지도' 등은 비교적 사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훈계'는 교사의 일방적인 설교나 강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효율성 면에서 학생들의 직접적인 체험과 경험을 통한 문제행동 지도를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사들에게 앞으로 점차 다양해지는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전문적 지도능력을 갖추게 하는 일과 함께 학교의 힘으로는 안

되는 심각한 수준의 학생들을 전문가나 기타기관에 의뢰하여,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② 문제행동 감소 요인 및 지도 대책

학생 문제행동 지도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교사들은 무엇보다도 ‘교사와 학생간의 교감 형성’(47.8%)을 들고 있으며, 다음으로 ‘학생 문제행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지도방법’(35.0%)을 들고 있다. 또한 학부모들은 자녀의 문제행동 지도를 위해 ‘자녀의 발달 특성과 생활에 대한 부모의 폭 넓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학생지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이 보다 밀접해져야 한다는 것과 학생문제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폭 넓은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에서의 부모의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담임 및 교과담당 교사의 격려와 관심’을 들고 있다. 따라서 가정의 자녀교육 기능의 강화와 교사의 학생에 대한 관심과 지도를 가능케 하는 분위기 쇄신과 제도마련 그리고 학부모 교육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5. 효과적인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 대책

지금까지 살펴본 관련문헌 분석 결과, 질문 및 면담 조사결과, 그리고 전문가협의회 결과를 종합적으로 참고할 때, 보다 효과적인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 대책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조명해 볼 수 있다. 즉, 문제행동의 형성배경과 요인의 차원에서, 표출된 학생의 문제행동의 내용이나 성격의 차원에서, 그리고 문제행동에 대한 접근

이나 지도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각각의 차원에서 제기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방 및 지도대책은 다음과 같다.

1) 문제행동의 형성배경과 요인의 차원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형성 배경과 원인에 관한 제반 연구 결과로부터 학생의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은 학생의 개인적, 심리적 특성뿐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학생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지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학생 스스로 자긍심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과 노력이 요구된다.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은 무엇보다도 학생 스스로의 낮은 자존감과 기대, 부정적 자아 정체감, 그리고 자기 감정 통제력 부족 등으로 나타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감정을 갖지 않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또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건전한 가정 분위기와 적절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을 위한 학교 내, 외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많은 경우, 학생의 문제행동은 가정 내의 갈등이나 부적절한 부모의 양육태도, 그리고 부모-자녀간의 불안정한 애착관계 등에서 비롯된다. 가정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홍보하고 학교 내, 외 차원에서 부모 교육을 하는 기회 등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가정 분위기와 적절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요구된다.

셋째,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의 학급 및 학교운영이 요구된다.

연구결과 다수의 학생들은 학교에 대해 여러 가지로 불만족함을 알 수 있었다. 학생 수준에 적합한 수업 방법의 결여, 학교 상담 혹은 생활지도의 문제, 학교에 대해 느끼는 삶의 질 또는 결속력의 문제와 친구관계 등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들이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학교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지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학교와 교사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이 요구된다.

범람하는 퇴폐풍조와 유해환경, 물질중시 사상의 팽배로 인한 도덕성 결여 등도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사회적 요인임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학교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지도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 걸쳐 건전한 분위기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 성인과 지역사회가 앞장서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문제행동의 내용 및 성격

학생들의 문제행동은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다양성은 보다 효과적인 문제행동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 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공통의 몇 가지 기준에 의해 구분되고, 접근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지도하기 위한 방향이 다음과 같아야 함을 제안한다.

첫째, 많은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행동이 우선적으로 예방되고 지도되어야 한다.

연구결과, 다양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영역과 범위가 좁혀질 필요가 있으며 이는 많은 학생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좁혀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소수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문제행동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 청소년 문제행동을 지도하는데 있어 소수의 학생이 경험하는 문제행동이 주가 되어 지도되는 동안 많은 학생이 경험하는 문제행동은 소홀히 되어, 쉽게 예방 지도할 수 있는 문제행동들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학교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에 초점을 두어 지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문헌 검토 결과, 학교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학교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 특히 학교수업과 학교생활에 초점을 두어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심화과정’을 고려하여 지도해야 한다.

학교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문제행동의 시작 과정’과 이러한 가벼운 수준의 문제행동에서 보다 심각한 수준의 문제행동(범죄행위)으로 발전되어 가는 ‘문제행동의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문제행동의 시작과정’에서는 학업 및 학교생활에서 비롯되는 부적응이 학교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그 다음 단계인 ‘문제행동의 심화과정’에서는 불량교우와의 교제, 학교에서의 낙인경험이 학교 청소년들의 심각한 수준의 문제행동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

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예방지도하고 적합한 사후대처를 위해 이러한 '문제행동의 심화과정'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3) 문제행동에 대한 접근 및 지도방법

건전하고 바람직한 학교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학교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에 있어, 시간적으로는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노력과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공간적으로는 단위학교 수준의 교사-학생 차원과 이를 둘러싼 주변 환경의 차원에서 문제를 예방하고 지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서는 단위학교 수준에서 교사와 학생을 중심으로 한 예방 및 지도대책과 사회 및 국가차원에서의 예방 및 지도대책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 대책

단위학교 차원에서 교사로 하여금 학생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첫째, 학교 청소년 문제 행동의 지도 내용은 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앞의 학생 질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생의 '문제 행동 유형별 경험여부와 경험 정도'에 관한 내용은 학교 청소년의 문제 행동

영역과 범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한다. 예컨대 지난 '1년간의 문제 행동 경험'에 관한 조사 결과나 '문제 행동에 대한 인식과 실행'에 관한 조사 결과에서 극히 소수의 학생들만이 심각한 수준의 문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소수의 경험 학생도 이러한 행동을 자주 경험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발생하는 경미한 행동이 비행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심각한 수준의 몇몇 문제 행동에 치중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흔히 발생하는 문제행동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학교 청소년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행동중 가장 높은 발생율을 보인 행동으로는 '수업관련 행동'을 들 수 있으며, 그 다음 순으로 '학교 규칙 관련 행동',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음란물 보는 행동', '집단 괴롭힘', '공공기물 파손 행동', '흡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를 위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보이는 주된 문제행동들을 재점검하고, 각각의 문제 행동별 원인을 탐색하며, 문제행동별로 구체적인 지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 청소년에 대한 지도는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

문제 행동의 경험률이나 이유, 이에 대한 대처방법 등은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머리를 염색하고 외출하는 것'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때가 그 어느 시기보다도 가장 높은 경험률을 나타낸 반면, '흡연' 등의 문제행동은 중학교 시기에 최초로 경험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문제행동을 보이는 비율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 볼 때, 학교 청소년에 대한 지도는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중학교 시기에 보다 집중적인 지도가 요청되며, 문제행동 예방차원에서의 지도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오면서 하교 후 학생들이 배회하는 경향이 급격히 증가하고, 학생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행동들이 대체로 중학교 시기에 발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과, 중학교 시기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중간 시기로서 이 두 학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 정도가 낮은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시기 학생들에 대한 가정과 학교, 사회의 관심 유도 및 학생의 문제 행동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지도가 요구된다.

다섯째,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그들의 발달 특징을 살피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학생들은 ‘호기심이 생겨서’ 문제행동을 하게 되거나 ‘친구들이 같이 하자는 유혹에 넘어가서’, ‘친구들이 하고 다니는 것이 좋아 보여서’ 문제행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의 문제 행동은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친구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가 하면 학생들은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취미활동에 몰두’하거나 ‘속으로 삭힌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 볼 때, 가정과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그들의 발달 특징을 살피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생이 보다 바람직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다양한 예방적 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이 요구된다.

학생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지도하기 위해 문제행동의 유형과 원인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각급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학습전략 향상 프로그램, 친구 사귀기 프로그램, 자신감 형성 프로그램, 자기 발견 및 진로인식 프로그램, 학교적응 프로그램, 삼성계발 활동, 품성계발활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제 행동과 관련하여 사안별 지도자료 개발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이 요구된다. 이 외에도 실제 교과지도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노력도 요망된다.

일곱째, 교사에게 문제 행동 지도시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더 나아가 문제 행동을 다루는 전문 교사를 확보하는 일이 요구된다.

질문 조사 결과 교사들이 실질적인 학생지도를 위해 수집해야 할 정보인 학생의 생활문화나 학교 차원의 생활지도 계획이나 방법에 관한 정보수집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학생의 문제행동을 파악하고 지도하는 데에 있어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은 학생 개개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유심히 관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해당 문제행동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교사로 하여금 학생의 문제행동을 잘 관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추게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사회 및 국가차원에서의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대책

학교, 가정, 사회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학생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요구된다.

첫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도활동을 위한 원활한 지원체제가 요구된다

전문 상담교사, 담임교사, 학부모와의 자문, 조정활동 등 원활한 지원체제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도 활동을 위해 전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 노력, 교사-학생간의 민주적인 분위기 조성, 상담실의 내실화 그리고 행정적 지원 등이 요구된다.

둘째, 가정 및 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가정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운영할 뿐 아니라, 유흥가 업주에 대한 윤리의식 고취, 공영방송에서의 건전한 청소년 문화 보급, 청소년 대상 인터넷 업체에의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의무화 등의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부모로 하여금 학생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조사결과 학부모들은 전반적으로 자녀의 생활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하였으나, 자녀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남학생일수록 그들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더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가 문제없이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학부모들은 주로 자녀에게 학교 생활에 대해 묻거나 자녀의 얼굴 표정이나 태도 신체를 살핀다고 하였다. 자녀의 담임교사나 친구에게 묻는 것은 매우 낮은 응답률을 나타내, 주로 자녀를 통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자녀의 응답이나 표정 등’을 통해 자녀의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자녀가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자녀의 발달특징과 생활을 이해하고, 자녀 지도시 문제 행동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학부모 교육이 요구된다. 또한 학생지도시 학부모와 교사와의 긴밀한 연계체제를 확보하는 일도 요구된다.

넷째, 청소년 문제의 원인은 대체로 가정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정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질문 조사 결과, 학생 문제 행동의 주된 배경이나 이유는 ‘불안정한 가정 분위기’나 ‘가정교육의 부재’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학생의 문제행동을 파악하고 지도하는 데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어도 가정에서 이를 학교에 알리지 않거나 알리기를 꺼린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점에 기초해 볼 때,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지도시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요망된다.

다섯째, 청소년을 위한 활동의 장과 그들의 의견 반영이 요구된다.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욕구를 분출시킬 수 있는 활동의 장과 기회(각종 행사, 동아리, 특기 적성교육 등)를 제공하고, 또한 그들의 의견을 접수, 반영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지역별 교육 특성과 문제를 고려한 다양한 지원과 정책이 요구된다.

조사결과 서울, 대도시, 중소도시보다 일관성 있게 읍면지역 학교 학생들이 자신감과 공부 및 학교생활 측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볼 때, 읍면지역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일곱째, 국가수준의 종합적인 학교 청소년 정책과 체계적인 실천 접근이 요구된다.

단위학교 수준에서 요구되는 미시적 차원의 학생 문제 행동의 예방과 지도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재고되어, 하나의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인식의 변화와 제고를 위한 홍보와 노력, 진학 제도의 개선, 청소년 지도를 위한 전문교사 양성(전문지도교사, 상담교사 등) 및 학교 배치,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의 확보 및 제공, 문화적 인프라 구축 등의 다양한 내용들이 별개의 정책이나 계획이 아닌 종합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의 학교 청소년 정책으로 새로이 구안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실천 접근이 요구된다.

III. 근로청소년 문제행동 예방대책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근로청소년 현황 및 정책
3. 근로청소년 근로 및 문제행동
실태조사 결과
4. 근로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대책방안 실태

공 백

III. 근로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대책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필요성

선행연구를 통하여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 및 체계적 유형분류 작업이 시도되었지만, 이는 중·고교생 청소년에 한정하여 실시됨으로써 근로청소년이 갖는 특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근로청소년들은 생활연령상 학령기에 해당하며 대부분이 학생의 신분을 갖고 있는 동시에, 경제적, 개인적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거나 학업과 경제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근로자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정체성은 이들의 “문제행동”의 유형과 빈도, 문제행동 유발 원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근로청소년의 문제행동 유형은 근로의 동기에 따라 세분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문제행동 경험정도는 하위계층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반청소년들과 구분되는 사회적 존재조건을 갖는 근로청소년의 문제행동 유형과 원인 진단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분석적이고 통합적 접근을 위한 기초로서 요구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근로청소년의 문제행동 실태와 원인 분석을 통해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분석적, 통합적 접근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근로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기반하여 문제행동 해결 지원과 예방을 위한 정책적 과제와 방향성을 탐색함으로써, 근로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3) 용어 정리

이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청소년의 연령을 15세 이상 19세 이하로 규정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독자적인 문제행동의 규정과 유형화를 시도하지 않고,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중 문제행동에 대한 가장 엄밀하고 체계적인 유형화를 시도한 한국청소년개발원의 분류방법에 따라 근로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규범적 문제행동, 법률적 문제행동, 사이버 문제행동으로 분류한다.

4) 연구 방법

(1) 문헌연구와 1차 자료 분석

근로청소년의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문제행동 관련 문헌을 조사 분석하였다.

(2) 면담조사

면담조사는 15-19세 근로청소년과 근로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 실무자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근로청소년에 대해서는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으며 유관기관 담당자는 서울, 인천, 천안, 부산, 제주도 소재의 근로청소년회관, 청소년 쉼터 실무자

등을 방문면담조사 하였다. 근로청소년과의 면담에서는 근로청소년의 일과 생활, 근로청소년 문제행동 특성 및 원인에 관해서, 유관기관 실무자와의 면담에서는 기관운영, 근로청소년 현황, 문제행동 유형 및 대책방안에 관해서 면담하였다.

(3)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근로청소년의 근로실태와 문제행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15세 - 19세의 서울 및 수도권 사업장 종사 근로자 160명을 선정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실사는 1:1 면접조사의 형태로 전문조사기관인 나라리서치에서 대행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선정은 업종별, 성별, 직군별 비례 층화 임의 할당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조사내용은 근로청소년의 근로실태, 직업의식, 문제행동 허용도, 문제행동 경험여부, 종사업체 및 개인의 특성 등이다. 회수된 설문지는 Spss Windows 10.1을 이용하여 백분율, χ^2 검정, t 검정 방법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근로청소년 현황 및 정책

1) 근로청소년 현황

(1) 인구 구성

2003년 현재 우리 나라 청소년 인구(15세~24세)는 7,277,598명으로, 전체 인구의 15.2%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3,778,006명, 여성이 3,499,532명이며, 성비는 108.0%로 나타났다. 연령별 구성은 15~19세가 3,237,329명으로 전체인구의 6.8%, 20~24세가 4,040,269명으

로 전체인구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 인구는 10년 전인 199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2) 진학 및 취업

우리 나라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2002년 현재 99.5%로 매우 높은 편이다. 전반적으로는 청소년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진학자의 수도 감소를 하였지만, 특히 실업계 진학자의 수는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2002년 현재 고등학교 졸업자 670,713명 중 상급학교인 각종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497,483명으로 74.2%이며, 취업자는 114,429명으로 17.1%로 나타났다. 졸업자의 수가 청소년 인구 감소에 비례하여 점점 줄어든 반면, 대학교 진학자의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점점 직업영역에서 청소년층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 노동시장적 특성

청소년계층의 취업현황을 보면, 2001년 현재 1백9십만명 정도의 청소년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5~19세 청소년은 3십6만여명으로 전체 청소년 취업자 중 18.9%를 차지하고 있으며, 19세~24세의 청소년이 1백5십만명 정도로 청소년 취업자의 81.1%를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의 취업현황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2002년 현재 농림어업과 같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청소년은 2만1천여명으로 전체 청소년 취업구성비의 1.1%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2차산업인 광공업에는 3십5만여명에 18.5%, 3차산업인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의 분야에는 80.4%에 이르는 1백5십3만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십여만명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실직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취업자 추이를 보면 농림어업과 광공업의 경우에는 점점 그 비율이 감소되어 가고 있는데 반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의 분야는 1998년 77.7%에서 2001년 80.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의 직업별 취업분포를 보면 서비스·판매직이 5십6만여명에 29.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사무직(27.1%),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22.3%), 전문·기술·행정관리직(19.9%), 농림어업직(1.0%)의 순으로 전체 취업구조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직업별 취업자를 성별 및 연령별로 보면 2001년 현재 20~24세의 청소년 연령층이 1백5십4만여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7.7%, 15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 취업자의 80.1%에 해당하는 것이다.

성별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수가 취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19세의 청소년계층은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수치를 보이지만, 20~24세의 청소년계층의 경우는 여성이 남성의 두 배에 가까운 취업분포를 보인다.

지역별 청소년 취업자 추이를 보면 2002년 7대 도시의 청소년 계층의 취업률이 52.6%로 나타났고, 그 외 지역의 청소년 취업률이 47.4%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이 23.9%, 경기도가 23.2%로 청소년이 가장 많이 취업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임금수준은 2001년 현재 평균 7십9만2천원으로 전체 임금의 56.9%의 수준이다. 청소년들의 노동강도는 전체적인 수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다소 높다. 청소년들의 근로시간은 최근 4년간 서서히 감소하고 있지만 평균 근로시간보다는 약간 긴 것으로 나타났다.

(4) 근로청소년 상담 현황

근로청소년들이 어떤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늠하기 위해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 상담실의 실적을 살펴보았다. 2001년 현재

청소년 가운데 근로청소년에 대한 상담실적은 청소년 상담실적의 1.0%에 불과하였다.

2) 근로청소년 정책

(1) 청소년 관련 행정 조직 체계 및 업무

일반적인 청소년 관련 업무는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청소년보호위원회, 시·도 청소년과 등의 청소년 전담기구와 정부 부처별 관련 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지원과, 청소년수련과의 3개 과로 조직되어 있는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은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의의 운영과, 각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육성 관련 업무의 기획·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근로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육성 활동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을 비롯하여 정부 각 부처에서 수행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업무의 한 부분으로서 이루어진다. 근로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 정책은 주로 노동부에서 이루어지며, 여타 분야의 활동과 정책에 있어서는 근로청소년은 일반청소년 또는 학생 범주와 구분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된다.

(2) 근로청소년 노동 보호 정책

근로청소년 정책은 주로 이들의 취업 및 노동에 관련된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근로청소년을 열악한 노동조건과 유해노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연소근로자 보호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에서 연소근로자란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상의 연소근로자 보호 관련 내용으로는 취업 최저연령 규정과 취직인허증제도, 18세미만 연소근로자 사용금지,

연소자 증명서 비치, 대리 근로계약 금지, 미성년자 임금 독자 청구권, 근로시간 제한, 야업 및 휴일근로 금지 등이 있다.

(3) 근로청소년 문화 및 여가 활동 지원 정책

근로청소년의 문화 및 여가 활동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을 들 수 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교양교육, 취미교육, 단기전문과정교육, 상담사업 및 복지후생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직업관 확립 및 노사 공존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1981년 서울, 부산, 익산에 최초로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1999년 현재 전국 주요 공단 지역 19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자는 1999년 기준으로 33만명 정도이다.

최근 근로청소년 수가 감소함에 따라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근로청소년의 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근로청소년 수의 감소와 공단 중심의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청소년 근무 업종의 변화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이용 대상을 지역주민으로 확대시키고 있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근로청소년 시설에서 주민복지시설로 그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 근로청소년 수의 감소와 고용 구조 변화, 정부의 지원 감소, 전문 인력의 부족,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 부족이라는 객관적, 주체적 여건 속에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일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과 복지 혜택 제공이라는 본래의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지역의 여타 평생교육기관과 구별되는 자신의 위상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4) 근로청소년 교육 복지 정책

정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복지

정책으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학교 설치·운영과 비정규학교 지원을 들 수 있다. 특별학급 및 부설학교의 수는 시작 첫해인 1977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왔으나, 1990년도를 기점으로 전반적인 소득수준 향상 및 상급학교 진학을 상승 등으로 인하여 점차 감소하였다. 2001년 4월 현재 고등학교 과정 64개교(6,814명)가 운영중이다.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학교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근로자중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는 누구든지 무시험으로 입학할 수 있으며, 학생선발방법과 절차는 해당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고 있다. 교육비는 산업체 특별학급의 경우 해당 근로청소년의 소속 사업주와 정부가 분담하고, 산업체 부설학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가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취학희망자의 동의서를 접수하여 지정된 기일내에 해당 시·도 교육청에 통보해 주고 있으며, 매년 근로청소년 지도 유공교사와 졸업예정자중 모범 근로청소년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주경야독하는 청소년야간학교, 청소년자활학교, 새마을학교 등 이른바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5) 근로청소년 복지정책

근로청소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그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지역에서 근로청소년 아파트 임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임대 기회는 서울에 주거하고 있는 미혼 근로여성에게 제공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근로청소년에게 특화된 정책은 노동 분야를 제외하면 미

미하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 근로청소년들이 지니는 특수성에 착목한 정책이 개발되고 시행되기보다는, 근로청소년들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학생과 구분되지 않는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 근로청소년들이 또래의 일반 학생들과는 달리 고용관계를 맺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특징은 그 자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타의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차이들을 발생시킨다. 근로청소년 정책 입안과 운영에 있어 근로청소년들의 생활 전반의 특성들이 반영되어야 하나, 현재의 근로청소년 정책은 이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노동과 근로계약의 측면에서만 파악하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3. 근로청소년 근로 및 문제행동 실태 조사 결과

1) 조사응답자의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전체 160명이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 60.0%, 여자 40%이며, 연령별로는 15세-16세가 13.1%, 17세-20세가 86.9%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학력별로 보면 중졸이하가 10.0%, 일반고재학·졸업이 20.0%, 실업고 재학·졸업이 30.0%, 전문대와 4년제 대학 재학중이 26.9%, 고교 및 전문대 중퇴가 10.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조사응답 근로청소년의 고용형태를 보면 정규직이 16.9%, 비정규직이 83.1%로 비정규직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33.1%, 판매업 10.6%, 서비스업이 56.6%로, 판매·서비스업 종사자가 전체의 67.2%로 제조업 종사자보다 많다. 또한 이들이 종사하는 사업장 규모를 보면 10명 이하가 28.8%, 11명-49명 43.8%, 50명-99명이 11.3%, 100명 이상이 16.3%로 영세중소기업 종사자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 근로청소년의 근로실태

(1) 직장생활 참여 동기

먼저 근로청소년이 일을 하게 되는 동기를 질문한 결과 ‘용돈이 필요해서’가 총 응답자의 40.0%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우선 돈을 번 다음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 ‘우선 돈을 번 다음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공부보다 돈 버는 것이 좋아서’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동기를 학력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학생의 경우 용돈의 필요성이, 일반고 재학·졸업생의 경우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가, 실업고 재학·졸업생의 경우는 계속 공부에 대한 동기가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직업별로 보면 판매·서비스직 종사자의 근로참여 동기는 용돈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반면 기능관련 노무직의 경우는 용돈의 필요성보다 계속 공부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응답율을 차지하고 있다.

직장을 선택한 동기는 전체 응답자의 51.9%가 ‘일자리가 없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하고 싶은 일이라서’가 11.8%, ‘임금이 높아서’가 11.3%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하고 싶은 일이라서’ 주도적으로 선택한 비율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중졸이하와 실업계 재학·졸업생의 경우 여전히 ‘일자리가 없어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공통이지만, 근무환경이나 임금 등의 실질적인 이유로 현재 직장을 선택한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근로생활 만족도

근로청소년의 근로생활 만족도를 임금수준, 작업환경, 근로시간, 복지후생, 고용안정, 승진기회, 인간적 대우, 일의 보람, 여가시간, 훈련기회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인 직장생활 만족도는 2.71이며, 각 항목별 만족도는 작업환경(2.77), 인간적 대우(2.73), 근로시간(2.68), 일의 보람(2.66), 고용안정(2.64), 직장내 교육훈련 기회(2.54), 임금수준(2.52), 복지후생(2.51), 여가시간(2.48), 승진기회(2.44)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중졸이하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 수준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 종사자와 기능관련 노무직이 평균보다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3) 근로청소년 생활

근로청소년의 생활수준을 보면 중간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66.3%를 차지하지만 전체 평균이 2.64로 생활수준이 중간보다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졸이하, 중퇴, 실업계 출신의 근로청소년의 생활수준이 다른 학력의 근로청소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청소년의 고민걱정거리를 보면, 진로문제가 전체 조사응답자의 3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진학문제 23.1%, 경제적 문제 17.5%가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근로청소년의 고민 걱정거리는 1순위, 2순위를 합친 조사에서도 진로나 진학문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근로청소년에게 특화된 지원 대책의 마련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고민 해결 방식은, 친구와 고민을 나누는 경우가 80.4%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부모님, 직장동료, 사이버 상담 순 등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직장동료나 직장상사의 비율이 낮은 것은 이들이 근무하는 직장의 규모

가 영세하여 근로청소년들의 고충처리에 대한 지원수준도 낮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직장 내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동료와의 관계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73.8%,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6.3%인 반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의 규모가 작을수록 동료와의 관계가 나쁘다고 말한 응답비율이 높으며, 기능관련 노무직보다 판매서비스직 종사자가 동료관계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상사와의 관계도 전체적으로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59.4%로 가장 높고, 보통이 34.4%인데 비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5.6%에 불과하였다. 회사규모가 작을수록 상사와의 관계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으며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이, 기능관련노무직보다는 판매서비스직이 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높다.

(4) 직장생활 애로사항

근로청소년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일처리에 필요한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35.6%로 가장 높고, 사회적 편견, 학력차별, 비인간적 대우 순으로 나타났다. 중졸이하의 경우 사회적 편견과 학력차별로 겪는 애로사항이 타학력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업계의 경우 경제적인 여건으로 상급학교 진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학력 소유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등학교 및 전문대 중퇴자의 경우 직장내 비인간적 대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율이 다른 학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 근로청소년 직업의식

본 조사에 참여한 근로청소년들이 직업과 진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항목별 분석결과 4점 척도에서 중간 값인 2.5 보다 낮은 것은 ‘취업에는 능력보다 배경이나 운이 중요하다’와 ‘수당을 많이 받아도 야근은 하고 싶지 않다’이다. 반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공부를 하고 싶거나’, ‘취미생활을 계속 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청소년에게 근로생활은 자율적 선택의 결과이기보다는 경제적 상황이 강제한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근로청소년 문제행동 실태

(1) 규범적 문제행동

① 문제행동 허용도

먼저 규범적 문제행동은 청소년의 문제행동 중 법률적으로 제재를 받는 범죄이외에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시되는 유형의 문제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규범적 문제행동은 “표출형”, “유흥, 풍속형” 그리고 “권위도전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유형별 단위행동은 다음과 같다.

규범적 문제행동의 각 단위행동에 대하여 근로청소년의 허용도를 단계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표출형에 속하는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허용도의 경우 약물사용다이어트를 제외한 모든 단위행동 허용도 평균값이 중간 값을 상회하고 있어 상당히 허용적임을 알 수 있다.

<표 III-1> 규범적 문제행동 범주와 단위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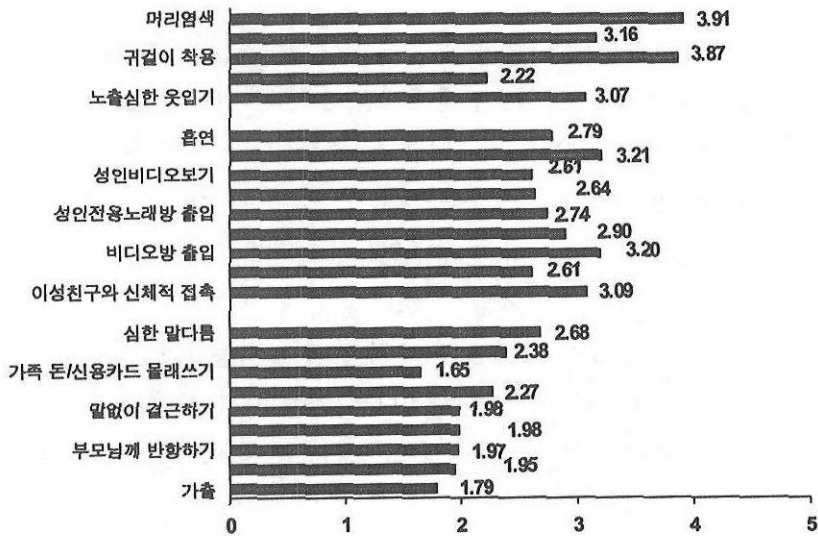
유형	단위 행동
표출형 문제행동	머리 염색
	질은 화장
	귀걸이 착용
	약물사용 다이어트
	노출 심한 옷
유혹풍속형 문제행동	흡연
	음주
	성인비디오 보기
	성인용 폭력비디오 보기
	성인전용 노래방 출입
	술집 출입
	비디오방 출입
	이성친구와 성경험
	이성친구와 신체적 접촉
권위도전형 문제행동	심한 말다툼
	거짓 용돈 타기
	가족 돈/신용카드 몰래쓰기
	컨닝
	무단결근*
	무단외박
	부모님께 반항하기
	상사에게 반항하기**
	가출

*, ** 는 근로청소년의 직장생활을 반영한 문항임.

두 번째 유혹/풍속형에 속하는 규범적 문제행동의 경우 음주와 비디오방출입, 이성친구와 신체적 접촉에 대해서는 허용수준이 평균보다 높았고 흡연, 성인비디오 보기, 술집출입, 이성친구와의 성경험 등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세 번째 권위도전형의 문제행동의 경우 전반적으로 허용도 수준이 다른 규범적 행동에 비하여 낮다. 가장 허용도가 낮은 단위행동은 가족돈/신용카드 몰래 쓰기였으며, 그 다음이 가출, 상사에게 반항하기, 부모님

에게 반항하기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청소년의 직장생활과 관련 있는 행동 가운데 상사에게 반항하기와 무단결근 등은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1] 규범적 문제행동의 허용도

② 문제행동 경험

문제행동 경험은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난 1년간의 경험'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가출, 음주, 흡연 비디오방 출입 등'의 경우 전체 조사응답 청소년의 80.6%가 지금까지 이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지난 1년간 경험 비율도 76.2%에 이르렀다. 한편 무단결근, 회사 돈 유용, 고의적 동료 따돌리기 등의 행동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4.4%가 경험이 없으며 지난 1년동안 78.8%가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출·음주·흡연·비디오방출입·성인용 술집출입·나이트 클럽 출입

규범적 문제행동을 경험한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86.5%, 여성이 71.9%로 높은 경험빈도를 보이고 있다. 학력별로는 중퇴생(100.0%)과 중졸이하(87.5%), 실업계 재학/졸업생(83.3%) 순으로 나타났다. 직군별로는 기능관련 노무직이 판매서비스직보다 약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1년간의 경험여부를 질문한 결과 6개월에 1-2번이 26.3%로 가장 많고, 한달에 1-2번, 일주일에 3-4번, 1주일에 1-2번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주일에 3-4번을 경험하는 근로청소년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높지만 큰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가, 직군별로는 판매서비스직이 기능관련노무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㉔ 무단 결근, 회사돈 몰래쓰기, 고의적 동료 따돌리기

일반 학생에 비하여 근로청소년이라는 존재적 특성 때문에 할 수 있는 문제행동 경험여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5.6%가 무단 결근, 회사돈 몰래쓰기, 고의적 동료 따돌리기 가운데 한가지 이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성 근로청소년이 27.1%로 여성 근로청소년보다(23.4%) 경험비율이 높으며, 학력별로는 중졸이하가 37.5%로 가장 높은 경험정도를 보였으며, 중퇴자, 실업계 재학·졸업생 순으로 나타났다. 직군별로는 기능관련노무직이 판매서비스직보다 경험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단결근, 회사돈 몰래쓰기, 고의적 동료 따돌리기 등을 지난 1년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없다는 응답이 78.8%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 근로청소년이, 학력별로는 실업계 재학 또는 졸업생이, 직군별로는 판매서비스직이 일주일에 3-4번 경험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법률적 문제행동

① 문제행동 허용도

법률적 문제행동은 법규범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행위유형 전체를 말한다. 청소년의 경우 14세 이상 20세 미만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법률적 문제행동의 범주에 속한다. 법률적 문제 행동은 행동의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의 정도를 고려해 볼 때 어떤 영역보다 예방과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법률적 문제행동의 경우는 청소년과 근로청소년의 차이가 나타나는 영역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동관련 항목만을 조사하였다.

법률적 문제행동에 대한 허용도의 응답 결과를 보면 개인 일처리에 회사 돈을 유용하는 것에 대하여 91.3%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적으로 동료의 따돌리는 행동에 대해서는 91.9%가 허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사창가를 배회하는 성비행형 행동에 대해서는 폭력절도형(회사돈 유형, 왕따)보다 조금 덜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② 문제행동 경험

문제행동 경험을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난 1년간의 경험 여부를 질문한 결과, '패싸움·폭력싸움 가입, 폭행·위협·기물파손·흥기소지'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5.6%로 가장 높았으며, '물건 훔치기·훔친 물건 사고 팔기'는 23.8%, '성추행·성매매'가 12.5%로 나타났고, '본드·가스·환각제·마약'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0% 였다.

지난 1년간 경험을 보면 법률적 문제행동을 경험한 비율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각 문제행동을 경험한 사람들의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패싸움·폭력 싸움 가입·폭행·기물파손

성별에 따른 경험의 차이를 보면 남자의 경우가 3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경험자의 비율도 18.8 %로 나타났다. 학력별 보면 실업계 출신의 경우가 41.7%로 가장 높은 경험정도를 보였으며 중퇴자, 중졸이하 및 일반고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15-16세의 경험 정도가 47.6%를 차지하여 17세-20세보다 높은 경험정도를 보였다.

‘패싸움·폭력 씨클 가입·폭행·기물파손’ 행동을 지난 1년간 경험한 빈도를 질문한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지난 1년간 경험한 적이 없는 경우가 84.4%를 차지하였다. 한편 일주일에 3-4번 문제행동을 한 적이 있는 경우를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력별로는 실업계 경우가 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연령대별로는 15-16세가 14.4%를 차지하고 있다.

㉠ 물건 훔치기, 훔친 물건 사고 팔기

물건훔치기, 훔친 물건 사고 팔기 와 같은 문제행동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23.8%,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76.3%를 차지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험정도가 여성보다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경험정도가 높고 연령대별로는 15-16세가, 직업별로는 판매서비스직이 절도 관련 문제행동 경험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경험빈도를 살펴보면 한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경우가 92.5%를 차지하였으며, 경험한 경우 6개월에 1-2번 또는 한달에 1-2번 정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성별, 학력별, 연령대별, 직군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추행, 성관계, 성매매

성비행형 문제행동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험을 묻는 질문에 경험한 적이 있다는 비율이 12.5%, 경험이 없는 경우가 87.5%를 차지하였다. 중졸이하 그리고 중퇴 학력의 남성이, 기능관련 노무직이 경험정도가 상

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경험빈도를 하위집단별 특성으로 보면, 일주일 3-4번 정도로 자주 경험한 집단은 여성, 중졸이하 또는 중퇴자, 판매서비스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본드, 가스, 환각제, 마약

근로청소년 가운데 지금까지 본드, 가스, 환각제, 마약 등을 경험한 비율은 5.0%에 불과하였다. 여성보다 남성이 경험정도가 높았으며, 학력별로 보면 중퇴자가 12.5%로 경험한 정도가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앞서 살펴본 다른 법률적 문제행동과 달리 15-16세 연령의 경험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경험빈도를 보면 경험한 적이 없는 비율이 98.1%를 차지하고 있다.

(3) 사이버 문제행동

① 인터넷 이용 실태

사이버 스페이스상의 문제행동(사이버 문제행동)은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행동을 지칭한다. 사이버 문제행동을 사이버 가해형과 비가해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조사에 응한 근로청소년의 68.8%가 인터넷을 매일 이용하며 일주일에 1-2번 이용하는 경우도 23.8%로 나타났다. 한편 인터넷 이용 항목을 보면 29.3%가 이메일 주고받기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게임, 사이버 동호회, 온라인 채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라인을 통한 학습이나 정보 찾기 등은 채팅이나 게임 이용보다 낮은 이용도를 보였다.

② 사이버 문제행동

사이버 문제행동에 대한 경험 여부를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난 1년간의 경험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폭력성/음란성 게임이나 사이트 열람, 반사회적 열람과 같은 비가해형 사이버 문제행동의 경우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는 48.1%, 없는 경우는 51.9%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년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는 42.2%, 없는 경우는 58.8%로 나타났다.

온라인 욕설, 스팸메일/허위정보 유포 등과 같은 가해형 사이버 문제행동의 경우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는 27.5%, 없는 경우는 72.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년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는 16.9%, 없는 경우는 83.1%로 나타났다.

비가해형 사이버 문제행동 경험 빈도가 가해형 경험빈도보다는 낮지만 가해형 문제행동 경험빈도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폭력성/ 음란성 게임이나 사이트 열람,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

폭력성/음란성 게임이나 사이트 열람,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과 같은 비가해형 사이버 문제행동 경험정도(지금까지 경험여부)를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험 빈도가 68.8%로 여성 근로청소년 17.2%보다 훨씬 높다. 학력, 직군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한편 지난 1년간의 문제행동 경험을 살펴보면 10명 중 4명 정도가 폭력성 또는 음란성 게임이나 사이트, 반사회적 사이트를 열람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주일에 3-4번과 같이 가장 경험 정도가 높은 경우만 비교해 보면, 성별로는 남성 근로청소년이, 학력별로는 전문대 재학생이, 직업별로는 판매서비스직이 이러한 행동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욕설, 스팸메일 유포, 해킹

사이버상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욕설, 스팸메일 유포, 해킹 가운데 한가지라도 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27.5%로 나타났다. 성별, 학력별, 직군별로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1년간 경험 빈도를 보면 6개월에 1-2번이 8.1%, 한 달에 1-2번이 6.9%, 일주일에 3-4번이 1.9%를 차지하였다. 일주일에 3-4번 문제행동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비교해 보면 성별로는 남성 근로청소년이, 학력별로는 대학재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근로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대책 방안

1) 근로청소년 문제행동 특성

근로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발견한 문제행동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하여 근로청소년이 허용하는 정도를 보면 각 유형마다 차이가 있다. 권위도전형(심한 말다툼, 거짓 용돈 타기, 가족의 돈이나 신용카드 몰래 쓰기, 낯가림, 무단결근, 무단외박, 부모님께 반항하기, 가출)의 경우 모두 나쁜 행동이라고 평가하였으며 표출형의 경우 약물사용 다이어트를 제외한 모든 단위행동(머리염색, 짙은 화장, 귀걸이 착용, 노출 심한 옷 입기)이 나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유흥 풍속형의 경우는 흡연, 성인비디오, 성인폭력비디오, 성인전용노래방 출입, 술집 출입, 비디오방 출입, 이성친구와의 성 경험에 대해서는 나쁜 행동이라고 보는 반면 음주, 비디오방 출입, 이성친구와의 신체적 접촉 등은 나쁘지 않다는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성경험 등과 같은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그저 그렇다'(40.6%)는 응답항목에 대한 해석에 따라 허용도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근로청소년만이 경험할 수 있는 '무단결근'이나 '상사

에게 반항하기'등의 문제행동에 대해서 나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규범적 문제행동 가운데 그 허용도가 가장 낮은 단위행동은 '가족의 돈이나 신용카드 몰래 쓰기'(1.65)이며 가장 허용도가 높은 단위 행동은 '머리 염색'(3.91)으로 나타났다.

둘째 법률적 문제행동에 대한 근로청소년의 허용정도를 보면 폭력/절도형과 성 비행형 모두 그 허용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개인 일 처리에 회사 돈을 사용하는 것(1.64)과 고의적 동료 따돌리기(2.04), 사창가 배회(1.62) 등이 평균보다 허용도가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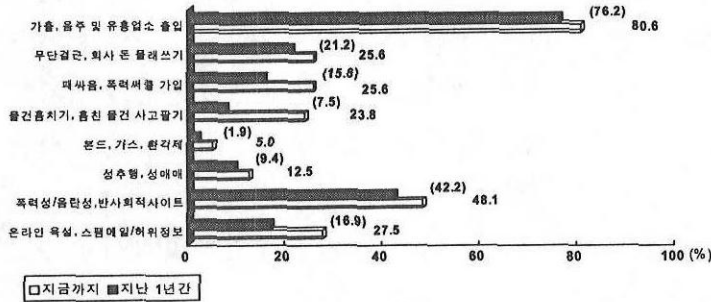
셋째 근로청소년은 실제 '문제행동'을 어느 정도 해 보았을까? 그 경험정도를 '지금까지'와 '지난 1년간'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먼저 '가출, 음주, 흡연 비디오방 출입 등'의 행동을 경험한 근로청소년은 전체의 80.6%에 이르렀으며 지난 1년간 경험 비율도 76.2%에 이르렀다. 한편 '무단결근, 회사 돈 유용, 고의적 동료 따돌리기' 등의 행동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4.4%가 경험이 없으며 지난 1년 동안 78.8%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법률적 문제행동에 해당하는 '패싸움·폭력 써클 가입, 폭행·위협·기물파손·흥기소지'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5.6%로 가장 높았으며 '물건 훔치기·훔친 물건 사고 팔기'는 23.8%가, '성추행·성매매'가 12.5%로 나타났으며, '본드·가스·환각제·마약'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0% 였다. 지난 1년간 경험을 보면 '패싸움·폭력 써클 가입, 폭행·위협·기물파손·흥기소지'는 15.6%, '물건 훔치기·훔친 물건 사고 팔기'는 7.5%, '성추행·성매매'가 9.4%, '본드·가스·환각제·마약'은 1.9%로 그 경험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사이버 문제행동 가운데 폭력성/음란성 게임이나 사이트 열람, 반사회적 열람과 같은 비가해형 사이버 문제행동의 경우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있는 근로청소년은 48.1%, 없는 근로청소년은 51.9%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년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는 42.2%, 없는 경우는 58.8%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욕설, 스팸메일/ 허위정보 유포 등과 같은 가해형 사이버 문제행동의 경우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는 27.5%, 없는 경우는 72.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년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는 16.9%, 없는 경우는 83.1%로 나타났다. 비가해형 사이버 문제행동 경험 빈도가 가해형 경험 빈도보다는 낮지만 가해형 문제행동 경험빈도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III-2] 참조).

넷째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가정교육/가정환경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6%로 가장 높고 청소년 자신은 25.6%, 사회적 여건/환경 요인은 15.6%, 친구/선후배 관계가 9.4%, 교육제도/학교환경 요인이 8.1%를 차지한 반면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찾는 경우는 1.3%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근로청소년의 '문제행동' 경험정도를 문제행동 유형별로 보면 규범적 문제행동이 가장 높고, 사이버 문제행동, 법률적 문제행동 순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법률적 문제행동의 경우 성별로는 남성이, 연령상 15-16세(예외: 본드, 환각제, 마약)가,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낮을수록(예외: 물건 훔치기, 팔기) 경험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학력은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높은 변인으로 일관되게 나타나는데, 이는 학력이 낮아서 문제행동의 경험정도가 높은 것인지 문제행동을 해서 학력이 낮아진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력이 낮으면서 생활수준이 낮은 경우 문제행동 경험정도가 높다는 선행연구와 이번 근로청소년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문제행동은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인성적 문제이기보다 사회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그 예방과 대책의 기본 방향도 개인의 심리적 요인보다 사회구조적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림 III-2] 문제행동 경험 비율

2) 문제행동 대책과 예방 방안

근로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책과 예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는 물론 근로청소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청소년들은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용돈벌이를 위해서 또는 자아실현을 위해서 자발적이거나 어쩔 수 없이 노동현장에 진입하며 경제활동의 한 주체로서 형성되어 있는 계층이다. 그러나 근로청소년은 사회적, 정책적 관심에서 주목을 덜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는 근로청소년 수의(2002년 현재 360천명) 감소와 근로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작용하고 있다. 산업화시기 근로청소년은 대부분 생계를 위해 정규 교육을 포기하고 근로생활을 하는 근로자라는 인식 하에 사회적 특별 보호계층으로 대우받으며 이들을 위한 법률적 보호장치,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학교 설치, 근로청소년 회관 건립, 직업훈련 제공 등과 같은 정책이 있었다.

일하는 청소년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근로청소년 내부에 존재하

는 차이점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학력에 따라 직업경로의 분절화 현상이 뚜렷한 점을 감안한다면, 중졸이하와 중퇴자 등의 저학력 근로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저학력 근로청소년은 학력차별과 사회적 편견을 직장생활 애로사항의 우선 순위로 응답하고 있어, 중층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근로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접근 시각도 이들이 처해있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해야하며 문제행동을 바라보는 시각도 근로청소년의 입장을 반영한 열린 접근이어야 할 것이다. 즉 문제행동 경험정도가 하위계층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선행연구결과(이종원의, 2001)와 근로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하위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근로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하나를 더하는 어리석음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연구진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터하여 근로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과 대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근로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 제고

근로청소년은 경제활동의 주체이면서 성인 근로자보다 나이가 어린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정당한 대우와 보호가 동시에 필요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로청소년은 노동정책에서도 청소년정책에서도 특화되어 있지 못하다. 노동부의 연소근로자 보호 업무 등이 특화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비중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근로청소년의 취약한 처지를 악용하여 체불임금, 비인격적 대우 등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YMCA, 2001).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할인” 프로젝트(MBC 느낌표)는 학생 청소년이 아닌 비진학 청소년, 대안학교 청소년 등의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이들을 통합하는 정책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노동정책에 국한되어 있는 근로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청소년 전반적 정책 속에서 특화된 형태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건강한 직장체험 기회 확대

근로청소년에게 현장(일터)은 경제적 수단 이외에 세상을 배우는 학습의 장이기도 하다. 연구진이 면담한 A(19세, 여)의 사례는 근로의 경험을 통해 문제행동을 치유한 좋은 보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A는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정규 학교를 자퇴하였으며 현재 공공기관 사무보조로 일하면서 야간학교(학력인정 대안학교)에 재학 중이다. 인터넷 게임 중독은 일을 하면서 스스로 “질려서” 그만두었다고 한다. 물론 직장이라는 물리적 환경과 신체적 피로는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게 만든 요인이지만, 일을 통해 사회를 알게되고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한 자기 반성을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난 진정한 계기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문제행동 청소년에게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 근로청소년을 위한 정부 지원 서비스 확대

근로청소년을 지원하는 방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청소년을 포함하는 경우와 근로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전자에는 청소년 상담원, 근로청소년회관 등이 속해 있지만 근로청소년의 이용 실적이 낮으며 예산이나 인력문제로 인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특화된 지원을 받는 것이지만 현실화되기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인 대안은 현재 근로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기관에서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현재 교양위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편성에서 직무수행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시간대도 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YMCA의 “일하는 청소년 지원센터” 등과 같은 민간기관을 활성화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

(4) 근로청소년 우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근로청소년이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관심과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를 제공해주는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체를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소년보호를 기업의 사회적 책무로 인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직장생활에서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문제행동 경험정도가 낮다는 조사결과는 근로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5) 근로청소년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근로청소년의 문제행동 가운데는 또래 청소년이 그 시기에 경험하는 문화에 가까운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표출형(머리염색, 짙은 화장 등) 문제행동의 경우는 문제이기 보다 문화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유흥 풍속형이나 권위도전형, 사이버 비가해형 같은 문제행동은 그 결과가 법률적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영

향은 크다. 궁극적으로 근로청소년에게 자신의 진로에 대한 비전을 줄 수 있을 때 문제행동의 함정으로 빠져드는 일은 줄어들 것은 명백하다고 판단한다. 근로청소년의 고민의 1순위가 진로문제라는 사실은 대다수의 근로청소년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들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후속과제로 연결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IV. 탈북 · 귀국청소년 문제 행동 예방 대책

1. 머 리 말
2. 탈북청소년
3. 귀국청소년

공 백

IV. 탈북·귀국청소년 문제행동 예방대책

1. 머리말

북한 이탈 청소년과 귀국청소년의 국내적응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청소년 문제행동예방과 대책을 위한 정책의 마련에 있어서 문화충격에 기인하는 측면이 존재하는 바, 이에 대한 대응책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로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정착과정에서 체제간의 이질성의 차이에 기인한 문제행동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세계화시대의 도래 및 조기유학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타국의 문화에 접해있던 청소년들이 귀국함에 따라서 본국의 문화와 타국의 문화적 경험간의 부조화로 인한 아노미적 성격의 문제행동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북한체제의 위기구조 심화와 사회통제의 이완으로 북한이탈주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량탈북도 예상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와 아울러 남한사회의 적응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체제간의 이질성 및 사회적 아노미의 경험 등으로 남한 사회부적응 및 문제행동의 가능성이 심화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추세에 따라 남한사회내의 탈북 청소년문제도 점차 사회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조기유학분 등으로 인한 귀국청소년의 증가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청소년문제도 확대되고 있다. 확고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기 어려운 청소년기의 특성상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지 못한 청소년의 문제행동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약물남용 등 심각한 문제행동현상도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조기유학추이가 지속될 경우 향후 귀국청소년이 남한사회내의 하나의 하위문화를 형성할 가능성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단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 및 귀국청소년의 문제행동예방과 대책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탈북청소년과 귀국청소년의 원만한 남한 사회적응 및 재사회화 대책을 개발하고, 사회통합형 청소년대책을 위한 기초자료 축적을 지향하고 있다.

2. 탈북청소년

1) 탈북주민과 적응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사회로 온 탈북주민들은 복합적인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들은 난민(refugee)이란 개념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망명자, 피난민 혹은 이주자로도 정의된다. 국제사회는 이들을 보편적으로 난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광의에서 탈북자로 부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귀순자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통일되기 전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온 난민을 이주자로 지칭하여 왔다. 이와 같은 개념들은 난민의 발생 배경과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인류역사상 난민은 항상 존재하여 왔으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정치적인 이유나 경제적 이유로 자기가 살았던 지역을 떠나 이동하는 자들로 규정되어 왔다. 난민의 사전적 의미는 “종교적, 정치적, 인종적 요인에 의해 거주국의 보호를 더 이상 받지 않고 국경을 넘어 이주한 사람”²⁾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의는 내란이나 전쟁으로 발생하는 유민, 즉 피난민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유엔 고등판무관실도 난민개념을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한 박해

2) Britannica(1994),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 10. By Encyclopaedia Britain Inc.

를 받을 두려움으로 인해 국적국 밖에 있거나 해당국의 보호를 꺼리는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요인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사회개발을 위한 유엔리서치연구소는 난민을 정치적 환경의 결과로 삶의 위협 없이 평화 속에 살거나 안전을 목적으로 거주했던 나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로 규정한다.³⁾ 국제법상 난민은 일신상의 이유로 국적국 또는 상주국에서 외국으로 탈출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자를 규정하는 바, 탈북주민에 대한 개념에 근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난민은 다음과 같은 4가지 형태로 나뉘어질 수 있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에서의 소속,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타국으로 탈출하여 타국의 보호를 요청하는 정치적 난민과, 전쟁, 내란, 정치폭동에 기인한 전쟁난민, 경제적 궁핍 또는 곤경을 피하기 위해 생존권 확보가 원인인 경제적 난민, 그리고 자연재해 또는 대규모 인권침해 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인도적 난민으로 구분된다. 좀더 단순하게 정치적 난민을 제외한 나머지 난민은 인도적 난민으로 구분되어지기도 한다.⁴⁾ 결과적으로 난민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소속된 나라로부터 벗어나 타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탈북주민들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난민에 해당한다. 그러나 탈북주민들의 경우는 개인별로 귀순동기나 배경이 다르고 정치적 견해, 경제적 궁핍, 인권침해 등의 복합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측면을 지닌다. 전쟁난민개념은 1950년에 일어난 한국 전쟁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현재의 탈북주민들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인종이나 종교, 특정사회집단의 소속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난민에

3) UNRISD(1983), *Sustaining Afghan Refugees in Pakistan Report on the Food Situation and Related Social Aspects.*, UNRISD(1987). *Social and Cultural Conditions and Prospects of Guatemalan Refugees in Mexico.* UN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4) D. Perluss, and J. F. Hartman(1986), *"Temporary Refugee: Emergence of a Customary Norm."*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6.

해당하지 않으며, 자연재해에 의한 인도적 난민으로 규정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탈북주민들은 정치적 의견, 경제적 궁핍, 인권침해요인 등 복합적인 동기에 의해 발생하는 난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탈북주민들의 대부분은 남한사회의 흡인요인보다는 북한의 체제와 환경에 기인한 배출요인에 의해 탈북 하게 된다. 탈북주민들의 경우 남한 사회로 귀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의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 사회에서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지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나 러시아에 숨어 지내거나 기타 지역에서 위험한 삶을 살아가는 탈북주민들의 경우도 개념상 난민에 해당하지만 난민으로서의 대우를 못 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남한사회의 적극적인 대책의 강구가 있어야 하며, 유엔이 난민에 대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하여 국제법적으로 용인된 '강제귀국금지' 원칙의 적용과 이를 통한 보호가 요청되고 있다.

서독의 경우 통독이전 헌법 제116조항을 통해 독일국적을 소유하거나 독일혈통의 난민 또는 박해자에 해당하는 자를 독일국민으로 인정하면서 이들을 이주민(übersiedler)이라고 취급하여 왔다. 즉 분단이후 동독에 거주하던 게르만 혈통의 독일인이 법적 절차 혹은 정치범 인도에 의해서 서독으로 이주해 온 경우, 독일인의 피가 흐르면 누구나 같은 민족으로서 이주자(Flüchtlinge, Zuvänderer)로 인정하고 있다.⁵⁾ 이는 일종의 이민개념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탈북주민에 대한 법적조항을 보면 헌법 제2조와 제3조에서는 탈북자들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귀순북한동포보호법⁶⁾인 법률 제4568호에서는 탈북

5) 통일원(1994), 인권관련 법규 및 동·서독 사례연구, 서울:통일연구원, p. 376.

6) 1993년 6월에 제정된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은 78년에 제정된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에 비해개선되었으나 독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진다. 서독의 긴급난민수용법(1950년도에 제정)은 체제우월 선전보다는 동독에서 탈출한 사회경제적 난민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오혜정, 1996:65). 특히 긴급수용법에 대한 1953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서독 기본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는 동독지역으로

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동포로 지칭하고 있다.

탈북주민들은 남한사회에서 규모와 사회경제적 배경 상 소수집단(minority)에 해당한다. 사회적 의미로 소수집단은 적은 수의 성원을 의미하나 특권, 권위나 권력을 가진 다수자들에 의해 소수자들이 신체적, 문화적 특징을 가짐으로써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편견과 차별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된다. 킨로크는 소수집단을 다수자(majority)로 부터 육체적, 문화적, 행위적 척도가 다르므로써 부정적인 부류로 취급되고 통제의 대상이며 다차원적이며 복합적인 대상이 된다고 한다.⁷⁾ 이와 같이 소수집단개념의 경우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자 열등, 좌절, 배제, 박탈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따라다닌다. 특히 탈북주민들은 정치적 환경 및 사회문화적 환경, 삶의 양식이 다른 체제로부터 넘어온 극소수의 집단으로, 다수집단이 소유한 규범이나 기대의 수용 및 적응, 동조, 통합을 강요당한다. 그러나 탈북주민들의 경우 소수집단에 해당하지만 같은 민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외되고 차별 받는 이질적인 소수자가 아니라, 공유하지 못했던 민족정체성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는 다수자의 한 성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탈북주민들은 새로운 사회체제인 남한사회에서 문화적 동화 및 사회심리적 적응상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새로운 체제와 삶의 방식에서 오는 차이들은 남한사회의 적응에 장애로 등장한다. 탈북주민들에게 있어서 효과적 적응이란 새로운 사회체제에 순응하고 통합되는 재사회화 과정으로 사회체제, 문화 그리고 물리적 환경과의 능률적 조화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복합적인 의미의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탈북주민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다.

부터 온 피난민에게도 적용됨은 물론, 동독주민들이 일단 서독으로 이주·탈출한 경우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없이 서독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확정했다(통일원, 1994:365).

7) G. C. Kinloch(1979), *The Sociology of Minority Group Relations*. Prentice Hall Inc, p. 26.

인간들은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하도록 자신을 변화하거나 조정한다. 이 과정을 적응이라 하며, 인간이 신체적, 사회적 환경에 대처하고 자신의 욕구 및 동기, 환경적 요구와 제약사이에 균형과 조화, 타협을 이루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행태주의 관점에서는 인간을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환경의 피조물인 수동적인 존재로서 보면서, 적응을 인간들이 학습행동을 이해하는 측면으로 본다.⁸⁾ 즉 인간은 다윈이 언급한 적자생존의 원칙처럼 근본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며 생존하는 존재로 학습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생물학적인 존재로 파악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지학과와 상징적 상호작용학파의 관점은 인간을 환경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존재로서, 스스로의 지각을 통해 환경을 재구조화시키는 능동적, 합리적, 창조적인 존재로 본다. 주어진 환경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변화, 조정을 통해 조화로운 관계 속에 적응하는 존재로 인간을 파악하는 것이다.⁹⁾ 이는 파슨즈의 거시적 차원에서의 적응개념과 유사하다. 파슨즈는 사회체제자체가 자신의 환경을 조정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특별한 하위체제나 경제제도의 발전을 통하여 통합·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관점은 인간이 복합적 사회체제인 환경을 조정하고, 대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보편적 존재로 인식한다. 새피는 한 사회의 성원인 인간이 사회의 다양한 상황이나 조건과 잘 조화를 이루는 상태 또는 과정으로 적응을 정의하여, 개체의 욕구와 환경과의 조화를 강조한다.¹⁰⁾

이와 달리 프로프는 적응개념을 외형적 변화와 내면적 변화측면에서 본다. 즉 적응개념을 정적 적응과 동적 적응으로 구분하여, 정적인 적응은 인간들의 성격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지 도구적 변화에 따른 새

8) 전병제(1993), 사회심리학, 서울:경문사, p.216.

9) 전병제, 위의 책, pp. 200~218.

10) H. F. Shaffer(1956), *The Psychology of Adjustment*, Houghton Mifflin co, p. 30.

로운 습관의 수용을 의미하며, 동적인 적응은 상황의 요구 즉 긴장이 발생되어 복종으로 이끄는 것으로 본다.¹¹⁾

그러나 이러한 적응개념 논의에는 일정정도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탈북주민들의 효과적 적응을 위해서는 개인적 측면에서의 심리적 적응과 사회구조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적응으로 구분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심리적 적응은 개인이 여러 가지 요구나 압력을 관리하거나 대처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행태주의학파의 관점과 맥락을 같이한다. 폴락은 개인적 적응을 타자의 기대에 맞추는 것은 물론 스스로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개인의 노력과정으로 규정하여 적응을 개체론적 차원과 미시적 측면에서 이해한다. 적응을 거시적 측면에서 본, 바라비와 그의 동료들에게 있어서 적응이란 사회적 통합, 사회적 평가, 그리고 사회규범에의 동조를 의미한다.¹²⁾ 이는 사회적 적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규범이나 기대에 부응하면서 긍정적 준거집단을 이용하여 감정적으로 그들과 일치시키려하며, 사회적으로 많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본다. 결과적으로 적응이란 개인적 또는 사회적 환경과 조화, 수용, 그리고 동조의 과정이나 상태라고 언급될 수 있다. 따라서 적응이란 한 사회체제가 요구하는 규범이나 가치를 학습하는 사회화과정과 내면화과정을 포함하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탈북주민들에게 있어 적응이란 새로운 사회의 삶의 효과적 수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탈북주민들에게는 남한사회적응에 필요한 새로운 규범이나 가치의 학습 및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게 된다.

한편 동화(assimilation)는 탈북주민들의 적응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문화적 동화는 하나의 문화가 다른 사회나 문화와 접촉하여 갈등 없이 융화되어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문화적 동화란 여러 가

11) E. Fromm(1941), *Escape from Freedom*, Rinehart. N.Y, pp. 15~6.

12) R. Bennett, Aging(1980), *Isolation and Resocialization*,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p. 30.

지의 독특한 하위문화를 가진 집단이 그 사회의 지배문화와 유사해지거나 지배문화권 속으로 흡수되는 것을 의미한다. 고든은 문화적 동화를 자기자신들의 고유 문화형태를 핵심사회의 문화로 바꾸는 것으로,¹³⁾ 인간의 내면적, 정신적 문화의 동화를 의미하는 내면적인 적응이라고 규정한다. 탈북주민들은 새로운 체제에서의 문화적 동화를 수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삶의 양식의 변화라는 커다란 변화 속에서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충격을 체험할 수도 있게 된다.

동화는 문화적 측면을 넘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사회구조적 동화는 새로운 사회의 다양한 조직, 제도, 단체들에 가입하고 이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활동을 개시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또한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동화의 경우 새로운 지역으로의 이동이 경제적 변화를 불가피하게 수반하므로 경제적 안정을 위해 상행위의 습득, 합리적 경제행위 등과 같은 제반 제도와 결합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든은 문화적 동화는 물론, 결혼동화, 구조적 동화, 정체성 동화, 태도수용적 동화, 행위수용적 동화, 시민적 동화 등 7단계로 동화과정을 언급하고 있다.¹⁴⁾ 이와 같은 동화는 탈북주민들이 거쳐야할 일련의 과정이다. 동화과정에서 탈북주민들은 상이한 문화의 접촉을 통해 일정정도 문화적 충격을 받게 되며, 문화지체현상을 체험하며 동시에 역할과 준거대상의 부재 및 가치관의 혼란과 같은 아노미현상을 체험하게 된다.

새로운 규범과 가치관, 생활양식 또는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사회화와 재사회화교육이 필요하게 된다. 탈북주민들에게 재사회화란 효과적인 적응, 갈등 없는 동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사회 통합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화는 사회적으로 공유된 사회적 규범과 가치, 생활양식을 학습하고 내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화는 상호인간관계의 약화를

13) M. Gordon(1964),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The Role of Race, Religion and National Origin*, Oxford Uni. Press.

14) M. Gordon(1964),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The Role of Race, Religion and National Origin*, Oxford Uni. Press.

의미하는 사회적 고립과 사회적 적응사이를 중재하는 매개변인으로서 집단규범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탈북주민들의 경우 기존의 삶의 방식을 상당부분 수정해야 하는 탈사회화와 재사회화과정을 거쳐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탈북주민들은 이전에 받아들인 내면화된 규범이나 가치, 행위유형을 떠나서 상이한 가치와 행위유형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과정은 극도의 긴장이 요구되며 전혀 새로운 가치체계, 규범, 요구를 수용하게 되는 것으로 인성의 변화도 초래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탈북주민들은 남한사회에서의 정상적인 삶을 위해서 효과적인 적응과 동화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는 효과적인 재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새로운 사회체제에서 요구하는 규범이나 가치, 기대의 수용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2) 탈북청소년의 적응실태

2002년도 국내입국 한 1,141명의 탈북자 중 19세미만은 210명으로 전체의 약 28.4%를 차지하고 있다.¹⁵⁾ 2000년 10월부터 2001년 5월 초 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한 적응실태분석¹⁶⁾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거주지 적응에 있어서 새로운 환경과 배정 받은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지 배정 초기 기초적인 생활정보 획득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단독으로 거주지를 배정 받은 청소년의 경우는 각종 공과금, 식비 등의 과중한 부담을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둘째, 사회문화적인 적응에서는 남한사회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남한체제를 이해하는 인지도 역시 급격하게 상승하고

15) <http://www.unikorea.go.kr>. 이 중 10세 미만은 55명(4.8%).

16) 전익수(2002), 탈북청소년 초기 사회적응방안에 관한 연구, 「더크고 싶은 아이들 2」, 남북문화통합교육원, pp.125~126.

있어 이들이 비교적 순조롭게 적응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남한사람들과의 제한적인 관계형성과 소속집단의 부재 등으로 인한 소외감을 어려움으로 표현했다.

셋째, 조사대상의 약 30%가 정규과정에 입학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은 비교적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또래집단과의 연령차(평균 2.6세), 출신과 나이를 숨기는 정체성의 혼란, 교사들의 관심 및 상담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넷째, 경제생활 적응에서는 대체적으로 점소한 생활형태를 보였으나, 일부 단독입국 청소년의 경우 지나친 소비행태를 보였다. 이들의 소비행태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소비행태를 모방하면서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내용 중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정규과정편입과 또래집단으로의 편입 후 느끼는 부적응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남북 간 교육제도와 내용의 차이 때문만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북한내부 및 탈북과정에서 겪은 교육공백 때문으로 평가된다.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의 교육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학습부진상태를 경험하였으며, 탈북 이후에도 중국 등 제3국내 체류기간동안 불안정한 신분에서 교육을 받지 못해 짧게는 수개월에서 5~6년 간 학습공백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경쟁적인 남한교육체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제도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많은 탈북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별다른 준비 없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충격과 소외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초·중·고등학교에 편입한 경우에도 대부분 독특한 억양과 문화적 충격, 학습부진 등의 이유로 친구들 사이에 놀림감이 되거나, 결국 이를 이기지 못하고 학교를 자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¹⁷⁾

탈북자 개개인의 경험과 심리상태 등에 따라 적응과 부적응의 모습이

17) 정병호(2001), 탈북학생사회·학교 조기적응을 위한 특별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교육정책연구 2001-1-05」, 서울:교육인적자원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탈북자들은 일반적으로 불안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북한에서 겪은 기아의 고통과 가족의 사망과 이별, 중국 체류기간과 탈북, 입국과정에서 겪은 극심한 공포 등의 결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낯선 남한문화로 이주해 와서 향후 진로, 인간관계의 형성, 취업 등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불안해한다.

둘째, 남한 문화에 대한 낯설음과 무지로 인한 부적응으로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학교생활에 편입되어도 자신이 탈북자임을 자신 있게 밝히지 못하는 경우와 억양, 습성의 차이 등에서 오는 조심성과 자신에 대한 숨기기가 또래집단 속에서의 이질감과 소외감을 만들어 낸다. 많은 탈북청소년들이 결국 자퇴를 하고, 점정고시 학원 등으로 모이게 되는 원인으로 이러한 소외가 작용하고 있다.

셋째, 탈북청소년들은 학습결손으로 인해 자신감을 결여하고 있다. 탈북과정과 중국에서의 체류기간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탈북청소년들은 자신의 나이보다 낮은 학년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육의 오랜 기간 단절로 인하여 학력의 차이가 생겨나고 학습능력이 뒤처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남북의 언어차이, 외래어에 대한 무지, 탈북자임을 숨기는 데서 오는 대화의 단절 등이 복합되어 학력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되고 탈북학생들은 결국 궁금증과 답답함만을 안은 채 학교생활에서 멀어져 가게 된다.

넷째, 탈북청소년들을 만나본 교사들의 일반적 의견에 따르면 또래의 남한 청소년들에 비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대부분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에 흑백논리적으로 대응하여 상대방이 완전히 틀렸고 아주 잘못하는 일이라고 비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신의 뜻을 좌절시키거나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에게는 연장자를 가리지 않고 갑자기 안면을 바꾸어 심한 욕설과 반말을 해서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러한

심한 공격성은 그들이 겪어야 했던 폭력적인 상황으로부터 학습한 결과이기도 하고 좌절이 많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반응이기도 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섯째, 탈북청소년들은 집단주의적 가치관과 보수적인 성역할관을 갖고 있어, 남북한 사회의 가치관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한에 비해 북한사회는 평등, 협동, 공유, 집단이익 등의 가치를 강조하여 왔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탈북자들은 남한사람들을 지나치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남녀 성역할 면에서도 상당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탈북청소년들은 남한의 청소년들이 남자친구에게 반말을 하고 툭 툭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한 탈북 어린이는 남한 여대생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는 여자가 웬 담배냐고 혼자 화를 내기도 하였다. 부엌일도 무조건 여자가 해야 한다는 생각도 탈북청소년들에게는 일반적인 것이며, 이로 인해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성역할의 변화와 적응은 본인의 내재된 성격이나 가치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서 매우 다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는 일반적으로 남한에서의 가족관계, 생활적응 등에서도 스트레스로 표출되게 된다.

여섯째, 탈북과정에서 가족들이 흩어진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의 생사여부에 대한 소식이나 나쁜 소식 등은 극도로 불안한 심리상태에 좌절감, 죄책감, 슬픔 등을 더하게 된다. 또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나 자신을 찾지 않는 가족, 부모에 대한 증오심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가족단위 탈북과 정착의 경우에는 반대로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남한의 육아방식과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 대해 아이들은 더 빨리 동화되고, 부모들은 북한에서의 권위적인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서 오는 가정내 갈등과 이로 인한 청소년들의 이탈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1) 중국체류 탈북 청소년 실태

북한 내에서 식량을 찾아 떠도는 아이들이 급증하자, 북한당국은 지역별로 '9.27 그룹빠' '꽃제비집결소' 등을 설치하여 이들을 임시수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유민들은 북한 내에서 장마당을 전전하다가, 식량과 돈을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가기 위해 북한을 탈출하는 경우가 급증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경우 일반성인에 비해 탈북으로 인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이기도 하다. 탈북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탈북 목적을, 배 고파서 19명(47.5%), 부모가 없고 의지할 곳 없어서 5명(12.5%), 가족과 동반 탈출 5명(12.5%), 잘 살 수 있다는 기대감 5명(12.5%), 돈을 벌기 위해서 3명(7.5%), 기타(3명)의 순서로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탈북 청소년의 대부분은 부모와 북한사회가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여 중국으로 탈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대상 탈북 청소년 40명 중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는 19명으로 가장 많은 47.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쪽 부모가 없는 경우 4명으로서 10%, 그리고 부모 생존 경우는 12명으로서 30%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탈북 청소년의 50% 정도가 북한에 부모가 없는 고아이며, 중국에서도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조건이다.

북한이탈주민의 현지 체류경험과 기간은 사회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부분의 탈북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중국내 체류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많은 탈북청소년들은 구걸하며 거리를 떠돌면서 기본적인 잠자리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였다. 이들은 잠잘 곳이 없어서 역전이나 아파트 계단, 공사판 등에서 잠자리를 해결하고 낮에는 이곳 저곳을 떠돌며 구걸하며 생활하였다. 이들 중 대부분은 부모가 사망했거나 병을 앓고 있어서 가족에게 의지

하여 살 수 없는 아이들이며 도리어 자신이 중국에서 구걸하여 벌어서 북한의 가족을 도와야 하는 형편이었다. 아이들은 대부분 영양실조로 신체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여 나이보다 3~4살 아래로 보이기 때문에, 나이가 차도 일자리를 얻기가 힘들어 부랑아처럼 거리와 시장을 떠돌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영양상태는 최악에 가까우며, 몸집을 보고서 나이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이다.

탈북 어린이들은 성장발육의 이상뿐만 아니라 극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결과 정신적 피폐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매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몇 명씩 집단을 이루어 배회하면서 절도 등 범죄행위도 자행하고 있어 조선족 사회에서 문제시 되기도 하였다. 또한 탈북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적령기의 교육기회 박탈과 일상화된 공포로 인해 성장이후에도 정상적인 성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3) 탈북청소년들의 부적응 유형 및 요인

(1) 학업능력

북한이탈주민적응실태조사(통일연구원, 2003)에 따르면,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이 인식하는 가장 큰 고민과 관련하여 취업문제 39.7%, 가족문제 26.6%라고 답변하여 취업과 가정이 가장 큰 고민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친구관계 9%, 진학문제 8%가 그 뒤를 잇고 있다. 10대는 압도적으로 진학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답변하고 있다.

대부분의 탈북청소년들은 국내입국이후 본인들의 연령에 준하여 취학하기에는 무리이다. 남북한의 교육내용의 차이뿐만 아니라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내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탈북청소년들이 중국에서 체류하는 기간동안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학업공백으로 인한 학력저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입국후 대부분 연령보다 2~3년 가량 낮추어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체발육 부진으로 인해 본인들의 연령보다 어려 보이기 때문에, 연령보다 낮은 학년에 취학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평가될 수도 있다. 2002년 서울시 4개구에 거주하는 취학연령 127명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학실태 확인결과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취학대상자 52명중 27명(51.9%)이 정규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상태로 나타난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고 학력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취학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나, 중학교 이상의 경우에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정규 학교교육에 제대로 편입되지 못하고, 미취학상태(7명, 5.5%)나 검정고시 준비(20명, 15.7%)를 하고 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주된 상담 내용은 학업 및 부모 문제와 ‘살기 막막함’에 대한 토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대개 중국에서 떠돌아다니는 과정을 겪음으로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4학년까지 다녔다 말해도 학력수준은 남한의 초등학교 5~6학년 정도인 경우가 많다. 검정고시학원을 다니는 학생들 중 다수는 수업내용이 너무 어려운 데다 남한 말의 이질성으로 더욱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학원수강과 함께 개별적인 학습지도(과외)를 받지 않으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늘푸른학교나 하늘꿈학교 등 대안학교에서는 체계적인 학습지도를 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검정고시 준비를 하는 아이들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느라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 교우관계

탈북 청소년들은 북한과 탈북과정에서 성인들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경험들을 하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남한의 청소년들이 나약하다고 느

끼는 경향을 보인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남한청소년보다 자신들이 더 어른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탈북청소년들은 북한출신에 대한 매우 높은 동류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탈북청소년들끼리 응집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인다. 취학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성인 북한이탈주민들과 달리 한번 모일 계기가 있으면 부산, 대구 등 각지에서 거의 다 출석하여 왔다. 탈북 청소년들이 점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같은 또래의 청소년보다는 나이 많은 직장인 혹은 주부들과 같이 공부하여 인간적인 정을 나누기도 하나 또래집단과 같은 교우관계는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늘푸른학교의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남한의 대안학교 학생들과 함께 캠프에 참여할 기회가 마련되었는데, 서로 헤어지면서 헤어지기 아쉬워 눈물을 보였고, 교사들이 볼 때도 이들이 잘 어울렸던 것 같았으나 돌아와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자기네끼리 놀고 장난한다,” “재수 없다”는 등 남한청소년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남한 청소년들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북한출신’이라는 열등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동네 깡패와 싸움을 벌인 후에 “남한 애들은 잘 먹어 뭇집이 좋더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남한 애’들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열등감과 이질감을 안고 있다.

(3) 폭 력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남한에 온 보름에서 한달은 이전 삶을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는 의지가 결연하나 두어달 지나면서 해이해지고 심리적으로 불안, 문제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시기가 된다. 또한 남한사회를 지켜보면서 ‘아무도 없다’는 막막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와 같이 심리적 갈등이 고조·심화되면서 사소한일이라도 자극이 올 때 억눌렀던 스트레스를 크게 터뜨리게 된다. 주된 문제 발생은 폭력이었고, 주로 남학생들에 의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폭력문제 발생계기는 대부분 사소한 것이다. 예를 들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남녀학생이 있었는데, 여학생이 TV를 보며 포도를 먹고 있을 때 남학생(20세)이 다가와 여학생의 포도를 계속 먹자 다툼이 일어났던 경우이다. 서로간에 “여자가 감히 어디 대드느냐”, “중간나새끼” 라며 폭언과 주먹이 오가다 남학생이 휘두르는 주먹에 여학생이 얼굴과 머리를 여러 대 맞게 되었다. 이에 여학생이 분개하며 담당형사에게 전화했고, 결국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50만원을 배상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다.

무술을 좋아하는 19세 남학생 A의 경우 매춘경험으로 성병에 걸리기도 하였고,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면서도 남한 갯패세계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등 방황이 심했었다. A가 성병에 걸려 민감해져 있던 시기 A를 포함한 몇 명의 교육생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가 술이 과해 함께 마시던 나이 어린 남학생 B-평소 A와는 친형제처럼 지내는 사이-가 그만 마실 것을 권유하자 A가 B를 때리기 시작, 술병이 깨지고 상황이 악화되었다. 주변에서 말렸지만 A가 B를 밖에 데리고 나가 때리던 중 B가 힘이 없어 일방적으로 맞고만 있는 것이 재미없다며 부엌으로 들어와 칼을 가지고 나갔다. 이를 말리던 중 물리적으로 힘이 약한 교사도 한 대 맞게 되었으며, A는 다시 밖으로 나가 B에게 칼을 쥐어 주면서 싸워보자고 하는 상황으로 악화되어 인근 경찰을 불러서 사건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러한 폭력은 흔히 음주이후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미성년인 경우에도 중국 등에서의 음주 및 흡연 경험으로 인해 국내 입국이후에도 음주나 흡연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청소년 몇 명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내 처벌을 받은 경

우도 발생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되어도 단속경찰에게 “본인은 북한이탈주민이며, 남한의 법규정을 잘 몰라서 실수한 것이니 선처를 바란다”는 식으로 상황을 모면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상당수가 오토바이에 대한 집착이 큰데, ‘집단폭주’를 즐기다 이웃 어른들이 문제제기를 하자, 오히려 ‘조선인민 공화국 만세’를 선창하면서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청소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4) 성문제

무연고 탈북청소년의 경우에는 하나원 퇴소이후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20세가 될 때까지 보호를 받아야 하고, 영구임대주택은 보호기간이후에 배정 받게 된다. 대부분 기숙사시설을 갖춘 대안학교(현재 ‘늘푸른학교’, ‘마자렐로 센터’, ‘돈보스코 센터’, ‘지구촌고등학교’ 등)에서 생활하게 되나,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켜 보호단체와 심각한 갈등관계에 처하게 되면 단체에서 이탈하여 20세가 되어 주택을 배정받은 북한이탈주민의 집에 더부살이 형식으로 떠돌게 된다. 이러한 북한이탈청소년의 규모가 30여명선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문제가 23~24세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다. 많은 경우 탈북청소년 한명에게서 문제가 파생되는 것으로 보인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경우에는 외로움과 장애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안고 있으며, 중국 체류기간동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성적인 경험을 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입국이후 자연스럽게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게 된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없이 단독으로 거주하는 20대 초반의 북한이탈주민의 집에 남녀가 혼숙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부모와 같이 입국한 경우에도 10대후반의 경

우에는 부모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한 가정의 경우 엄마는 폐렴에 걸려 아이들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자녀가 무질서한 생활을 하고 있으나, 엄마가 아들한테 겁먹어서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한 단체의 경우 교육생들이 신체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여, 단체검진을 받은 결과 여학생들은 모두 산부인과 질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나타낸다고 보다는 중국 등 제3국 체류기간의 어려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5) 신체이상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일반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와 같이 입국이후 여러 가지 신체적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검진에서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사례도 빈번하며, 이는 정신적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북한이탈청소년들이 학원에 갔다 오면 머리가 아프다면서 약을 먹고 자거나 게임에 몰두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피곤하다”는 말들을 자주 하며, 피부알레르기나 구상탈모증, 방광염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는 건강했는데 남한에 와서 이렇게 아프다”고 말하고 있으며, 입국 이후 신변불안의 위험에서 벗어나 그 당시 경험한 외상후 스트레스가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대다수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불안함과 막막함으로 매우 힘들어하는데, “자꾸 눈물이 난다”고 토로하며, 한 여학생은 손에 십자모양의 칼집을 내어 자해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6) 사례 - 늘푸른학교 18)

18) 늘푸른 학교는 무연고 탈북청소년을 위한 일종의 기숙사형 생활지원체제로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① 학력과 학령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일반적인 탈북청소년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늘푸른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 역시 탈북 후 짧게는 1년, 길게는 4~5년 정도를 중국 등에서 체류하다가 입국한 경우이다. 정확한 학력을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5월 현재 체류하고 있던 3명의 학생은 모두 얼마 전까지 대입검정고시 학원에 다녔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당시 학생들의 연령이 17세, 19세, 20세로, 평균 고등학생들의 나이보다 조금씩 높은 경우였다. 이들 역시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균학령에 비해 학력이 떨어지는 경우이다. 이들이 정규과정보다는 검정고시 과정을 선호한 것은 학력과 학령의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으로 본인들 스스로가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생활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될 경우 북한 혹은 중국에 체류중인 가족들에게 어떠한 해가 미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작용하기도 한다.

② 생활의 부적응에서 오는 어려움

늘푸른학교에는 최대 12명의 청소년들이 생활하던 적이 있다. 남한생들중에는 북한에서 설거지나 취사 등 일상적인 가사노동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부장적인 태도로 인하여 함께 생활하던 여학생들과 잦은 마찰을 보여왔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지급되는 50여만원의 보조금이 다소 무절제한 생활을 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늘푸른학교에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15만원을 기숙사비 형태로 납입하게 하고, 이 비용을 수용생들이 공동관리하여 각종 식대, 공과금 등으로 운영하게 하여 생활적응훈련을 겸하게 하였다. 또한 요일별 청소, 식사 당번 등을 정하였고, 가계부쓰기, 조를 나누어 시장보기 등 일상적인 과정을 생활프로그램으로 시행하여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상담교사에 따르면, 무연고 탈북청소년들의 적응력을 남한의 소년소녀가장 정도의 수준으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③ 주변환경과의 부조화와 기대심리

늘푸른학교가 현재의 자리에 위치한 것은 2002년 2월 말 부터이며, 5월경 외부에 공개하였다. 초기에는 인근 주민들이 탈북청소년 수용시설임을 알고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수용생들의 공중도덕 경시로 인한 소음과 인근공원에서의 화재사건, 학생들끼리의 싸움, 다른 탈북청소년들의 오토바이 왕래, 취재진과 연구자들의 빈번한 출입 등으로 인해 인근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였다. 이런 일들을 거치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고, “왜 하필이면 우리 동네에 왔느냐?”는 여론이 조성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탈북청소년들이 국내에 입국하기 전에 이미 중국 등에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탈북자들에 대한 처우 등에 대한 다소 과장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 자신들의 처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각 연구자나 취재진의 방문시 그들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미리 예측하여 각색하여 설명하는 경우나 판성적으로 적당히 이야기하고 나중에 “어차피 서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 저런 사람들한테는 이 정도만 해줘도 된다”는 식의 심경을 밝힌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경향을 탈북청소년 전체의 부정적인 성향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그들이 탈북과 중국에서의 생활 그리고 국내입국과 정착과정에서의 경험 등을 통하여 일정부분 부정적인 심성과 사고를 갖는 과정을 겪었음을 짐작케 한다.

4) 정책대안

(1) 재정기반 확충 및 민간참여를 위한 지원

최근 탈북주민의 국내적응에 대한 민간단체의 참여가 확대추세에 있

으나, 이를 제도화의 수준으로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뒷받침할 물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탈북청소년의 적응을 돕는 민간사업의 경우에도 경제성보다는 남북 이질화의 극복과 사회통합이라는 공공적 의미를 강하게 지니고 있는바, 이를 감안하는 재정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체제와 아울러 각종 관련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차원의 관련 사업기금의 조성을 통해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운동의 물적 기반이 튼튼한 서구에 비해 한국의 경우 시민사회의 기초가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기부문화가 일반화된 서구와 달리 한국 사회의 경우 대다수의 NGO는 재정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민운동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분야의 민간단체도 이와 같은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시민사회의 성장과 기부문화의 발달에 따라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나 정부의 지원을 다각화하여 시민운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탈북청소년의 적응을 지원하는 민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아울러 기타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민간과 정부의 협력관계 구축

탈북청소년의 적응문제 해소에 있어 민간과 정부간의 효율적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민간의 경우 적극적 의지가 있어도 재정문제 등의 제약이 있으며, 정부의 경우 구체적인 노하우의 축적이 미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상호보완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탈북청소년의 적응을 순조롭게 지원할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가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나, 사안의 특성상 정부의 역할이 효율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민관 task force를 구성 대비책을 마련하는 공동의 노력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3) 무연고 탈북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확립

탈북청소년중 특히 무연고 청소년에서 문제행동의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점증하는 무연고 청소년(2002년 7월기준 150여명)의 정착지원을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일반 탈북자와는 차별화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3국 체류기간 및 북한 내부에서의 부정적인 경험, 남한사회에 대한 무지, 청소년 문화에 대한 그릇된 인식, 가족부재로 인한 취약한 정착여건으로 인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대규모 집단시설보다는 전반적인 조정체계 하에 교육과 생활관리를 위한 ‘그룹 홈’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방식은 일반적인 가출청소년 및 장애청소년 등의 경우에도 가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생활관리’ 방식이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4) 후견인 제도의 활성화

또한 무연고 청소년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법정후견인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제도운영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개별 청소년에 대해 여러 명의 mentor가 협력하여 부분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은 mentor는 생활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인 자원이 많다는 장점이 있으며, 동년배에 해당하는 학생 mentor의 경우에는 북한이탈청소년과 공유할 수 있는 이해 폭이 넓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다. 탈북청소년에 친화력이 있는 다수의 mentor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

(5) 제도권 교육에 대한 보충체계 확립

제도권 학교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학교 등의 형태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대안학교의 형태는 현재 ‘늘푸른학교’, ‘마자렐로 센터’, ‘꽃지모’ 등이 있으며, 순수민간 혹은 종교단체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으나, 그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다. 순수민간의 경우 재정적인 문제와 규모 등에 있어서 시범적 성격이 강하며, 종교단체에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돕는 것에 관심이 많으나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긍정적으로 해소하는 것과 아울러 정상적인 대안학교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현 규모의 경우 향후 발생가능한 탈북청소년의 규모에 비해 부족한 만큼 대비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6) 탈북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의 개발

탈북청소년들의 경우, 일반적 사회적응과 차별화되는 특징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지원이 미진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탈북 청소년에 대한 특화된 형태의 사회적응 및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예상가능한 일탈행위에 대한 예방적 교육 및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생활방식 등에 대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

(7) 관련 프로그램과의 연계

2004년 3월 개원예정인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생 등 국내 거주외국인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초등학교는 내년 1학기에 시범 운영한 뒤 9월부터

터는 정식 초등학교나 인근 초등학교의 병설학급 형태로 격상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특히 진흥원은 불법체류자 자녀도 교육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중국·몽골·동남아 출신 불법체류자의 자녀를 최대한 수용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적응프로그램을 북한이탈청소년 적응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이민자와 외국인 자녀를 위한 ESL 프로그램이 단순히 영어교육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과목별 학습지도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모들과의 접촉(오리엔테이션, 학부모면담)을 통해 아이들의 적응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ESL 프로그램은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학교단위로 개설되어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단위로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입국 초기에 특별학교 방식(기숙사시설 학력인정학교)으로 운영한다고 할지라도, 지역단위의 적응 프로그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별학교는 단기로 운영하고 가족들과 같이 입국한 경우에는 지역단위로 조기에 편입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귀국청소년

1) 귀국청소년과 적응문제

흔히 청소년기는 '정체성'의 미확립으로 특징지어 일반화되고 있다. 즉 청소년기는 성장과정에 있는 시기로 육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신적 발달과정에 있는 시기로 인식된다. 이 정신적 성장과정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으로 인식된다. 이런 의미에서 청소년기는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질풍노도의 시기'로 정의되는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관은 전형적으로 근대적 청소년관을 대변한다. 근대 시기의 '아동' 개념은 성장 과정에 있는 아동이라는 범주를 설정함으로써 성인과 아동을 구분하였다.¹⁹⁾ 말하자면 근대적 핵가족이 등장하면서 생계책임자인 아버지, 가사담당자인 어머니, 이들의 보호 아래서 자라는 아이라는 구도가 자리잡게 된다. 이때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성인이 되는 과정에 위치하게 된다. 이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청소년기에는 정체성이 미확립되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혹은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외부에 반응한다고 가정된다.

이런 식의 아동관은 청소년을 바라보는 기본 시각을 이룬다. 이 문제가 귀국학생의 경우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 아직 미확립된 시기에 겪은 두 문화 경험의 혼동을 더욱 증폭시키고 이로 인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식의 진단을 일반화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성인이 두 문화를 겪으면서 낡은 문제보다 좀더 확대된 형태로 정체성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이론적 관점이 성립되게 된다. 말하자면 통상적인 문화접변 과정에서 느끼는 성인의 혼란에 특수한 어떤 혼란이 추가된다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귀국 청소년의 경우 한 개인이 겪는 부적응 사례와 두 문화 체험이라는 요소가 단순하게 엮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귀국학생과 일반 학생 사이에 적응 문제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한다.²⁰⁾ 그렇지만 귀국 청소년의 경우 적응 문제가 '특별하게' 존재한다고 가정되는 이유 중에는 특정 청소년이 적응과정에서 드러내는 문제를 과도하게 두 문화 체험과 자동적으로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까지도 상관적일 수 있다.²¹⁾

19) 김혜경(1998), 일제하 '어린이기'의 형성과 가족변화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 최화순(1990), 해외 귀국아동의 적응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1) 이러한 문제설정과 관련하여 귀국학생들의 적응문제가 그들의 부모

사실 많은 귀국 청소년의 경우에 두 문화 체험이 경험적인 측면에서나 협상능력에 있어 강점을 가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이 포착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경험치와 협상능력에 따라 귀국 후의 문화를 서로 다르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지만, 이러한 다양한 지점들에 주목하지 않아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단순한 접근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귀국 청소년의 부적응을 다루는 논문들에서 지적하는 문제는 흔히 문화적 충격으로 인한 충격, 의사소통의 어려움, 학습 준비 정도의 차이 등이 거론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적응을 보이는 문제는 이러한 적응 문제로 환원되어 설명되게 된다. 또한 대책에 있어서도 특별학급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보충수업’에 불과한 적응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를테면 학과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실 개설 이외의 대응이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부재하며, 실제적인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역할로 위임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대책은 “당장 필요한 응급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 같은 문제는 지원과 예산 등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 타 문화 경험을 가진 학생들을 장점을 살려낼 수 있는 구체적인 경험치가 확보되지 않은 이유도 크게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부적응 양상은 문제가 이미 제기된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출국 이전과 외국 생활 속에서의 대책과 연관되지 않으면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고, 구체적인 경험의 차이에 따른 세부적인 상황 파악과 대안 마련이 없이는 단순한 교과교육에 머물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넘어 대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문화 적응에 대한 패러다임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학교 적응 문제, 더 나아가 문화 적응의 문제는 좀더 폭넓은 맥락이

가 상류층이 많은 이유로 과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이윤선(2003), 귀국학생의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p.5.).

필요하다. 흔히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 접할 때 다양한 반응이 나타난다. 흔히 적응-부적응의 틀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적응과 부적응의 문제는 단순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기존의 연구 성과는 좀더 구체적인 문화 적응의 유형을 나눈다. 예를 들어 문화 적응의 유형으로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로 범주를 나눌 수 있다.²²⁾ 이러한 구체화된 범주 구분은 문화 적응에 대한 다양한 측정기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적응 문제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²³⁾ 즉 이 틀에서만 보더라도 통합의 경우에서처럼 두 개의 문화를 반성적으로 이해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종합을 시도하는 적응 유형과 동화의 경우처럼 새로운 문화에 현상적으로 동화되어 잘 적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적응이 차이를 보이게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적응 여부의 문제가 유형화된 범주로 치환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는 점이다. 적응은 기존에 습득한 문화를 버리고, 변화된 환경과 문화에만 익숙해지는 단선적인 과정이 아니라, 적응 주체로서 자신이 내재화시킨 복수의 문화적 인식틀을 능동적으로 혹은 창조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인 것이다.²⁴⁾ 즉 적응은 개인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일방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문화적 능력을 습득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찾아가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높다.

흔히 관찰하는 것처럼 사람이 어떤 문화에 성공적으로 적응이 되면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에게는 과도

22) 각각은 다음을 의미한다. 통합은 두 문화를 비교하여 새롭게 종합되는 것을 의미하고, 동화는 하나의 문화에 선택적으로 동일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분리는 새로운 문화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변화는 두 개의 문화 자체와 거리를 두면서 주변에 위치하는 방식을 뜻한다.

23) 정진경(2003), 문화간 훈련 이론의 개괄, 2003년 5월 9일 남북문화통합 워크숍 발제문.

24) 이윤선, 앞의 논문, p.4.

한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자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귀국 청소년의 경우도 학교 생활 등에 적응하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 생활에서 벗어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특히 사회적 차원에서는 타 문화 경험의 자산이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시킨다. 그런 점에서 귀국 청소년의 문화 적응 문제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중요성이 재인식될 필요가 있다. 다만 적응의 문제를 하나의 기준을 갖는 단일한 과정으로 인식할 때 다양한 반응과 행동을 ‘문제화’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흔히 귀국 청소년의 문제는 다음 세 차원에서 지적되고 있다.

첫째, 학업적응 문제다. 학교에서 겪는 문제로는 크게 학업성적과 교우관계, 입시에 매달리게 되는 중고생에게는 특히 성적문제가 크다. 특히 국어와 수학과목이 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국어의 어휘력 및 이해력 부족은 다른과목 학습능력에도 영향을 끼친다. 외국학교 수학은 계산기를 이용해 수업을 하지만 국내에서는 손으로 푸는 연산능력을 위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된다.

둘째, 교우관계등 학교생활지도 문제다. 학교생활의 성공여부는 교우관계에 달려있다. 사춘기를 외국에서 보내 서구식 사고방식을 가진 아이들은 일상적인 행동이나 옷차림이 다른 또래 친구들에게 ‘이상한 아이’라며 따돌림을 당하기도 한다. 다시말해 똑같이 교복을 입고 있지만 속은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생활관습을 가지고 있다.

셋째, 일시적인 역 문화충격(culture shock) 현상이 일어난다. 문화충격이란 처음 현지도착에서 발생하는 자기정체성(Identity)의 오류에 빠지면서 적응과 부적응이 반복하면서 진전해가며 결국 마지막에 쌍방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모순을 극복해 가는 현상인데, 앞에서 지적한 학업과 생활부적응에서 오는 일시적 또는 장기적인 현상으로 3~4년 이상의 장기 체류학생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현지의 생활감각, 습관 등의

모든 행동과 가치기준이 현지화가 되어 있어 한국인다움과 거리가 있어 우리의 가치관 및 학업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사회적 이탈행동으로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²⁵⁾

이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 적응과 문화 적응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정보 부재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지식이나 사실 자체에 대한 인식 부재는 정보 자체를 습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극복 가능하지만, 이 경우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피상적이고 일반적인 사실에 한정되어 있다는 약점을 지닌다.²⁶⁾ 학업능력의 문제도 이 차원의 문제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어에 대한 학습능력이 구비되지 않아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하는 문제일 수 있다.

일차적 차원의 적응 문제가 사실이나 지식에 대한 무지와 관계가 있다면, 통상의 적응 문제는 이 차원을 넘어서 존재한다. 말하자면 부적응 문제는 사실 자체를 몰라서 생긴다기보다는 문화 간 차이에서 비롯되는 행동 양식과 가치관, 관념, 의식 등의 차원에서 발생한다. 자문화와 타문화 사이에는 문화의 문법이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의 행동이나 가치관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편견을 만들게 된다. 인류학에서 강조하는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에 따르면, 이 경우 타자의 문화를 이해하거나 타자와 공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의 문화 자체가 '동질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타 문화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지 않아 문화적 적응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클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동질성이 강조되는 문화는 다양성에 대한 수용 정도, 그리고 문화 간 차이에 대한 관용성이 낮아 타 문화 경험에 대해 차별적인 태도를 형성시킬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타 문화에 대한 노출과 경험이 쌓여가는 중이기는

25) 김철영(1998), 이중문화 체험바탕으로 세계화 시대의 인재될 수 있어, 「고대 교육신보」, 1998년 3월 25일자.

26) 위의 글.

하지만 타자와의 관계 설정에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는 현실이 존재한다.²⁷⁾

‘동질성’을 강조하는 한국사회라는 맥락 속에서 귀국 청소년의 적응 문제를 다룰 경우 상대적으로 한국사회의 기준과 표준에 맞추어야 하는 문화적 압력이 상당히 크다. 하지만 귀국 청소년의 경우 한국사회를 경험한 정도가 다르다. 일부는 외국에서 태어나 학교를 다니다 귀국한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한국사회에서 성장하다가 일시적으로 외국 경험을 한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취학하여 단어나 속담 등을 몰라 겪는 곤란이 크고 한국문화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출국하는 형태의 경험이 많다. 이에 반해 후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혼란이 한국 내에서 연장되어 나타나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고 태도 형성 등에서 혼란을 겪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 어떤 경우이던 한국 문화에 대한 동화 압력이 커서 부적응 문제를 확대시킬 가능성은 적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 적응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만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한국인다움’의 기준에 미달하는 것 자체를 문제로 삼는 식으로 문화 적응의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기는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단일한 문화적 기준 자체가 부적응을 양산시키는 토양이기도 하며 문제를 단순하게 접근하는 이론적 배경이기도 하다는 새로운 문제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귀국 청소년의 문화 적응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적응 양상에 대한 조사보다는 그 맥락을 해석할 수 있는 질적인 작업이 요구된다. 말하자면 자아 정체감을 형성시키는 경험과

27) 타 문화에 대한 태도에서 일종의 ‘이중성’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우위로 인식되는 문화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태도가 높지 않지만, 한국사회보다 하위로 인식되는 문화에 대한 차별이 심한 것도 하나의 특성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주노동자 문제, 탈북자 문제, 그리고 연변 동포 문제 등은 이러한 배타성이 잘 드러나는 영역들이기도 하다.

반응 등을 좀더 심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귀국 청소년의 범주가 상대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그 경험 또한 개인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문화 적응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질적 수준 확보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2) 귀국 청소년의 실태와 특성

(1) 귀국 청소년의 실태

글로벌화와 조기유학의 급증으로 인해 귀국 청소년의 적응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전지구화의 흐름 속에서 해외 경험이 이전처럼 낮설지 않고 한국 교육 현장을 떠나 자녀를 교육시키려는 흐름들이 맞물리면서 귀국 청소년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 지적되듯이 한국사회 외부에서 교육을 시킬려고 하는 부모들의 욕구는 매우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다. 조기유학의 증가는 한국사회의 교육열의 일차적 반응이라는 차원도 존재하지만 노동시장의 경쟁력 확보 차원이라는 합리적 선택의 차원도 존재하고 영어 학습과 한국교육 환경에 대한 실망을 통해 좀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떠나는 개인적 선택의 차원 등이 얹혀져 나타나는 현상이다.²⁸⁾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유학의 경우에 삶의 터전을 외국으로 옮기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다시 한국사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런 차원에서보면 한국사회 외부로 떠날 때 발생하는 적응 문제도 있지만, 다시 한국교육 내로 편입될 때 겪는 여러 어려움들이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사회적 통념 상에서 해외 경험을 지닌 자녀들의 교육 적응 문제는 일부의 문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공적인 대응이 적

28) 이미나(2001), 한국교육의 현실과 조기유학, 「2001년도 제 1차 KEDI 교육정책포럼: 한국교육의 현실과 조기유학(유학이민)의 명암」, 서울:한국교육개발원.

절한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동의도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의 반영이겠지만, 사실 해외 유학, 특히 조기유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확한 통계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나간 유학의 경우 파악이 가능하지만, 불법 유학의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유학 생활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교육이민의 경우에도 실제 목적이 교육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²⁹⁾

현재 가능한 선에서 파악될 수 있는 추정 통계치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표 IV-1> 초·중·고 유학자수 및 유형별 비율³⁰⁾

(단위: 명, %)

학년도		초	중	고	합계
'95	총 계	5,146	3,984	1,944	10,993
	유학인정	7(0.1)	27(0.7)	25(1.3)	59(0.5)
	해외이주	2,267(44.1)	1,762(44.2)	824(42.4)	4,853(44.2)
	파견동행	2,644(51.4)	942(23.6)	295(15.8)	3,881(35.3)
	편법유학	228(4.4)	1,173(29.4)	799(41.1)	2,200(20.0)
'96	총 계	5,011	4,619	2,843	12,473
	유학인정	10(0.1)	32(0.7)	14(0.5)	56(0.5)
	해외이주	1,912(38.2)	1,607(34.8)	847(29.8)	4,336(34.8)
	파견동행	2,758(55.4)	1,269(27.5)	507(17.8)	4,534(36.4)
	편법유학	331(6.6)	1,711(37.0)	1,475(51.9)	3,517(28.2)
'97	총 계	4,776	3,873	3,361	12,010
	유학인정	0	1(0.03)	393(11.7)	394(3.3)
	해외이주	1,839(38.5)	2,022(52.2)	1,048(31.2)	4,909(40.9)
	파견동행	2,696(56.4)	873(22.5)	258(7.7)	3,827(31.9)
	편법유학	241(5.5)	977(25.2)	1,662(49.4)	2,880(24.0)

29) 김홍주(2001), 조기유학(유학이민)의 현황 및 국민의식 분석, 「한국교육의 현실과 조기유학(유학이민)의 명암」, 2001년도 제 1차 KEDI 교육정책포럼, 서울:한국교육개발원, p.8.

30) 김홍주, 앞의 논문, 10쪽에서 재인용.

학년도		초	중	고	합계
'98	총 계	5,678	3,025	2,035	10,738
	유학인정	4(0.1)	28(0.9)	401(19.7)	433(4.0)
	해외이주	2,850(50.2)	1,973(65.2)	934(45.9)	5,757(53.6)
	파견동행	2,616(46.7)	579(19.1)	224(11.0)	3,419(31.8)
	편법유학	208(3.7)	445(14.7)	476(23.4)	1,129(10.5)
'99	총 계	5,695	3,605	1,937	11,237
	유학인정	27(0.5)	80(2.2)	82(4.2)	189(1.7)
	해외이주	2,623(46.1)	2,198(61.0)	888(45.8)	5,709(50.8)
	파견동행	2,640(46.4)	698(19.4)	351(18.1)	3,689(32.8)
	편법유학	405(7.1)	629(17.4)	616(31.8)	1,640(14.6)
2000년 3.1~ 4.30	총 계	1,304	812	758	2,874
	유학인정	4(0.3)	22(2.7)	31(4.1)	57(2.0)
	해외이주	539(41.3)	393(32.8)	248(32.7)	1,180(41.1)
	파견동행	649(49.8)	140(17.2)	143(18.9)	932(32.4)
	편법유학	112(8.6)	257(31.7)	336(44.3)	705(24.5)

주 : ()는 전체 초·중·고 유학 학생수 대비 유형별 유학생 비율임.

2000학년도인 2000.3.1~2001.2.28 까지의 통계는 현재 집계중임.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집계자료.

이 표에서 보듯이 해외 유학은 초등학교의 경우와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해외이주와 파견동행의 경우가 많은데 비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유학으로 인정되어 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고 편법유학이 상당수에 이른다. 여하튼 해외 유학이 파악되는 경우만 하더라도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만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중에서 상당수가 다시 한국사회의 교육현장으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가정하면 귀국학생의 숫자는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교육부의 규정에 따르면 귀국학생은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외국의 학교에 다니다가 한국으로 귀국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규정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귀국학생은 개개인의 능력, 자질, 다른 문화의 내재화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를 기간으로 한정하여 정의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는 1년 정도만 해외의 학교에 있어도 언어 및 행동발달과 문화의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기간은 별다른 중요성을 갖는 것은 아닐 수 있다.³¹⁾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귀국 청소년의 숫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다음은 연도별 귀국학생의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표 IV-2> 학교급별 연도별 귀국학생 귀국 현황³²⁾

학교별	'91	'92	'93	'94	'95	'96	'97	'98	계
초등학교	1,504	1,568	2,229	2,631	3,045	4,883	6,351	5,513	27,724
중학교	318	268	314	789	1,040	1,774	2,252	1,993	8,748
고등학교	144	96	107	654	722	931	1,612	2,005	6,271
계	1,966	1,932	2,650	4,074	4,807	7,588	10,215	9,511	42,743

이 자료에서 보면 연도별로 귀국학생의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90년대 초반만 해도 2000명 선에 이르던 숫자가 90년대 말에는 만명 선으로 5배 증가한 상태이며, IMF 경제위기로 인한 90년대 말의 경제상태가 최근에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³³⁾

귀국학생은 90년대 초반에는 주로 초등학교에 밀집되어 있는데 반해,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중고등학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

31) 차경수(1998), 다문화시대의 귀국학생 국내교육 적응방안, 「귀국학생 조기적응 교육 및 국제성 유지 신장 방안」.

32)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 「1999 귀국학생 교육담당 초등교육 연구」, 1999에서 재구성.

33) 일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귀국학생의 숫자를 대개 4000~5000명 선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한 규모에 대한 파악은 사실 어렵다.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90년대 초반의 귀국학생의 대다수가 부모의 유학이나 근무 등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최근에 들어서는 조기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귀국학생이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의 경우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류층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외국 유학을 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귀국의 이유나 구체적 내용을 사안별로 구별하기 쉽지 않다.

귀국청소년의 체류 기간과 해외 경험의 성격 등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알 수 없지만, 귀국 청소년의 숫자는 당분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국 청소년을 위한 교육 대책 등이 요구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시범적으로 특별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3월 7일 발표한 <귀국학생 교육대책>에 따르면, 귀국 학생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의 강남지역과 대전의 서부지역을 교육협력지역으로 지정하고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특별학급을 운영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일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중고교에 귀국학생반을 설치하여 적응교육과 국제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귀국청소년 대책은 주로 초등학교에 집중되어 있으며, 학교 생활 적응이라는 틀에 묶여져 있다. 특히 귀국 청소년을 구성하는 범주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초등학교 중심으로 접근하는 대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귀국 청소년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2) 귀국 청소년의 특징과 적응

귀국 청소년은 외국 생활의 경험을 통해 다문화 체험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나이, 성별, 태도 등의 변수와 경험한 문화권의 차이, 부모와의 관계 여부 등에 따

라서도 다양한 특징을 갖는다.

물론 귀국 청소년의 경우는 다문화 체험의 경험이 존재하고 영어권에서 학교를 다닌 경우에는 ‘특권화’된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능동적인 특징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귀국학생들은 “체제국의 언어를 비교적 유창하게 구사하고, 해외에서 체득한 독특한 생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 자기 표현의 훈련이 잘되어 있고, 개성적이며 창조성이 풍부하다. 거기다가 유연하고 탄력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인식도 객관적이다. 특히 수업 태도가 적극적이며, 무엇을 배우느냐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며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다.”³⁴⁾

이러한 장점에 비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제한적이며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흔히 발견되기도 하며, 한국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학교 생활에서 단체행동이나 경쟁적인 활동에 따라가지 못하는 적응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³⁵⁾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귀국 청소년에 대한 논의는 외국 생활과 관련된 특징으로 이미지화되어 있다. 하지만 귀국 청소년의 장점에 주목하건 단점에 주목하건지 간에 귀국 청소년이 보이는 특징을 ‘문화적 차이’로 이해하지 않고 일반학생과의 비교를 통해 장단점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³⁶⁾ 따라서 이러한 특징 파악은 주로 귀국 청소년의 적응, 좀더 나아가 이들이 가진 능력을 유지시키는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추는 대안 마련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귀국 청소년의 적응 문제는 그 기준에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국제교육진흥원 조사에서 약 20% 정도가 학교 생활과 사회 생활에서 어려움

34) 순천용담초등학교(1999), 「교육부 지정 시범학교 운영보고서(2/2): 귀국학생의 학교생활 조기 적응과 해외 경험 살리기」, pp.11, 17, 6.

35) 앞의 보고서, p.6.

36) 이윤선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향의 연구를 ‘핸디캡’론으로 명명하고, 그 내부에 귀국자녀 결함론과 귀국자녀 장점론으로 세부화된다고 분석하고 있다(이윤선, 앞의 논문, p.5.).

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³⁷⁾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분석은 문화 사이의 차이가 문화적 정체성이나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특정 연령에서 귀국 후 적응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응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데 맞추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학교교육의 실천이 외국의 경우와 차이를 가지고 있어 귀국 후 적응에 실패하고 비행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식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다.³⁸⁾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문화와 적응 사이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문제를 개인이 사회와 문화에 원만하게 편입되는 것을 적응으로 간주하여 기존 체제로의 편입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방지하고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설정되고 있는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이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학교 생활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바람직하게 수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학교생활에 적응은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시킴으로써 교사, 다른 학생 등 의미있는 타자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가며 학교 규범에 순응하여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³⁹⁾

사실 이러한 적응에 대한 관념은 일차적으로 적응의 문제를 개인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 경험자들에 대한 배려의 문제가 사회 환경 혹은 학교 환경의 개선 문제와 연결되지 못하고 개인적 수준의 적응 문제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적응의 문제들이 기존의 존재

37) 이형삼, “귀국학생들 2: 파란 눈 친구, 선생님이 그리워요,” 「NEWS+」 제 77호, 4월 3일자.

38) 특히 이런 인식과 관련하여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언론의 보도 태도이다. 각 매체에서 조기유학의 문제를 다루는 패러다임은 한편으로는 ‘낙원’, 한편으로는 ‘마약’ 등으로 상징된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많이 다루어짐으로써 실제 부적응의 구체적인 지점들에 대한 인식은 매우 제한적이다.

39) 순천용담초등학교, 앞의 보고서, p. 5.

를 정당화하는 기능도 있다. 적응이 도달해야 할 목표가 될 때 사실 다문화 체험에서 얻은 아이들의 지식이 발전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외국과 한국 사회의 교육현장의 차이에서 비롯된 내적 심리상태의 형성이라든지, 적응을 위한 타협과정의 문제 등 구체적인 경험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는 ‘한국 학생 만들기’에 다름아닌 대책과 방안을 양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효과는 지극히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다.

3) 귀국 청소년 적응을 위한 정책대안

(1) 정부와 민간의 협력 모델 만들기

이미 공론화된 방식과 같이 시범학교나 연구학교를 좀더 많이 지정하고 국제고교 등의 설립 등을 통해 귀국 청소년의 자질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이런 대안의 문제점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사실 현재의 시점에서 귀국 청소년의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로만 한정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대단위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현실이다. 따라서 예산 등의 대폭적 지원이 가능하지 않은 시점에서 좀더 실천가능한 형태가 고민될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고려사항으로는 첫째,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 그 모델이 복제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귀국 청소년의 숫자가 증가하는데 비해 수혜자의 수는 절대적으로 제한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접근가능하고 사회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고민되어야 한다. 귀국 청소년을 위한 대안 마련이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별도의 학교를 세우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셋째,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고정된 모델에 한정되지 않아야 한다. 학교라는 상상 속에는 교과과정을 절대화하는 활동 모델이 존재하지만,

귀국 청소년의 적응 문제는 단순히 교과과정의 원활한 수행 문제로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자원과 정부 지원을 결합시키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방과 후의 모델을 활용하거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기획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안 마련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우선적으로 민간주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인큐베이팅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2) 소프트웨어 개발과 인력자원 교육 지원

한국사회에서 귀국 청소년 적응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노하우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다. 관련 연구작업 등이 초기적인 단계이고 그 결과에 대한 검증작업도 이제 출발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소프트웨어와 매뉴얼이 개발되지 않고서는 특정한 학교가 설립된다고 해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이미 살펴본 대로 귀국 청소년은 단일한 범주가 아니며 부적응의 유형 또한 동일하지 않다. 예를 들어 능동적인 부적응 유형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유형 차이에 따른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작은 실험 등을 지원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작업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귀국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을 담당할 인력 자원에 대한 재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재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시범 실시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 교사들 사이의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정보를 축적하는 작업 등이 병행 실시될 필요가

있다.

(3) 출국 전 교육과 귀국 준비과정의 내실화

귀국 청소년의 적응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외국 생활을 능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전 준비, 그리고 귀국을 위한 학업 준비와 마음의 준비등의 요소가 사례 분석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말하자면 귀국 한 이후의 교육 과정을 체계화하는 것만으로는 귀국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에 미흡하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 생활에 대한 단순한 환상보다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제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육 상황에 따라갈 수 있는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 제공의 기능이 사실 단체에 위임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특례입학과 같은 문제에 관한 정보 제공등의 경우로 정보가 한정되거나 집중되는 폐해가 나타난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집적되고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4) 적응 단계에 맞는 다양한 교육 내용의 확보

이미 지적된 바 있지만 귀국 청소년의 적응 문제는 크게 두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장 초기의 문제로 한국어의 미숙에 따른 의사소통 문제 차원에서부터 다문화 경험에 따른 문화적 인식차를 극복하기 위한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의 문제까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귀국 청소년의 상황과 조건에 따른 세분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귀국 청소년의 상황에 대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내용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작업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아직

귀국 청소년에 대한 양적 데이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실태 파악과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조사연구 작업이 실시되어야 하고, 이러한 조사작업을 바탕으로 단계별, 수준별 맞춤 학습이 가능한 형태의 다양한 교육 내용을 확보해야 한다. 귀국 청소년을 위한 ‘응급조치’적 성격의 대안과 좀더 확대된 의미에서 그 자원이 다시 유출되지 않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5) 다문화 이해교육의 실시

귀국 청소년의 문제는 그 자신에 고유하게 내재한 결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귀국 청소년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동화 압력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귀국 청소년만의 교육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학교 구성원 자체, 나아가 사회 전체 수준에서 다양성과 사회적 관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문화 이해교육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시민교육, 글로벌 시민교육, 인권교육 등과 연계되어 실시될 수 있다.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 상황을 막고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는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귀국 청소년의 경우가 결합되어 교육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교육은 적응의 문제를 좀더 확대된 지평에서 다룸으로써 문화적 차이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발전된 가능성으로 확장시켜 낼 수 있는 문화역량의 확충을 기대할 수 있기도 할 것이다.

(6) 교사 교육

귀국 청소년의 부적응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 중의 하나는 교사 자신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를테면 교사 자신

이 귀국 청소년을 특별한 존재로 간주하면서 학생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그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 교육 방침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심리적인 수준에서 교사 자신이 귀국 청소년을 문제시할 경우 학생들 사이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많은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교사들이 귀국 청소년을 영어를 잘하는 존재 정도로 가능성을 한정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귀국 청소년은 외국어 특기생 정도로 도구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귀국 청소년 중 상당수가 이러한 과정에서 불편해진다. 교사들이 귀국 청소년의 심리적 갈등 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육 방침 등이 만들어져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7) 학교 경계를 넘어 만날 수 있는 활동과 네트워크 지원

많은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학교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지만, 학교 경계를 넘는 프로그램이나 취미생활 등이 귀국 청소년의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차원의 대안은 프로그램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모임 등을 통해서도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활동과 모임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동일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네트워크는 서로의 경험을 해석하고 또 래집단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공공적 차원에서 귀국 청소년 모임과 일본의 조선인 학교 사이의 교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지, 귀국학생들이 자신의 장점을 사회적으로 나눌 수 있는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의 능동적 구상이 필요하다.

(8) 귀국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많이 지적되고 있듯이 귀국 청소년이라는 자원은 외국어가 숙달되어 있다는 소극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문화적 경험의 소유자라는 측면에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문화적 장점이 학교 현장 속에서 사장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많은 청소년 축제 등에서 귀국 청소년들이 진행할 수 있는 아이템은 적지 않다. 다양한 사회의 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이 있을 수도 있고, 외국어 사이트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학교 내에서도 학교축제 등이 의무화되는 추세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이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게 하고 아이들과 함께 즐기는 방식의 기획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서로 가지는 장점을 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귀국 청소년 사이의 연대뿐 아니라 일반학생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다.

(9) 귀국 청소년 부모 교육과 정보 제공

일본의 사례에서는 부모들의 활동을 통해 귀국 자녀들의 문제를 서로 나누면서 풀고 있고, 그 효과도 크다고 알려져 있다. 귀국 청소년의 적응 여부에 부모의 태도나 부모의 지원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가족 사이의 관계 설정은 문제를 푸는 중요한 지점일 수 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들이 겪는 경험을 공유하는 단계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는 노하우 등이 공개되고 정보화되어야 한다. 부모들 사이의 네트워크와 정보를 확대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부모들 사이의 소식지가 만들어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며, 지역 별 모임 등이 조직될 수

도 있다. 나아가 부모들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 지원을 촉구하고 자원을 끌어낼 수 있는 단위를 형성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부모들이 상호 교육할 수 있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4) 맺음말

탈북 청소년과 귀국 청소년의 적응 문제를 같이 다루기에는 많은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특히 최근의 경우에서 탈북 청소년의 경험은 '추방'의 측면이 강하다면, 귀국 청소년의 경험은 '선택'의 측면이 강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상의 기본적인 차이 외에도 경제적 배경과 사회적 평가의 차이 등이 매우 크게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존재조건 상의 상당한 차이로 드러나기 마련이고, 현실적으로도 교육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지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관심이 적을뿐더러 부모로서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해야할지 매스컴 등을 통해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 어떻게 자녀들을 다루어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유순하지 않을 경우 매를 드는 경우가 많다. 또한 중국 등지에서 은닉생활중 부모들의 권위가 낮아진 상태이며, 탈북청소년의 제반 일탈행동의 배경에는 부모들의 부부갈등 등으로 인한 심각한 가정폭력, 아이들에 대한 방치 등이 있다. 국내입국이후 남한내 성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적응과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이는 가정폭력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상당수의 경우에는 이혼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녀들은 무연고 청소년과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귀국학생의 경우 특례입학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달리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진학을 위한 학업열의가 큰

본적으로 다르다. 또한 학업의 목표도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귀국학생의 경우에는 부적응의 대안으로 체류경험국으로의 유학의 가능성도 있다.

탈북청소년의 경우는 사회체제의 차이로 인한 적응 문제와 경제력 등의 해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고, 북한 사회에서 형성된 인성 영역의 문제도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사회적 시선의 차이는 자아정체감의 형성에 매우 큰 손상을 가져올 가능성도 크다.

이에 반해 귀국 청소년의 경우는 경제적 배경이나 사회적 시선의 문제에 있어 부적응하는 케이스보다는 교사나 급우들과의 관계 형성에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흔히 지적되는 또래관계에서 '왕따'의 문제도 뒤쳐진 측면보다는 튀는 측면에서 일어날 경우가 높은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적 대안 마련에 있어 문제를 뒤섞기보다는 세부화해서 대안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탈북청소년과 귀국청소년의 문제는 상황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점에서 동일한 지점에 직면할 수 있다. 한국사회가 문화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차원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문제지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국사회 내에서 타자를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모럴의 구축이라는 과제에서 타문화 경험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통의 대안 마련이 가능하기도 할 것이다.

V. 일탈·범죄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대책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주요 조사결과
4. 조사결과에 들난 정책 시사점
5. 국제적 정책동향 : “회복적
사법”의 등장
6. 한국 청소년 재범방지를 위한
정책제언

공 백

V. 일탈·범죄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대책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범죄청소년의 “재범” 및 “범죄경력”의 발전과정을 경험적으로 탐색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되었다. 재범율의 증가는 이미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비롯된 문제행동을 저지른 후 이로 인하여 형사사법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사회로 복귀한 후, 다시 문제행동을 저지르는 비율이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비행청소년들이 상습적이거나 전문적인 성인범죄자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결국은 기존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우 프로그램 및 대책의 전반적인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며, 청소년 범죄의 재범 예방과 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새로운 대책의 강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범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유형, 재범시기, 재범소년들의 특성에 대한 조사연구를 기초를 토대로 선진 각국의 청소년 재범방지 프로그램들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 정책 및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첫째, 한국 청소년범죄의 발생동향과 재범실태 및 추이를 정리하고, 현행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법적 처리실태와 그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둘째, 이론적 및 경험과학적 논의를 토대로 청소년 재범 및 범죄경력 과정을 이해하고, 관련 주요 쟁점들을 도출하였다.

셋째, 범죄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범죄청소년의 구체적인 문제행동 유형과 특성, 이들의 자아구성 및 실제적 행동 성향, 마지막으로 재범정도 및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리하였다.

넷째, 21세기 소년사법체계의 패러다임 전환문제를 검토하고, 각국의 재범억제 프로그램 및 사법적 처우동향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검토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비행예방 및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로 구성되었다. 우선, 국내외 관계법령과 연구자료 등의 문헌 및 인터넷 정보 분석, 각종 통계자료들을 통하여 청소년 비행 및 범죄의 발생실태 및 재범현황을 정리하고, 범죄청소년에 대한 범죄사회학적·범죄심리학적 연구결과들을 분석·논의 쟁점들을 도출함과 더불어 청소년 재범억제 및 비행예방을 위한 각국의 정책동향 및 국내의 형사사법적인 대응 및 규제현황 등을 파악·정리하였다.

조사연구는 범죄청소년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하여 접근하였다. 모집단은 현재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세 단계, 즉 ① 분류심사원 ② 소년원 ③ 소년교도소에 있는 범죄청소년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기관을 포괄하여 조사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대상기관별로 수용인원의 편차가 매우 크고, 조사일정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준의 소년범죄자를 포괄하면서도 조사의 편의상 가급적 수용 규모가 큰 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을 선정하고 수용인원 전원을 조사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단 소년교도소 수용자의 경우에는 수용기간이 길어지면 회상문제 등으로 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수용기간이 3년 이하인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선정된 기관과 조사대상자의 규모는 <표 V-1>과 같다.

<표 V-1> 조사대상자의 기관별 분포

기 관	인 원	비 율
서울분류심사원	122	13.3
서울소년원	183	20.0
부산분류심사원	61	6.7
부산소년원	130	14.2
광주분류심사원	49	5.4
광주소년원	179	19.6
천안소년교도소	191	20.9
계	915	100.0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는 집단면접방식을 취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하여 수정·보완과정을 거친 설문지를 통한 본 조사는 2003년 7월 14일부터 25일 사이에 연구진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집단면접조사와는 별도로 범죄소년들의 재범과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실을 얻기 위하여 소규모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3. 주요 조사결과

1) 비행 및 범죄관련 특성

조사대상자의 비행·범죄관련 특성을 보면 <표 V-2>와 같다.

(1) 수용처분된 범죄명을 보면, 절도가 45.1%로 가장 많고, 강도와 폭행·상해가 각각 13.3%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사기를 포함한 재산범죄가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데, 사기의 경우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각종 인터넷 게임과 관련하여 게임아이템 등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의 경우에는 강도살인을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에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관련범죄는 승용차나나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를 내고 겁이 나서 도망가다가 붙잡혀 뺑소니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2) 범죄의 공범여부를 보면, 단독범행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고, 공범이 있을 경우에는 1명보다는 2-3명이 함께 하는 소규모 집단범행이 많다.

(3) 최초의 경찰체포 연령을 보면, 13세 이하의 어린 나이에 경찰에 처음 체포되는 비율이 30%를 넘고 있으며, 15세 이하의 나이에 경찰에 처음 체포되는 비율도 70%를 넘는다.

(4) 이제까지 범죄로 인한 경찰체포회수(본건 제외)를 보면, 4번 이상이 가장 많고, 2번이 21.0%, 1번이 17.3% 순으로 나타났고, 이번이 처음이라는 응답은 12.9%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재범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5) 소년들의 70%이상이 비행친구가 있다. 결국 대다수의 소년들이 직·간접적으로 비행친구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V-2> 조사대상자의 비행·범죄관련 특성

구 분		인 원	비 율
최근 범죄명	절 도	412	45.1
	사 기	33	3.6
	강 도	122	13.3
	강 간	64	7.0
	폭행·상해	122	13.3
	살인(강도살인포함)	41	4.5
	약물관련범죄	11	1.2
	교통관련범죄	37	4.0
	보호관찰위반	42	4.6
	기 타	30	3.3
계		914	100.0

구 분		인 원	비 율
최근범죄 공범여부	공범 없음	301	33.0
	공범 1명	176	19.3
	공범 2-3명	254	27.8
	공범 4명이상	182	19.9
	계	913	100.0
최초경찰 체포연령	12세미만	32	3.5
	12-13세	251	27.6
	14-15세	363	39.9
	16-17세	218	24.0
	18세이상	46	5.1
	계	910	100.0
경찰체포 횟수 (재범횟수)	이번 사건 이외에 없음	118	12.9
	1번 더 있음	158	17.3
	2번 더 있음	192	21.0
	3번 더 있음	150	16.4
	4번 이상 더 있음	297	32.5
	계	915	100.0
비행친구 유무	없 음	258	28.3
	1명 있음	137	15.0
	2-3명 있음	281	30.8
	4명이상 있음	235	25.8
	계	911	100.0

2) 조사대상자의 문제행동 경험

소년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경험 정도를 살펴보면 <표 V-3>과 같다. 다섯 가지 문제행동에 대한 지금까지의 총 경험을 보면, 유흥관련 문제행동의 경험율이 95.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재산관련 문제행동이 84.6%, 폭력관련 문제행동이 76.6%로서 이러한 문제행동은 조사대상 소년들에게 있어서 아주 보편적인 경험이다. 성관련 문제행동은 49.5%가 경험했으며, 반면에 약물관련 문제행동은 18.9%로서 비교적 일부소년들에게 국한된 문제행동인 것으로 보인다.

<표 V-3> 조사대상자의 문제행동 경험

단위: 인원(%)

구 분	지금까지 총 경험			(수용되기 전) 지난 1년동안					
	없음	있음	계	없다	6개월 1-2번	한달에 1-2번	일주일 에 1-2번	일주 일에 3-4번	계
가출, 음주, 흡연, 비디오방·술집· 나이트클럽 출입	38 (4.2)	876 (95.8)	914 (100.0)	73 (8.0)	124 (13.6)	194 (21.3)	198 (21.7)	323 (35.4)	912 (100.0)
패싸움, 폭력서클 가입, 폭행, 위협, 기물파손, 흉기소지	214 (23.4)	700 (76.6)	914 (100.0)	292 (32.0)	295 (32.3)	185 (20.3)	89 (9.7)	52 (5.7)	913 (100.0)
물건훔치기 훔친물건사고팔기	140 (15.4)	772 (84.6)	912 (100.0)	326 (35.9)	354 (39.0)	113 (12.4)	62 (6.8)	53 (5.8)	908 (100.0)
본드, 가스, 환각제 마약	740 (81.1)	173 (18.9)	913 (100.0)	820 (90.2)	56 (6.2)	15 (1.7)	7 (0.8)	11 (1.2)	909 (100.0)
성추행, 성관계, 성매매	459 (50.5)	450 (49.5)	909 (100.0)	497 (54.6)	127 (13.9)	133 (14.6)	103 (11.3)	51 (5.6)	911 (100.0)

수용되기 직전의 1년동안 경험정도를 보면, 유흥관련 문제행동의 경우 1주에 3-4번이 35.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주일에 1-2번이 21.7%로서 과반수가 일주일에 1회이상 유흥관련 문제행동을 하였다. 폭력관련 문제행동의 경우에는 6개월에 1-2번이 32.3% 이고 한달에 1-2번이 20.3% 였고, 한번도 없다는 응답은 32.0% 였다. 재산관련 문제행동의 경우에도 6개월에 1-2번이 39%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달에 1-2번이 12.4% 였다. 한번도 없다는 응답은 35.9% 였다. 약물관련 문제행동의 경우에는 90.2%가 지난 1년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6개월에 1-2번은 6.2%에 불과했다. 성관련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없다는 응답이 54.6% 였으니 한달에 1-2번이 14.6% 이고 6개월에 1-2번은 13.9%, 일주일에 1-2번은 11.3%로 나타났다. 즉 성관련 문제행동은 재산관련 문제행동이나 폭력관련 문제행동에 비해서 비경험자의 비율은 높지만, 경험자의 경우에는 더욱 더 자주 그러한 행동을 반복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3)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재범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종합분석 결과에 따르면, 과거에 폭력관련 문제행동을 한 적이 있고, 최초 경찰체포 연령이 낮을수록, 첫 번째 범죄에서 관대한 처분을 받을수록, 첫 번째 범죄시 학생신분의 변화를 경험할수록, 첫 번째 범죄 이후에 부모의 통제정도가 약화되고 나쁜 친구를 새로 사귀거나 기존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경우, 범죄경력이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향후 재범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의 재범횟수, 수용시설에서의 참여·몰입정도, 법과 사회에 대한 태도, 낙인인지 등의 요인들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조사결과에 드러난 정책 시사점

범죄예방과 방지대책에 있어서 본 조사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재정리해 보기로 한다. 특히 재범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현행 처우효과의 한계와 조기개입의 중요성

범죄경력이 발전할수록 범죄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① 소년들의 범행이 거듭될수록 재산범죄에서 폭력범죄로 옮겨가고, 폭력범죄에 있어서도 보다 흉폭한 범죄로 발전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② 범죄의 전문화 경향은 폭력범죄자보다는 특히 재산범죄자에게서 더 두드러졌으며, ③ 범행이 거듭될수록 단독범행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범죄경력발전에 따라 대담성도 커지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기존 소년보호정책과 사법적 처우관행들이 과연 비행청소년들의 재범방지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또 다른 조사결과에 따르면, 어린나이에 경찰에 체포될수록 범죄를 더 많이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조발비행 또는 조발범죄는 향후 범죄경력을 가늠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상자의 30% 이상의 최초체포연령은 13세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요즘 신체적 성숙이 빨라지면서, 유해환경에 조기 노출됨과 동시에 가출 및 비행가담 연령도 점차 저연령화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지난 10년 동안 소년법원에서 다루어진 아동범죄(7-12세)가 33%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이들이 “보다 심각하고 폭력적인 고질적 범죄자”로 발전할 개연성이 보다 나이 많은 청소년들에 비해서 3배가 높다는 분석결과(Snyder, 2001)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아동범죄 사건들(특히 학교폭력 및 성폭력 등)이 빈발하는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촉법소년(12-14세) 뿐만 아니라 12세미만 아동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미 살펴 본 것처럼, 최근 각국의 범죄예방정책의 핵심은 이제까지 소년형사정책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7-12세사이의 아동들에 대한 조기 개입과 예방(early invention and preven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각 연령단계별 이행기적 특성에 초점을 둔 각종 프로그램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과거의 문제행동의 유형에 따라서 향후 재범가능성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년들이 경험하는 각종 문제

40) 미국 OJJDP의 [Child Delinquency Bulletin Series]를 참조하기 바람.

행동의 유형이 이후 같은 유형의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들은 사소한 문제행동을 통해 점차 위험에 처하는 어린 청소년들(7-12세)에 대한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2) 초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범후 6개월 이내에 재범을 저질렀던 경우가 48.9%나 되고 있으며, 1년 이내 재범을 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72.9%에 달했다. 최초 처분과 재범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찰단계에서 석방된 소년의 재범횟수는 3.92인데 비해, 비수용처분을 받은 소년들은 3.67, 수용처분을 받은 소년들은 3.50으로 최초 범죄에 대한 처분결과에 따라 재범횟수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최초 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재범억제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 범죄시 수용처분보다는 비수용처분이나 경찰에 의해서 훈방 조치되는 소년들이 이후에 범죄를 더 많이 저질렀다는 사실은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분을 내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아동범죄(Child Delinquency)”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는 근거와도 일치한다. 초범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책임” 문제를 회피하도록 만들며, 지나치게 관대한 처우는 오히려 “제재의 긴장과 두려움”을 해제시켜버림으로써 법 준수의 가치를 부식시켜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몇몇 주요 연구들은 최초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legal sanctions)이 어떠한가 향후 범죄경력발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물론 적절한 대응이 반드시 엄격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초범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이미 소년이 위험상황에 빠져있다는 신호이다. 미국의 청소년범죄에 대한 종합 전략이 예시하듯, 조기에 비행소년의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재범억제 대책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초범자에 초점을 둔 다양한 개입 프로그램과 전략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3) 학생의 신분변화와 재범으로의 강화효과

조사에 따르면, 초범이후에 신분변화를 겪는율이 36.5%로 상당수가 급격한 신분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재통합의 어려움을 겪을 개연성이 크 만큼 많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소년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변화는 문제아로 낙인을 당하고, 그로 인해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이 힘들어진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범에 학생인 신분을 가진 소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신분의 변화라는 요인이 재범횟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첫 번째 범죄시 학생 신분인 소년들이 외형적인 신분의 변화로 인하여 재범을 많이 저지르기 보다는 다른 요인들로 인하여 범죄를 다른 신분을 가진 소년들보다 더욱 더 많이 저지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소년들의 신분변동으로 인한 좌절감 등이 향후 이들 범죄가능성과 일정부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분변화로 인한 소외감·좌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조사결과는 범죄소년들의 처우방법에 있어서는 가급적 학생의 신분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서도 다룰 수 있는 지역사회중심의 개입전략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신분변동]은 브레이스웨이트(1989)가 재범방지제로서 들고 있는 일상적 삶에서의 공동체소속감, 재통합적 수치심, 상호의존성의 효과적인 실행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정책실행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대목으로 판단된다.

4) 부모의 감독활동이 재범억제에 갖는 중요성

조사결과, 부모의 통제활동의 강화는 일정부분 이후 범죄를 줄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관계의 변화에서는 기존 친구와의 사이의 변화는 상관이 없고 새로 나쁜 친구를 얼마나 사귀었는가 그리고 기존 친구와 더 많이 어울리게 되었는가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부모의 적절한 통제의 강화가 필요하며, 그 초점은 기존 친구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에 두기보다는 새로이 나쁜 친구를 사귀지 못하도록 하거나 기존 친구와 예전보다는 더 많이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는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모훈련명령(Parenting Order)]이나 [허용가능한 행동약정(ABC)]과 같은 처분을 소년처우제도와 결합시키는 것도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5) 법과 사회에 대한 의식전환

조사에 따르면, 소년들의 법과 사회에 대한 태도가 재범가능성과 강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법의식과 사회에 대한 편견제거 내지는 적대감 해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폭력범죄의 재범가능성에 있어서 법과 사회에 대한 태도, 자아개념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폭력예방을 위해서는 소년으로 하여금 분노조절 및 문제해결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스스로 자아통제능력을 길러 주고, 지역사회에 대한 유대 및 상호의존감을 확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이밖에 위협에 처한 청소년들에 대한 낙인이나 배제가 아닌, 다체계적 재통합과정에 흡수시켜 법과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적대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재범 발전기제로서의 낙인효과

조사결과, 처벌의 두려움은 재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 비해, 낙인의 인지는 소년들의 재범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낙인인지의 정도에 따라서 소년들의 전반적인 재범가능성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즉 시설 내에서의 효과적 처우를 통하여 재범가능성을 줄일 수 있지만, 청소년범죄자에 대한 사법처리 자체가 갖고 있는 낙인인지의 부정적 효과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본 조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얼마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엄격한 처벌)하게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낙인효과를 차단하면서 각종 처우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가가 핵심 과제라는 사실이다.

7) 시설처우에 대한 시사점

재범가능성에 있어서 현재 수요시설에서의 경험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시설 내에서 ‘참여·몰입’과 ‘정서적 지지’의 경험 등은 주로 강도, 폭행, 강간과 같은 폭력성 범죄의 재범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자율성·책임성’과 같은 요인들이 애정을 기반으로 적절한 대인관계를 형성한 경우, 행위의 통제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소년들로 하여금 각종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구성원간의 정서적 “지지와 관심”을 북돋는 것은 향후 재범가능성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즉 교정시설내의 각종 처우프로그램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특히 폭력성 범죄자의 재범가능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국제적 정책동향 : “회복적 사법”의 등장

소년사법의 역사를 보면, 소년의 범죄행위를 개념화함에 있어서 두 가지 대립되는 관점이 존재하였다. 복지모델(welfare model)과 사법모델(justice model)의 대립이다. 실상 형사법체계에서 청소년을 성인과 구분하여 별도로 다루는 ‘소년사법’이 분리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았다. (1) 일반형사제도와 구분되는 ‘소년사법’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관점이 바로 [복지모델]이다. 이 모델은 “소년보호이념”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미성년자의 특성을 감안,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교육적 견지에서 형벌보다는 필요(needs)에 부응한 처우에 초점을 둬으로써 소년범들을 교정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데 우선순위를 둔다. 이러한 접근모델에서는 용보적(처벌적) 성격은 사라져 버리고, 도구주의적인 재활적 접근이 우세하게 된다. (2) 하지만, 복지모델은 사법모델로부터 중요한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다룸에 있어서 적법절차(due process)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로는 소년범죄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재범억제에도 효과적이지 않으며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데도 소홀하다는 것이다. 사법모델의 기본 관점은 소년범을 처우함에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적법절차와 비례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이념모델은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날 각국의 소년사법체제를 형성·발전시켜 왔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서로 조화되기 어려운 두 가지 원칙간의 종합 또는 타협(절충)을 구성(소위 “the welfare/justice balance”)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Walgrave, L.; 1998:3).⁴¹⁾

산업화 이후, 사회의 거대한 변화는 청소년 비행 및 그것을 다루는

41) www.afk.dk/eng98/juvenile.htm

방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경제적·기술적·인구학적 변화는 사회를 보다 이중적으로 만들었고, 약화된 사회통제, 여러 형태의 사회화, 일탈에 대한 보다 낮은 관용도, 그리고 범죄와 일탈에 대한 일종의 “도덕적 공황상태”를 야기했다. 청소년 비행은 결과 양에 있어서 크게 변화되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에서는 청소년비행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예전의 순수한 사회복귀(또는 재활)모델은 점점 나이브한 대응방법이 되고 있다. 요컨대, 청소년 범죄자를 다룸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처벌지향성을 포함한 ‘정의(Justice)’ 요소에 대한 관심이 비등해지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변화는 이태리(1988)·영국웨일즈(1988-1989)·독일(1990)·벨기에(1994)·네덜란드(1994-95) 등 각국의 소년사법체계의 개정을 통해 반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과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갈지는 잘 모르지만, Hirsche and Gottfredson(1991) 및 Feld(1993)가 제안한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소년사법체계의 폐지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Deok, 1994; Junger-Tas, 1994)이다. 이는 특별하게 고려된 소년사법체계가 구성된 이래로 유지되어 온 “justice와 welfare 균형” 담론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소년범죄자들 처우하는 방법에 대해 전면적으로 새롭게 검토해야 할 시점에 있다.

최근, “제3의 길”에 대한 옹호론은 범죄에 대하여 매우 다른 질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소위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라는 관점으로 제기되었는데, 범죄란 그것이 개인과 공동체에 해악을 야기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다시 말해, 범죄가 해악(harm)에 관한 것이라면, 정의는 가해자는 처벌하거나 처리함으로써 단순히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법과정(justice process)은 회복을 증진시켜야만 하며, ‘상처의 치료(heal the wound)’를 시도해야만 한다. 기존 담론의 쟁점인 가해자에 대한 옹보적 처벌이나 온정주의적 재활(처분)이나 등과 관련

된 일차원적인 초점과는 달리,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은 정의가 시민, 가해자, 피해자들의 필요에 대한 균형적인 반응이 있을 때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안전감을 위하여 범죄는 제재되어야 한다는, 그리고 가해자(위반자)를 재통합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적이고 다면적인 지역사회의 기대는 위반자에 의해 드러난 위험(risk)이나 필요(needs)에 관한 편협한 초점에 의해서는 효과적으로 성취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범죄가 야기한 해악(harm)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공동체·위반자들은 형사정책시스템의 고객으로서 간주해야만 하며, 전반적인 사법과정에 협력자로서 의미있게 포함시켜야만 한다고 주장한다(Bazemore, 1999).⁴²⁾

최근 등장하고 있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원칙들은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상징적으로 재통합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피해자와 공동체를 포함한 위반자 재활(rehabilitation)에 대한 독특한 접근방법을 지향하고 있으며, 실제 몇몇 나라에서는 이러한 패러다임을 소년사법제도의 개혁방향에 접합시키고, 구체적인 제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소년사법제도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전반적 운영 및 정책수행에 있어서 크게 변화되고, 다각화되는 추세이다. 변화추세의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지역사회중심 처우정책(중간처우의 확대)
- ② 민간분야의 참여확대
- ③ 새로운 처우 대안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추구
- ④ 다체계적·통합적 예방전략
- ⑤ 사회-임상과학적 접근과의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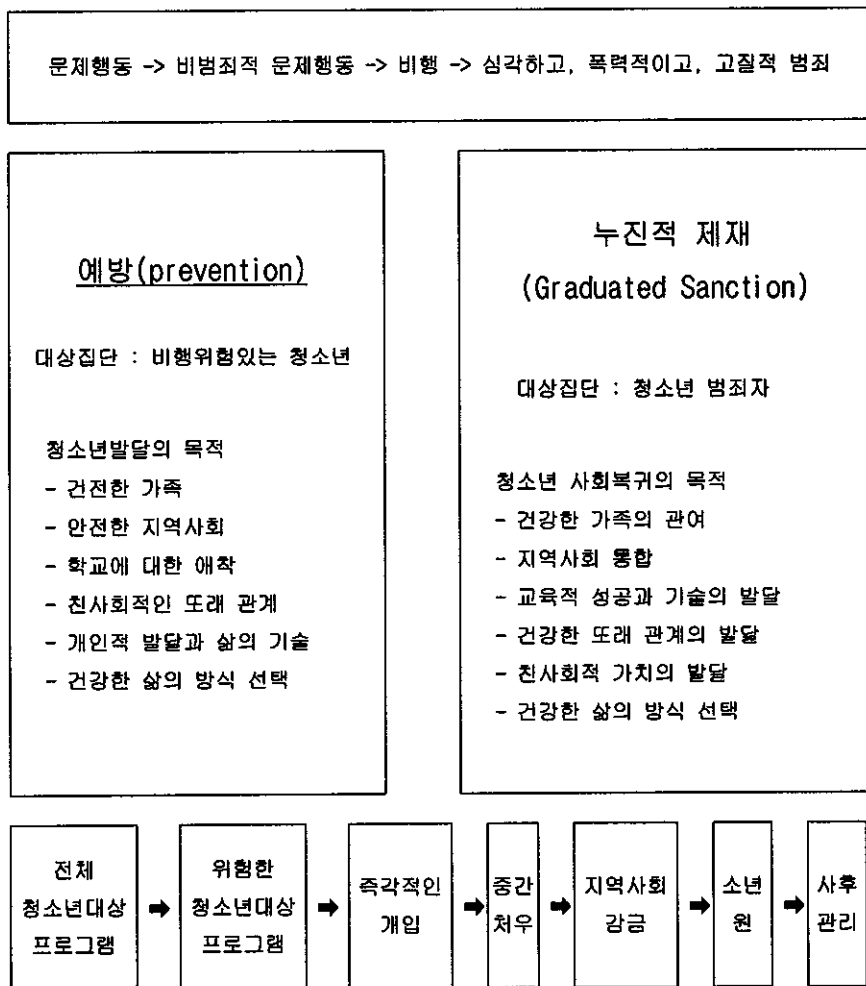
42) www.gwu.edu/~ccps/Bazemore.html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기존의 사법기관 중심적이고, 사후대책에 초점을 둔 처우방법의 비효과성과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현행 처우방법이 청소년들에게 낙인의 오명을 가져오거나, 신분변동으로 인한 상실과 좌절감이 사회복귀와 재통합을 오히려 방해한다면, 오히려 범죄경력을 발전시킬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현행 사법기관중심 및 시설중심의 대응방안에 대한 비판은 설득력을 지닌다.

외국의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우정책은 범죄유형에 의한 구분보다는 청소년의 범죄성 정도에 의한 처우정책이 우선적이다. 이는 청소년 범죄의 원인이 매우 복잡적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범죄행위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보다, 범죄성향의 심각성 및 새로운 환경조성에 초점을 두어 다루고 있다.

각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대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청소년 비행정도에 따라 개입전략이 단계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OJJDP에서 구축한 종합적 전략을 그 대표적인 모델이다. OJJDP의 종합전략은 크게 예방(prevention)과 누진적 제재(graduated sanction)로 나누어진다. 예방은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비행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누진적 제재는 일단 범법 행위를 저지른 청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 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비행의 정도에 따라 7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로 올라갈수록 제재의 강도가 커진다(최영신, 2001:116). 즉 청소년범죄자에 대한 종합전략은 조기개입을 통한 예방(prevention)으로부터 소년사법체계로 들어온 청소년들에 대한 누진적 제재(graduated sanction)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표 V-4> 미국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여기에서 강조하는 점은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매우 복잡적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예방정책은 위험요인(risk factors)을 감소시키는 것과 동시에, 위험에 대해 완충역할을 하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점이다(Reno et al. 1998; 김지선, 2002b:60 재인용). 종합적 전략은 청소년을 비행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영향과 요소에 접근하고, 유효한 자료를 결정하고, 종합적 전략 속에서 확인된 19개의 위험요소(risk factors)를 감소시키거나 청소년을 그러한 요소의 영향으로부터 완충시키는 보호요소를 제공하는 예방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지원한다.

대체로 각국의 청소년범죄예방 및 개입프로그램들은 다음의 5가지 일반원칙에 기초한다.

- ① **가족에 대한 강화:** 어린이에게 도덕적 가치를 내면화시키고, 어린이를 지원, 보호하는데 일차적인 책임은 가족에게 있으므로 이를 강화한다.
- ② **핵심적인 사회기관에 대한 지원:** 학교·종교기관·지역사회는 청소년이 가능성 있고, 성숙하고 책임감 있게 발달하도록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이들 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 ③ **비행예방의 강화:** 청소년 비행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접근은 비행을 예방하는 것이다.
- ④ **비행행동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개입:** 비행행동을 하는 청소년이 고질적이고 심각한 범죄자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⑤ **심각하고 폭력적·고질적인 소년범죄자 확인과 통제:** 강력범죄에 가담하는 심각한 청소년 범죄자들에게는 초기 개입이 실패하였으므로, 소년원이나 지역사회 구금시설 같은 엄격한 시설내처우 혹은 소년사법체계에서 형사사법체계로의 전환이 요청된다(최영신, 2001:115 재인용).

6. 한국 청소년 재범방지를 위한 정책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범죄자 처우정책과 방향은 청소년 개인의 위험요소(risk factor)에 대응한 개별화된 적절한 개입(보호요소 확충) 전략을 제도화하고, 지역사회중심처우를 통해 낙인을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재통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정책적 입장에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와 이행되어야 할 변화들에 대해서 지적해 보기로 한다.

1) 소년사범제도 개혁과 처우시스템의 개선

현행 청소년범죄에 대한 사법적 처우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과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결여

현행 우리의 소년형법은 검사선의주의에 입각해 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사건처리가 기소편의주의에 의거하여 결정됨으로 소년보호이념과 정책이 충분히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⁴³⁾ 더욱이 현행 제도에서는 적절한 중간 개입절차와 프로그램이 없음으로 인하여, 재범률이 가속되는 경향이 있다. 가장 극명한 한계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서 드러난다. 현재 소년범죄자 2명중 1명꼴로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있고,

43) 실제로 최근 10년간 범죄소년에 대한 평균 기소율은 무려 36.3%에 이르며, 구공판율은 약 14%가 넘는다. 이에 반해 소년법원 송치율은 약 13%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 처분율이 절반 정도에 이른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보면, 실무관행에서 검사는 소년을 법원에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다루기보다는 불기소하든지 아니면 기소하는 방향으로 기울어 있다.

이중 기소유예처분이 약 39.4%이다. 하지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의 재범률이 1997년 5.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에는 13.3%라는 점은 소년법의 다루는 현행처우방식과 기준에 의문을 제기한다.

(2) 처우의 개별화와 과학화의 필요성

소년법에 대한 비행성 진단업무를 전담하는 분류심사원 위탁인원은 감소하는 반면, 보호자위탁 인원이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며, 최근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입원자중 56%가 3회이상의 누범소년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서, 처우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불구속상태로 소년부에 송치되는 대부분의 범죄소년은 특별한 진단이나 환경조성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자에게 다시 위탁되는 등 종전의 비행환경에 노출되어 재범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소년사법제도 및 처우과정들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종합적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여러 절차와 단계들의 개입목표와 원칙들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종합전략은 청소년 비행정도에 따라 변화 달라져야 한다. 이 전략은 크게 예방(Prevention)과 누진적 제재(Graduated Sanctions), 그리고 사후관리(After Care)를 목표로 체계화되어야 한다. 예방은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비행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누진적 제재는 일단 범법 행위를 저지른 청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후적 복지지원을 통해 적응력을 키우도록 돕는 시스템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가령, 미국의 경우에는 청소년 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비행의 정도에 따라 7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로 올라갈수록 제재의 강도가 커지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중간처우와 지역사회시설 수용

에 해당하는 처우형태가 없다. 그 결과, 개입 프로그램의 수준에 있어서, 소위 “위기개입과 관리”라는 이념이 빠진 상태에서 여러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급격하게 교정시설 수용으로 이동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비행정도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지 못하고, 또한 합리적인 누진적 제재의 제도화와 단계적 처벌강화가 실시되고 있지 못하다. 그로 인하여 재범률의 지속적 상승이라는 부정적 결과가 야기되고 있으며, 청소년 처우프로그램 및 대책의 전반적인 실패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년사범이 일관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범죄억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우의 차별화와 누진적 제재의 원칙하에 종합 대책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비행성향(위험성 정도)에 적절한 처우단계 및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각 단계의 가치와 목표에 부합한 구체적인 전략과 프로그램들이 시급히 연구·개발될 필요가 있다.

2) 범죄위험성(JOB) 지표분석의 과학화 및 내실화

소년사법제도에서는 여러 가지 특별한 보호절차나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사실상 처분 전의 단계에 개인에 대한 환경과 특성 등 충분한 사전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실상 소년사법제도의 성패는 바로 소년에 대한 조사가 얼마나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조사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성인형사절차와 분리하여 소년범을 처우한다는 의미는 상실될 것이다(윤용규 외, 2000:65). 사실상 형사사법기관의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범죄예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높은 위험집단이 누구인지를 판별하고, 이러한 목표 집단(target group)의 위험요소(risk factor)를 제거하고 보호요소(protective factor)를 효과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범예측”은 적절한 처우선택과 개입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각국에서는 다양한 개입전략과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면서, 적절한 프로그램 대상자(target) 선정하기 위해 범죄예측 위험지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싱가포르 소년법원에서는 피의자 양형(처분)을 객관화하고 개별화하기 위해, 재범위험평가를 위한 청소년범죄자행위(Juvenile Offender Behavior) 지표를 개발·시행하고 있는 것을 참조해 볼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발달심리학과 범죄학적 임상적 및 통계적 예측과 결합된 사법적 평가과정(judicial evaluative process)으로서 기능한다. 이것은 회복적 사법 이념-억제와 처벌 뿐만 아니라 재활과 회복의 균형적 목표를 추구하는 제도-과 맥락을 같이하며, 개별화된 전인격적인 재활(사회복귀)을 향한 보다 효과적인 미래과정의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다양한 개별적 생활사를 고려하여 청소년 범죄자들은 개별적으로 분류·평가한다. 이것은 누진적인 제재명령과도 일치한다고 한다. 판사는 보호관찰관에 의해 준비된 판결전조사 보고서에 기초하여, Panel Advisor과의 협의하에 각 기소된 청소년에 대한 판결(결정)을 내린다. 이 판결전 JOB지표를 부가함으로써, 제재결정에 있어서 다-체계적 선택과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한다.

현대 형사사법제도하에서는 처우의 개별화 및 처우방법의 다각화가 발전되고 있기 추세이고, 지역사회기반 처우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 요청되는데, 각 정책의 효과성은 결국 정책에 적절한 대상자 선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예측기술의 적정화는 점차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보다 심도있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들을 통해서 재범위험예측을 위한 범죄행위지표(JOB)를 과학화하고, 제도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3) 조기 개입의 제도화

소년범죄는 점차 저연령화되고, 지위비행자들은 증가추세이지만, 우리

의 현행 제도상 이들에 대한 뚜렷한 개입전략은 없고 거의 방치되고 있는 형편이다. 조기개입의 부재 또는 초기의 지나치게 관대한 처우는 오히려 재범 및 범죄경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보고되었다.

최근 미국 범죄예방 프로그램(1994)은 무엇보다도 조기개입을 강조한다. 다양한 연령층의 필요와 비행위험에 따라 프로그램이 분화되어 있다. 중학교 학령기의 청소년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그에 앞서 영유아기 및 초등학교로부터 아동기 전 과정의 이행기적 특성을 반영한 예방 및 개입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다. 가족의 기능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특성이 강하다. 호주의 ‘폭력에 대한 국가위원회 보고서(1990)’에서는 어린시절의 경험과 가정에서의 양육과정이 청소년 범죄예방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우선적으로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한다. 미국의 방문간호 프로그램은 가능한 미혼모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양육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아동학대와 같은 가정내 폭력을 예방하고, 적절한 자녀양육 모델을 제시하여 폭력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범죄예방정책의 하나이다.

4) 지역사회중심 개입전략과 민간참여기반의 확대

청소년 비행예방과 선도라는 정책목표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들에 대한 사전예방 환경의 조성, 특히 가정, 학교, 사회간의 지원체계구성 등 지역사회 내에서의 적절한 개입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의 새로운 범죄예방정책은 “상황적 전략” 또는 “통합적 예방전략”을 중시한다. 기본적으로 가정 요인을 강조하지만, 직접 개입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학교요인, 학업, 또래요인 등 일상적 삶의 연결망에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모두 중시하여 청소년의 요구와 필요를 존중한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하다. 대체로 소수집단의 결손을 보완하고 상황적 위험요소의 제거해 주는 사

회복지적 성격이 강하다.

특히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회내처우와 중간처우(개입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요구되면서, 비행예방 및 선도보호분야에서 시민의 참여 및 자원의 연계망 확보 등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보강할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향후 중심으로 검토되어야 할 주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학교기반 비행예방 프로그램
- 비행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방안
- 분노조절서비스 및 문제해결능력 향상 프로그램
- 여가활동의 지원
- 가출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프로그램 개발과 자원활용방안
-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취업대책 및 근로조건의 보호
- 소년법상 자원보호자제도의 적극적인 재검토
- 소년분류심사원의 개방화: 청소년 위기개입센터화
- 판결전 조사관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5) 비행예방을 위한 환경의 조성과 프로그램 개발

범죄예방의 목적은 범죄의 높은 위험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확인하고 그들이 소년사법체계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는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미국과 영국에서 개발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실행 예를 참조할 수 있다. 특히 영국에서 예방단계에서 실행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은 적극적으로 도입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① 안전한 학교만들기 공조(Safer School Partnership)
- ② 여가 및 놀이계획 프로그램(Splash and Splash Extra)

- ③ 청소년포용프로그램(Youth Inclusion Programme)
- ④ 청소년포용·지원패널(Youth Inclusion and Support Panel)
- ⑤ 멘토링 프로그램(Mentoring Programme)
- ⑥ 부모훈련 프로그램(Parenting Programme)

또한, 초범자나 경미한 재범자를 위한 효과적인 재범방지 전략은 Diverison을 통한 즉각적인 개입전략이다. 플로리다 사법부의 '집중적 전환처우 서비스(IDDS)' 및 캘리포니아의 "8%의 해결"과 같은 조기개입 프로그램 개발이 매우 필요하다. 초범자에 대한 집중적인 조기개입이 재범자가 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이들의 교훈을 경청해야 한다.

6) 다기관 협력체계의 제도화

외국의 소년사법제도 및 처우정책이 예전의 사법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다기관 협력체계(multi agencies partnership)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흐름은 1980년 후반부터 소개되면서 최근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청소년 범죄에 작용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종합적이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지역사회 내의 여러 관계기관들, 가정, 학교, 종교기관, 상담기관, 여가시설, 행정기관, 보호관찰기관, 그리고 경찰 등이 어떻게 조화롭게 연계되어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핵심사항이 되고 있다.

우리는 영국의 청소년범죄대응팀(YOT)에서 다기관 협력체계의 모델을 배울 수 있다. 현재 YOT는 영국 소년재판제도의 성공열쇠이다. 모든 지역기관에 YOT가 있다. 그들은 경찰, 보호관찰국, 사회보전, 건강, 교육, 약물과 알코올 남용, 주택문제 등의 공무원들의 대표들로 구성되

어 있다. 각 YOT는 소년사법서비스의 업무와의 협력을 담당하는 YOT 매니저에 의하여 관리된다. YOT가 다양한 범위의 공공단체의 혼합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포괄적인 방식으로 청소년범죄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 YOT는 국가적 평가기준으로 청소년범죄자들을 평가함으로써 그들의 욕구를 확인한다. YOT는 청소년들이 타인에게 나타내는 위협성을 측정함과 아울러 청소년을 공격적으로 만드는 특정한 문제도 확인한다. 이것은 YOT가 더 이상의 범법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청소년의 욕구를 대처하는 적당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7) “회복적 사법”에 입각한 새로운 처우제도 도입

소년사법체계의 발달과정 속에서 선진 각국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조화되기 어려운 두 가지 원칙-사법모델과 복지모델-간의 종합 또는 타협(절충)을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사실상 두 가지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타협가능하지 않다. 처벌은 과거의 사실, 즉 범죄에 관련된 것이며, 범죄관, 개입과 개입정도를 결정하는 근거이기도 한다. 그것은 합법성과 비례성을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다. 그러나 교육적 처우란 미래의 대상, 즉 독립적이고 동조적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처우는 더 이상 결정할 수 있는 위반행위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필요(needs)에 연결되며, 이것은 법률의 적용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범죄행위와의 연결은 점차 모호해지고, 비례성은 더 이상 역시 예측될 수 없으며, 공판의 절차적 보증도 희미해지고 있다.⁴⁴⁾ 일반적으로 형법과 교육적 원칙간의 조합은 두 시스템의 단점만을 혼합한 것처럼 드러나고

44)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최근 국제기구들은 미성년자에게 주어지는 법률적 보호로서 최소 규칙과 권고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소위 ‘베이징 규칙’은 전세계 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사법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로 간주될 수 있다. 그것을 일련의 명백한 조항들(소년들에 대한 사법적 개입이 존중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규칙들)에 관한)을 제시하고 있다.

있다. 적법절차 보장의 원칙은 후퇴하였고, 교육적 질(효과) 역시 의심스럽다. 지난 세기동안 이와 같은 비판들은 처우와 처벌선택에 다양한 생각들을 불러일으켰다. 가장 결정적인 질문은 과연 민주적 헌법국가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복지적 이익을 결합하여 이상적인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최근 각국은 이와 같은 딜레마로부터의 탈출구를 ‘회복적 사법’이념에서 제시한 새로운 대응모델에서 찾고 있는 추세이다. 이것은 소위 ‘대안적 제재’로 불리는 실험들에 기초한 것이다. 특히 피해자-가해자 조정(victim-offender mediation)과 지역사회봉사명령, 가족집단 회의 등이 그것이다. 이미 여러 나라(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이러한 모델은 전환처우(diversion)를 위한 공식적 기회의 하나로서 법률적으로 통합되고 있다. 벨기에와 프랑스와 같은 곳에서는 비공식적으로 그것들을 적용하고 있다. 현 상태에서 ‘회복적 사법’ 모델은 단순한 처벌모델로의 회귀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소년사법제도에 ‘회복적 사법’ 모델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 ‘회복적 사법’ 모델은 소년사법제도내의 여러 영역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소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소년범의 부모를 호출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도 경찰에서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해자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사건해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을 ‘가족집단회의’나 ‘피해자-가해자 중재(VOM)’으로 발전, 제도화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가령 교통범죄나 경미범죄의 경우, 피해자-가해자 중재 또는 가족집단회의를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학교를 단위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 백

VI. 여자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대책

1. 연구개요
2. 조사결과
3. 예방대책

공 백

VI. 여자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대책

1. 연구개요

1) 연구목적

그 동안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청소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문제의 발생빈도가 낮은 여자청소년 보다는 남자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주된 관심을 가져 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자청소년을 지도하고 있는 전문가집단에 대한 의견조사와 문제행동 경험이 있는 여자청소년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한 욕구분석을 토대로 이들의 문제행동에 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여자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개별적인 문제행동 예방대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연구내용은 첫째, 여자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동향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여자청소년의 문제행동 실태를 선행연구와 공식통계 분석을 통해 파악한다. 둘째, 여자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과 지도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에 대한 의견조사를 통해 여자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대책을 모색하는 한편, 문제행동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자청소년에 대한 욕구조사를 통해 여자청소년이 바라는 문제행동 예방대책을 알아본다. 셋째, 외국의 여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대책 및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여자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대책을 모색함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여자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현행 대책

을 교육적 대책, 사법적 대책, 사회적 지원대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분야별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개선방안과 추진과제를 제안한다.

3)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여자청소년의 문제행동 실태와 대책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고, 여자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공식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한편 인터넷을 통해 외국기관의 관련 프로그램을 수집해 분석하였다. 둘째, 조사연구로써 다음의 두 가지 방법론을 사용하였는데 먼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으로 문제행동 경험이 있는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방법에 대한 자문과 여자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대책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했으며,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여자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대책을 모색하고 합의점을 도출했다.

2. 조사결과

1)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1) 조사방법

전문가 의견조사를 위하여 교육분야, 사법분야, 사회적지원분야의 전문가 30명을 표집하여 전문가 의견조사지를 e-mail과 우편으로 발송해 조사하였다. 교육분야에는 일선 중·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을 포함하여 학생 생활지도를 맡고 있는 학생부장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추천받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사법분야에는 경찰, 보호관찰관, 소년원 교사 등 사법기관에서 여자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공

무원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사회적지원분야에는 유해환경감시단 등 청소년문제 예방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단체, 여자만을 수용하는 가출청소년쉼터, 선도보호시설, 미혼모시설에서 여자청소년을 지도하고 있는 전문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3년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이고, 조사대상 전원으로부터 의견을 회수하였다.

(2) 여자청소년 문제행동 발생실태 인식도

전문가들은 여자청소년의 문제행동으로써 가출과 성매매를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가출의 경우 그 자체의 문제보다는 가출 이후에 방종한 생활로 인해 다른 문제행동을 저지르기 쉽고 특히 의식주 해결을 위해 절도를 하기도 하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써 유흥업소에 취업하거나 성매매에 쉽게 빠지게 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다시 말해 가출이 모든 여자청소년 비행의 시발점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성매매를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이유는 자아존중감의 상실로 자포자기하게 될 뿐 아니라 손쉽게 생계가 해결되기 때문에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기가 어렵고, 벗어난 이후에도 건강 회복이 어렵거나 특히 임신 경험이 있으면 문제가 2세에게까지 파급될 수 있기 때문이며, 여성의 성매매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3) 여자청소년 관련사업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현장 전문가를 통해 교육분야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법분야의 경찰서와 보호관찰소, 여자소년원, 사회적 지원분야의 청소년단체, 청소년쉼터와 선도보호시설, 미혼모시설의 여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대책 관련사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제안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교육분야의 경우 시설 면에서는 여학생 전용 합숙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인력 면에서는 여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여교사로서 상담훈련을 받은 교사를 배치하며 학생회 산하에 여학생부를 두는 것도 여학생 생활 지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프로그램 면에서는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 및 여자청소년을 위한 특별활동 실시 등을 들고 있다.

사법분야의 경우 시설과 인력 면에서는 여자보호관찰소 신설 및 여성전담 보호관찰관 배치를 들고 있고, 프로그램 면에서는 성교육, 여자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사회적 지원분야의 경우 시설 면에서는 쉼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남녀분리 운영이 필수적이고, 인력 면에서는 전문상담인력의 배치와 특히 야간생활지도자의 경우는 더욱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산 면에서는 전문 심리치료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프로그램 면에서는 보호시설별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리상담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4) 여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대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육분야의 문제점은 첫째,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 문제이다. 둘째는 입시위주, 실적위주의 교육운영 등 교육체제의 문제이다. 셋째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대책의 문제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성교육과 성문제 예방 대책으로써 여성 정체성 형성 교육과 양성평등 교육, 성의 고귀함과 아름다운 성관계에 관한 교육 실시, 현실적이고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 실시, 성문제 경험이 있는 여자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심리치료, 여자청소년 뿐 아니라 남자청소년 대상의 엄격한 성교육 실시, 부모 대상 성교육 실시, 성접촉 정도에 따른 차별화된 성교육 실

시, 소그룹지도와 1:1면담, 건강정보 제공, 이성교제 지침 마련, 건전한 이성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마련, 건전한 직업 가치관 교육, 건전한 아르바이트 기회 제공, 체계화된 프로그램과 전문강사 양성, 향락문화와 퇴폐적 성문화 개선 등이 제안되었다. 둘째는 교육체제의 개선 방안으로써 인성을 중시하는 교원임용방안 마련, 입시위주의 교육과정 편성 지양, 예절교육과 인성교육 강화, 학교사회사업에 의한 적극적 개입 등이 제안되었다. 셋째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대책으로써 진로상담 및 직업교육 실시, 학교중퇴 청소년 구제책 마련, 학교중퇴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확충, 학교부적응 원인별 인성교육 프로그램 마련, 문제청소년의 학교 복귀후 적응 프로그램 지원 등이 제안되었다.

사범분야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사범처우가 예방보다는 단속과 처벌 위주의 엄벌주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는 앞의 지적과는 반대로 처벌과 규제가 미약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셋째는 피해자나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유해업소와 업주 및 성매매 가해성인에 대한 단속과 처벌 방안으로써 공정한 단속과 엄격한 처벌, 단속 횟수와 권한 확대, 지속적인 단속, 투스트라이크 제도의 신설을 통한 단속, 성인이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행위 사안 적발시 엄중 처벌, 성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등이 제안되었다. 둘째는 청소년에 대한 단속과 처우방안으로써 청소년 상습 일탈행위 장소에 대한 경찰의 숙지를 통한 단속, 청소년쉼터에 대한 경찰의 숙지를 통한 청소년 지도, 사법기관에서도 처벌 및 귀가지도 뿐 아니라 상담시스템 구축, 쉼터나 상담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부모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교육이수 의무화, 성매매 청소년에게도 적절한 수준의 처벌, 건전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제도화, 단순 성매매 청소년은 관대하게 처우하고 상습자의 경우는 강제적인 시설 보호, 처벌보다는 교육위주의 개별화된 처우 실시, 보호처분의 실효성 확보, 잘못을 반성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 실시, 문제유형별 치료 프로그램 개발, 문제청소년에 대한 사후조치 마련, 경미한 비행청소년을 위한 교정교육시설 건립, 초·중·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여자청소년 보호시설 설립, 여자청소년에 대해서는 여성이라는 특별한 관점에서 사법적 개입이 필요하는 점 등이 제안되었다.

사회적 지원분야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가출청소년쉼터의 인력, 프로그램, 홍보 부족 등 운영에 관한 지적이다. 둘째는 가출청소년쉼터를 비롯한 문제청소년을 위한 시설 부족이 지적되었다. 셋째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예산의 부족을 들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가출청소년쉼터와 관련하여 쉼터 증설, 쉼터의 시설 개선, 접근이 용이한 위치 선정, 쉼터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쉼터 설립, 인력 증원, 종사자에 대한 재교육 및 피로 재충전 기회 제공, 예산 지원, 홍보강화, 사법기관 및 다른 사회지원과 연계, 쉼터 유형의 다양화 및 특성화, 의로서비스 제공, 거리상담 제공, 쉼터를 거쳐간 청소년이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적절한 지도, 가정과 같은 분위기로 운영, 24시간 개방된 쉼터 운영, 쉼터를 바라보는 지역사회 시각 개선 및 인식 전환 유도 등이 제안되었다. 둘째는 문제청소년에 대한 대책으로써 이들을 수용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기관 및 보호시설 확충,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여자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저연령화 되고 있는 미혼모 대책 수립, 청소년 성매매 응급구조단 조직, 청소년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체계 확립, 학생이 아닌 청소년에 대한 보호 지지망 구축 등이 제안되었다. 셋째는 일반적인 청소년 대책으로써 청소년단체 육성, 청소년시설 확대 및 환경개선, 청소년이 친구를 만나고 머물고 싶어하는 공간 확충, 전문인력 양성 및 증원 배치, 국가적 차원의 예산확보 및 사업확장을 위한 예산 인상,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문화사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 등이 제안되었다.

2) 청소년 욕구조사 결과분석

(1) 조사방법

청소년 욕구조사를 위하여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일으켜 징계처분을 받은 여학생과 보호관찰 중인 여자청소년, 가출청소년쉼터의 여자청소년 등 교육, 사법, 사회적 지원 각 분야별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여자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3년 8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이다.

(2) 여자청소년 문제행동 경험실태 및 인식도

조사대상 여자청소년의 문제행동 경험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제유형을 지위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약물비행, 성비행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이의 경험여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지위비행의 경우는 면접조사 대상청소년 30명 전원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폭력비행은 20명(66.7%), 재산비행은 14명(46.7%), 성비행은 11명(36.7%), 약물비행은 2명(6.7%)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들 중 11명(36.7%)의 여자청소년은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조사나 재판, 처벌 등 사법 처리 경력이 있다고 응답했다.

<표 VI-1> 문제행동 경험여부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전 체	30	100.0
지위비행	30	100.0
폭력비행	20	66.7
재산비행	14	46.7
약물비행	2	6.7
성 비 행	11	36.7
사법 처리 경력	11	36.7

다음으로는 문제행동의 경험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난 일년동안 다섯 가지 유형의 비행은 어느 정도 해보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지위비행은 일주일에 3-4번 이상 해본 여자청소년도 7명(23.3%)이나 되고 한번도 한 적이 없는 청소년은 2명(6.7%)에 불과했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비행들은 지난 1년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을 뿐 아니라 경험했더라도 6개월에 1-2번 정도이다.

<표 VI-2> 문제행동 경험정도

(단위 : 명(%))

구 분	없 음	6개월에 1-2번	한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일주일에 3-4번
전 체	30(100.0)	30(100.0)	30(100.0)	30(100.0)	30(100.0)
지위비행	2(6.7)	9(30.0)	7(23.3)	5(16.7)	7(23.3)
폭력비행	15(50.0)	14(46.7)	1(3.3)	-	-
재산비행	23(76.7)	6(20.0)	1(3.3)	-	-
약물비행	29(96.7)	1(3.3)	-	-	-
성 비 행	20(66.7)	8(26.7)	-	2(6.7)	-

조사대상 여자청소년들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행종류는 지위비행 중에서는 가출, 음주, 흡연이고, 폭력비행 중에서는 폭행, 성비행 중에서는 성관계, 성매매, 성추행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흡연, 성관계, 성매매이다. 이런 비행들이 여자청소년에게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흡연의 경우 발생빈도가 워낙 높아서 담배를 안 피는 여학생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라는 응답이 있었고, 성관계의 경우는 나이 어린 여자청소년들도 성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며, 성매매의 경우는 여자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큰 손상이 오고 돈을 쉽게 벌기도 하지만 오히려 금전적

으로 피해를 보는 일도 있으며 미래까지 망치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3) 여자청소년의 고민과 해결욕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자라는 이유로 살기에 더 힘들었던 점에 관해서는 첫째, 여자답지 못하다는 비난을 많이 들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남자와 차별하고 여자라고 해서 무시를 당했다는 것이다. 셋째는 문제행동을 했을 때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보다 더 많이 혼난다고 한다. 넷째는 외박이나 밤 늦은 시간의 외출이 제한되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 이상과 같이 여자청소년들은 자신이 여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여자청소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점이나 고민거리는 첫째, 가족 간 불화나 소원함 등 본인의 가정에 관련된 문제이다. 둘째는 불확실한 미래에 관한 걱정이다. 셋째는 당면문제로서의 학업과 취업에 관한 고민이다. 넷째는 이성친구를 포함해 친구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여자청소년들의 욕구를 알아보았는데, 첫째는 진로문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심리적 안정이나 자신감을 길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어른들의 이해와 관심,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는 물리적인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겠다는 것이다.

(4) 여자청소년 수용시설 및 참가프로그램 평가

조사대상 여자청소년이 참가한 프로그램과 수용시설에 대한 평가를

위해 만족도와 개선욕구, 문제행동 예방효과 등을 알아보았다. 학교에 소속된 청소년의 경우는 문제행동에 따른 징계로써 참가했던 사회봉사 활동 프로그램에 관해 질문했고,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의 경우는 현재 받고 있는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에 관해 질문했으며, 쉼터등의 시설에 수용된 경우는 시설의 프로그램에 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만족도에 있어서는 만족한다는 경우가 16명(53.3%), 보통이 9명(30%), 불만스럽다는 경우가 5명(16.6%)으로 나타나 대부분 별로 불만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징계처분으로써 사회봉사활동을 한 경우 대다수가 학교보다 오히려 더 좋아서 아무런 불만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차별성없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루했다는 것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지도자가 함부로 대하고 눈치를 준다는 점, 상담을 받는 것이 힘들다는 점, 단체생활이 어렵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첫째, 새롭고 다양하며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면 좋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부드럽게 대하고 야단을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셋째는 집단상담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다.

조사대상 여자청소년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문제행동을 예방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았는데, 긍정적인 변화로써 첫째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비행을 억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셋째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5) 여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대책 욕구

가정에 바라는 점은 첫째,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해 체벌보다는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 해결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둘째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셋째는 용돈을 충분히 받았으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학교에 바라는 점은 첫째, 학생들에 대해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둘째는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셋째는 체벌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사회에 바라는 점은 첫째, 청소년을 위한 각종 시설과 공간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둘째는 청소년의 위한 보호지원과 인권존중에 대한 바람이다. 셋째는 남녀차별이 없어지고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기를 바라고 있다. 넷째는 법제정을 통한 엄격한 단속과 제재를 바라고 있다. 다섯째는 문제행동을 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3. 예방대책

1) 교육적 대책

(1) 여학생 생활지도 대책

① 여학생의 심리적 특성에 적합한 지도

비행 여학생들을 지도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심리가 복잡하고 예민하여 상처를 받기 쉬우므로 언어 사용에 한층 유의해야하며, 자신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성향이 강하므로 학생 스스로 표현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비행 여학생들은 책임의식이 약화되어 있고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지나친 수용 태도를 견지할 경우 피상적인 반성 수준으로 그칠 수 있으므로 학생 문제에 대

한 정확한 정황 파악이 필요하다. 특히 남교사가 상담하거나 지도할 경우 신체적인 접촉은 절대 금해야 하며, 사춘기에 해당하는 시기이므로 교사와 학생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도해야 한다.

② 교사-학생간의 신뢰 회복

교사-학생간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교사들은 여학생지도에 큰 곤란을 느끼고 여학생들과의 의사소통 곤란을 하소연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사소통 곤란은 생활지도 뿐 아니라 수업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생활지도가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학생과 교사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평소 학생들에게 관심을 표시하고 학생 입장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 준 교사는 일상 생활지도 뿐 아니라 수업에서도 소통이 활발하다 이러한 교사 학생 간 돈독한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사나 학생이나 서로 경험을 공유하는 활동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즉, 교사가 학생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육적 안목으로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학생들이 무엇을 좋아하는 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 지를 관심 있게 보고 이것이 학생들에게 전달되면 비로소 세대차가 극복되고 의사소통이 원활해진다. 그러면 감수성이 뛰어난 여학생들은 급방 교사의 노력을 알아차리고 가까이 다가온다. 학생과 동고동락하려는 교사의 자세는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교사에게 다가오는 용기를 북돋아 주며 이는 효과적인 생활지도를 위한 첫걸음이 된다.

③ 개개인을 인격체로 존중하는 공동체 형성

학생 개개인을 인격체로 존중하는 학교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는 학생들의 중요한 생활공간이다. 비록 비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이 곳에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교사들과 친밀한 인간적 관계를 맺고 싶어한다. 그러나 학교나 교사가 비행 학생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지도 대상으로만 본다면 생활 지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이해 부족, 이로 인한 의사소통 부재, 갈등, 강압과 통제에 입각한 생활지도로부터 탈피하여 학생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능동적인 학교 생활의 참여자로 인식하고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가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즉, 학교에서의 생활지도가 규제와 강압보다는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분위기에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규칙과 질서의식을 길러줄 수 있는 인성교육을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 원하며, 교사의 공정하고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원하고 있다.

④ 생활지도의 근본적 방향 및 운영체제 전환

학생생활지도의 근본적인 방향 및 운영체제가 전환되어야 한다. 여학생 생활지도는 통제 위주에서 상담위주의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생활 지도부와 상담부의 운영 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생활 지도부와 상담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두 부서 간에 연계성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생활지도 운영을 위해서는 두 부서가 연계하여 지도하거나 두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통제 위주의 방법에서 통합적, 전인적 방법에 의한 지도와 상담 활동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동안 생활 지도부는 학생들의 생활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곳으로, 생활 지도부 교사는 엄격하고 무서운 사람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생활 지도부와 상담부 활동 간의 연계 또는 통합을 통해 생활지도의 이미지를 자율적이고 도움을 주는 친근한 이미지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적, 전인적 지도와 상담 활동에 적합한 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또한 학교에서의 상담활동은 상담교사(수업 겸임)의 수업부담, 전문 상담 능력 부족 등에 따른 학생들의 상담실 이용을 저조, 상담교사의 문제 해결 능력(전문성)에 대한 학생들이 불신 등으로 인해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 생활지도와 상담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인 상담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상담에 대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상담실 편의 시설 확충 등 학생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⑤ 교사연수제 실시

교사들의 학생 지도를 돕기 위한 교과 과정 개설, 특히 여학생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켜 줄 수 있는 연수가 필요하다. 중·고등학교가 점차 남녀 공학, 혼성반으로 되어감에 따라 남녀 교사들 공히 남녀 학생을 모두 지도해야 하며, 특히 남교사의 경우 여학생 지도시 더 많은 애로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학생 지도에 필요한 연수를 갈망하고 있으며, 또 교사가 학생 지도에 자신감을 갖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교사 연수가 필요하다. 연수 내용은 이론 위주의 강의식 방법을 지양하고 실제 청소년 지도 경험이 많은 일선 교사나 청소년 상담원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사례중심의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이 좋으며, 연수 과목은 여성학 특강, 여성(여학생 심리), 여성 상담 기법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연수를 받은 교사들을 우선적으로 학급 담임 교사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담임교사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적응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담임교사들은 학생들과의 의사소통 불능, 학생지도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고 학생들은 교사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연수를 받은 교사를 담임으로 우선 배치하며, 연수를 받지 않은 담임교사들에게는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학생

들 지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⑥ 교사들의 생활지도 가치관 함의

학교 생활 지도를 바라보는 교사들의 가치관을 일치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의 생활 지도와 관련해 실패를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교사 상호간의 생활 지도에 대한 가치 차이이다. 같은 사안을 놓고도 학급 담임간, 교사 상호간의 이견으로 학생들은 혼동에 빠지며, 학교 규칙은 안 지켜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결국 생활 지도는 공염불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학교 그리고 교사 간에 토론 문화가 없기에 학생 간에 토론 문화가 생기지 않고, 교사-학생간의 토론 문화도 없다. 이처럼 언로가 막혀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모범 사례나 프로그램도 학교 내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 생활지도를 잘 하려면 학급회, 학생회, 생활지도 담당 교사, 교장, 교감 등이 함께 토론하는 열린 공간의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 생활 지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가치관을 일치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뿐 아니라 교사 상호간의 열린 공간이 조성되고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토론 문화의 정착이 시급한 일인 것 같다.

⑦ 생활지도 전담 교사제 신설

생활 지도 전담 교사제를 신설하고 그들을 우대하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교사가 학생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육적 안목으로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학생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관심 있게 보고 이것이 학생들에게 전달되면 비로소 세대 차가 극복되고 의사소통이 원활해진다. 그러면 감수성이 뛰어난 학생들은 금방 교사의 노력을 알아차리고 가까이 다가온다. 학생과 동고동락하려는

교사의 자세는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교사에게 다가오는 용기를 북돋아 주며 이는 효과적인 생활지도를 위한 첫걸음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으나 문제는 누가 이렇게 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 지도 전담 교사제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학교 내에서 가장 인격적이고 학생들의 인기와 존경받는 교사를 생활 지도 전담 교사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그들에게 말로만의 우대가 아닌 실질적인(획기적인) 우대를 해 준다면 모든 교사는 생활 지도 전담 교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며, 학생들의 생활 지도는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⑧ 지속적인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여덟째, 문제 여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가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문제 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그들이 처한 가정적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효과가 적으며, 이들의 교육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에 대한 접촉과 상담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문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할 때 부모도 함께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과 부모 간에 상호 이해의 장을 학교에서 적극 마련할 때 생활지도가 효과적이 된다.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에는 부모의 역할과 중요성, 청소년기의 특성, 효과적인 자녀와의 의사 소통, 자신의 청소년기 회상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단순한 강의 위주가 아닌 사례 중심 발표나 역할극 등의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⑨ 학교규칙의 개혁과 학생자율규제 확대

학생 참여에 의한 학교규칙의 개혁과 학생자율규제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학생들은 학교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이유를 주로 학교 규칙이 자신들의 문화와 생활과 맞지 않아서라고 한다. 현재 학교 규칙들 중 학

생의 두발, 복장 등에 대한 세부규정은 개성을 중시하는 학생육구에 부합하지 않아 빈번한 위반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학교규칙 전체를 경시하는 풍조를 막기 위해 불필요한 세부규정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규칙을 제정하게 되면 그만큼 학교규칙을 준수해야 할 학생들의 책임감이 고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학교 규칙 제정시 학생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칙을 제정하게 되면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학교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민주적 의사 결정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⑩ 학교 내 열린 공간 마련

문제 학생들도 함께 할 수 있는 학교 내 열린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나 교사와의 유대감은 학생들의 비행 억제 효과가 있다. 즉, 다양한 자치활동과 동아리 활동은 교사·학생이 서로 학교라는 공간의 구성원으로서 일체감을 느끼고 갈등을 승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특히 문제 학생들은 학업보다도 동아리 활동이나 자치 활동에 더욱 적극적이며, 자신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축제를 매우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함께 어울리는 놀이와 대화의 장인 축제와 자율적 활동을 통해 학생들을 자발적이고 참여적인 학교의 일주체로 세우는 것이 학교 생활지도의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으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⑪ 담임교사 중심으로 학생지도 진행

학생 지도가 보다 담임 교사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문제가 있을 경우 문제를 의논하는 대상으로 담임이 가장 많으며, 오히려 학교 상담 교사는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다. 담임은 학생들과 직접적

이고 항상적인 접촉으로 학생들에게 상당히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더우기 담임 교사가 학생들의 신뢰를 받고 있을 때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며, 문제 행동의 교정에도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학생 지도와 관련이 깊은 생활 지도부, 상담부 교사들 뿐 아니라 담임 교사들에게도 상담 관련 연수를 받도록 하며, 학생 지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급담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많은 교사들이 담임 교사를 선호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

⑫ 교사 임용 제도 개선

교사 임용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의 절반 이상이 생활 지도와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교사 임용 시험의 경우 다소 면접의 비중이 늘었다고는 하나 학과 위주의 필기 시험으로 주로 치러지며, 교사는 그에 따른 성적순으로 임용된다. 학교 생활 지도에 가장 적합한 교사상은 포용력 있고 학생 편에 서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사명감이 넘치는 교사이다. 이러한 교사를 임용하기 위해서는 학과 위주의 필기 시험보다는 그들의 인성과 사명감 등을 제 1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교사 임용 방법이 고안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여자청소년 성교육 대책

① 대상자 중심의 차별적인 성교육

여자 청소년이라고 해도 연령, 학년 심지어 방학 전 후에 따라 성에 대한 태도가 급격히 변하는 것을 성교육 현장에서 느낄 수 있다. 또한 같은 연령 같은 학급의 급우라 해도 이성교제 경험이 전혀 없는 청소년이 있는가 하면 성매매를 하고 있는 청소년이 한반에 흔재해 있기 때문

에 일률적인 성교육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문헌에서 보고된 바 있는 고위험군에게는 피임교육을 위주로 하는 성교육을, 이미 임신이나 낙태를 경험한 군에서는 재활이나 재임신 방지 교육, 이성교제 상태에 있는 군에서는 성적 자기주장 훈련을 통한 개인기술 기법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여야 그 실효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된다.

② 학교성교육의 교과과정화 및 담당교사 지정

성교육이란 반드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만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모든 교사가 성교육 교사연수를 받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보아진다 그러나 깊이 있게 성문제를 다루고 일관성있는 가치관 주입을 위해서는 현재 권고사항인 10시간을 정규교과화 하고 이를 담당하는 성교육 담당교사를 두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보아진다. 또한 성교육의 후속으로 성상담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성교육 담당교사는 상담과 교육에 대한 자격을 갖춘 교사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③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

성교육은 지식 뿐만 아니라 태도와 행동을 바꾸어야 하는 과목이다 천편일률적인 강의식 교육으로는 청소년의 감각을 따라갈 수 없다. 다양한 기법의 성교육과 다양한 교재 개발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터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의 교사와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공감감이 가는 교육방법이 필요하다. 방송실에서 하는 대단위 성교육, 비디오만 보여주고 끝내는 실적위주의 성교육을 통해서는 현재의 여자청소년의 성문제를 예방하는데 기여하지 못함은 자명한 일이다.

④ 사회의 변화 및 부모교육 제도 정립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와 물질만능주의적 사회분위기, 전세계에 유래없는 왜곡된 성문화가 여자 청소년의 성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동의하는 현실일 것이다. 성교육은 사회, 가정, 학교에서 삼위일체되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성교육을 하기에 앞서 ‘성매매 근절’, ‘포르노 유해 사이트 스팸메일 신고’, ‘여자청소년 성매매자 신상공개’등의 사회적 청소년 보호운동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사법적 대책

(1) 성보호 관련법의 개선

① 미성년여성 성매매 관련법의 개선방안

가.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교행위 개념 확대

청소년성매매 행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예컨대, 성행위와 성행동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는 점, 사람들의 성적 취향 또한 각인각색이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법의 목적이 청소년의 인권보호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을 이용하여 그들을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성매매에 해당하는 행위는 성교행위나 신체 또는 도구의 삽입을 통한 유사성교행위 외에도 청소년이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자위행위를 해주는 행위, 애무행위(petting), 가학성 변태행위(sadism), 피학성 변태행위(masochism) 등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박병식, 1999 : 15-16)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아동매춘등처벌법은 아동성매매의 용어정의에

서 ‘성교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즉, ‘성교 등’이란 “성교 혹은 성교유사행위를 하거나 또는 자기의 성적 호기심을 충족할 목적으로 아동의 성기 등(성기, 항문 또는 유두를 말한다)을 만지거나 혹은 아동에게 자기의 성기 등을 만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성기를 매개로 하는 모든 접촉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도 ‘성적 행위’와 ‘성적 접촉’의 정의에서 우리나라의 ‘성교 및 성교유사행위’보다 넓은 정의를 내리고 있다. ‘유사성교행위’에 대해 논란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다양한 성매매 형태를 다룰 수 있도록 보다 넓은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말하는 ‘유사성교행위’는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되거나, 그 이외의 성적 행위들까지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이 법의 주된 목적이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청소년의 이용’을 금지한다는 데 있다면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은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청소년의 연령인식 관련조항 신설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범이나 중간알선자가 청소년연령을 알지 못한 것에 관한 규정이 없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는 청소년고용시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성보호법상으로는 청소년의 연령확인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는 상대방이 청소년의 연령인식에 따른 항변가능성 여부에 대한 규정을 둔 경우가 있다. 일본은 아동매춘등처벌법에서 단순아동성매매죄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몰랐음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성매매주선죄나 권유죄,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등의 죄에서는 과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매매 아동의 연령을 몰랐음을 이유로 항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순아동성매매죄보

다 성매매주선죄, 권유죄,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죄를 더 엄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취지일 것이다. 미국은 피해청소년이 12세 이상인 경우, 영국은 13세 이상인 경우, 프랑스는 15세 이상인 경우, 독일은 14세 이상인 경우 등에는 성매매법은 연령을 몰랐음이나 결혼관계임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성매매에 관한 모든 죄에 대해 연령의 인지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논란이 있다. 따라서 외국처럼 연령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가능하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이를 매개하는 행위 등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죄에 연령을 몰랐음을 이유로 한 항변을 인정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청소년에 대한 연령과악 의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신상공개의 법제 정비와 실효성 확보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형사제한적 책임원칙 위반에 따른 이중처벌론이나 평등의 원칙 위반,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 그리고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라는 사회공공이익의 구현과 국민제도라는 제도의 목적을 중시한다면, 이 제도는 청소년성보호법의 목적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 존재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다만, 이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검토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한 게재방법이 막강한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여전히 여기에서 소외되는 집단들도 있을 것이므로 신상공개제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보호’와 ‘공공의 안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수십, 수백만이 살고 있는 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도의 주민이나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주민들이 관청의 게시판에 붙어 있는 계도문을 스스로 찾아서 명단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은 너무 형식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지며, 공개대상자의 신상

가운데 특히 주소는 시·군·구까지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십만이 살고 있는 이들 지역에서 과연 공개대상자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며, 오히려 동명이인의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는 것 등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성범죄자등록법이나 영국의 성범죄등록법에 의한 성범죄자 등록이나 공개는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는 이에 비하면 매우 단순하므로, 영미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의 등록과 공개에 대한 법률을 참조하여 보다 세밀한 법규정들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선정, 공개내용, 공개받을 대상자 및 범위, 공개담당기관, 다양한 공개방법 등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단순한 신상공개제도로 인한 범죄자 인권침해 논란을 종식시키고, 성범죄자의 재범을 강력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미성년여성 성매매 관련법 시행의 실효성 확보방안

가. 청소년대상 성범죄규제 및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의 활성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청소년 성매매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 시행초기와 같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엄정한 법적용 및 단속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성보호법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되 사회 질서 확립대책 추진 실적 평가와 병행 실시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의 미성년고용이 높은 티켓다방, 단란주점 등에 대한 단속과 청소년성매매 관련범죄자의 검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범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관해서는 단속업무에 대한 저항이 업주들에게서 일어나고 있고, 그들의 영향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단속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이 있으며, 단속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잦은 전직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업무를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하겠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 미성년여성의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이유로 침체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국가는 단속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속공무원의 숙박업소 단속이 이전과 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행정규제개혁의 이유로 폐지된 숙박업소의 숙박계 작성의무도 그 부활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 대상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적극적 활용

청소년성보호법상 대상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가능함을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청소년에 대한 보호사건 송치비율은 5.1%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은 불안정한,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세계적으로 범죄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하는 경우에도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를 우선시하는 등 다르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통해 전과자를 만들기 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교육을 받고 의식을 바꾸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검찰과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호처분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 져야 하고 이를 위한 예산이 적절하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2001년 12월 10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1·2 단독 판사와 보호관찰관 등이 참석한 보호관찰협의회에서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에 대해 야간시간대 외출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발표하였다. 법무부는 야간외출금지명령이 부과된 청소년을 집중 보호관찰대상자로 지정, 보호관찰관이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무인 자동음식인식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의 소재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한다. 야간외출금지명령은 청소년 성매매가 주로 발생하는 야간시간대 외출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여 청소년 성매매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한다.

보호관찰처분을 받는 경우 일반준수사항과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되는데 특별준수사항의 경우 개인 특성에 따라 붙는 일정한 생활제한 조항이다. 야간외출금지명령을 받은 청소년은 정상적인 학교 및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기적인 상담지도를 받거나 준범의식 함양을 위한 수강명령도 함께 받게 된다. 현행 보호처분 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점(시설·프로그램 및 재정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 시설 및 프로그램과 그에 따르는 재정적 지원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인 조치로서 야간외출금지명령을 도입하는 것은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성매매 청소년들만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시설마련 필요

이 연구과정에서 만나 본 경찰이나 검사들이 가장 많이 지적했던 사항은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시설의 필요성에 관한 것이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성매수의 대상 청소년은 입건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청소년에 관한 향후 관리대책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가정이 어렵거나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이 많아 이로 인해 탈선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경찰에서의 조사 후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된다는 것은 큰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시설들은 수용정도의 역할만을 하고, 청소년들이 입소하

였다가 그대로 도망나와도 별 대책이 없어 또 다시 비행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별로 1-2개의 시설을 두며, 의료치료를 제대로 해 주는 등 정부가 비행청소년을 인계받아 교육, 관리시키는 기능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적인 청소년 복지시설을 마련함에 있어서 선도보호시설의 운영상 어려운 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 즉, 입소자 확보에 있어서 연계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현행법상 시설입소를 위한 행정절차상의 불합리성 제거, 재정적인 지원, 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10대, 20대 연령에 의한 시설구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라. 건전 성문화 조성사업 전개

청소년 문제의 발생지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문제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의 청소년 보호와 지도 기능 회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부는 물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미래의 아버지인 현역군인을 대상으로 아버지 역할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현재의 아버지인 예비군을 대상으로 건전 성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하도록 국방부에 요청하고, 시민단체의 10대 미혼모 방지사업 전개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여성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하며, 청소년건전성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학교시민단체 및 TV 등에 청소년 성보호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청소년 성교육 교재개발 및 예방교육실시를 확대하는 등 사회 전체에 건전한 성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연계사업이 총체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마. 인터넷에 대한 대책마련

최근 청소년성매매가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앞의 검찰통계자료나 경찰관 면접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성매매 피의자와 청소년이 성매매를 암시하는 ID와 대화명을 사용하는 경우 인터넷 운영자는 이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하여 삭제조치를 취하는 등 현재보다도 더 강한 감시활동이 요청된다. 또한 대부분의 피의자와 청소년들이 채팅상의 ‘귓속말’이나 ‘쪽지’기능을 이용하여 은밀히 성매매의 조건을 제시하고 만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귓속말 등 인터넷 채팅상의 기능을 운영자 스스로 규제하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민영선, 2001 : 42)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학교, TV, 신문, 인터넷상의 교육을 통해 성매매는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인터넷 채팅상에서 상대방이 음란한 대화를 유도하거나 성매매 제의를 받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목격한 경우 사이버 수사대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운영자들에게 이용자들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행위 등을 하면 처벌받고 신상공개된다는 경고문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청소년성매매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2) 여자청소년 문제행동 사법처우 대책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과제는 각 처우별 과제와 공통적으로 생각해 볼 과제로 구분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① 각 처우별 과제

가. 경찰, 검찰단계

경찰단계에서 시행하는 사랑의 교실은 남녀청소년을 같이 포함시켜

진행을 하며, 심리극과 같은 활동에서만 성별을 분리해서 다루었다. 그러나 여자청소년의 경우 관계에 중요성을 두며, 지지적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논의 등을 고려한다면 보다 소규모로 진행하며, 개별상담 등으로 개인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검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선도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여자청소년에게 개별상담 등을 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선정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나. 보호관찰

㉠ 보호관찰인력의 증원

보호관찰관에 의한 지도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찰대상자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이에 상응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이재상·안경옥, 1995 : 28).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보호관찰 담당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별 대상자의 필요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보호관찰 인력의 증원이 이루어져야만 여자청소년에 대한 개별필요를 보다 잘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상담가 등의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선정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상공업종사자가 많은데, 여자청소년의 경우 특히 개별상담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상담가나 사회사업가를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으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 사후관리 강화

여자청소년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논의(Calhoun et al., 1993; Miller et al., 1995; Ellis et al., 1999)를 고려한다면 이들에 대해서는 사후에도 격려와 지지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여자청소년들이 관

계적 측면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Kempf-Leonard, 2000 : 117) 보호관찰을 종료한 이후에도 카운셀링이 용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 타인을 직접적으로 돕는 봉사분야선정

사회봉사와 관련해서는 남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봉사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자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주로 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복지관에서의 타인돌보기나 청소 등은 여자에게 더 적합하다는 고려에서이다. 이것은 여자청소년에 대한 처우에는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의와 부합하는 것이다(Kempf-Leonard, 2000 : 117).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봉사분야 선정에 있어서 직접 남을 도울 수 있는 일, 예를 들면 장애인 돌보기나 목욕시키기, 노인의 식사거들기 등의 일을 맡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분야의 일은 여자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수강명령에서 개별상담의 강화

여자청소년들에게는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데, 이렇게 본다면 위탁집행의 경우 사회복지관 등에서 개별상담이 여자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먼저 상담을 요청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복지사들의 적극적인 상담과 지원이 필요하다.

라. 위탁시설

㉢ 위탁시설 처우의 확대

소년보호사건의 처분을 보면 위탁시설 처우의 비율은 3.3%에 머물고 있다(법무부a, 2003 : 494). 앞으로는 위탁시설처우가 처우의 한 수준으

로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위탁시설처우는 첫째, 여자청소년에게 중요한 지지적 분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 둘째,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이 용이하다는 점 등에서 여자청소년에게 효과적인 처우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탁시설 처우인 4호처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위탁시설 처우의 다양화, 전문화

먼저, 다양한 처우방법들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미국 미국 플로리다주의 경우를 보면 지역사회에서의 거주식 처우가 규모와 프로그램 내용면에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규모면에서 볼 때 2-4명의 수용인원(가족홈의 경우)에서부터 22-24명의 수용인원까지 다양하다(Winokur, 1999 : 41). 여자청소년의 경우 가족의 중요성이 앞에서 논의되었는데, 이를 고려한다면 소규모의 가족과 같은 환경에서 처우를 담당하는 것 또한 효율적인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여자청소년에 대한 위탁시설처우는 선도보호시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탁시설을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선도보호시설은 성인과 청소년이 같이 수용되며 윤락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4호처분 위탁기관의 성격만을 갖는 시설에 비해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여자청소년들을 수용하는 전문화된 위탁기관이 보다 필요하다.

㉡ 가족참여의 강화

현재 위탁시설이 숫적으로 너무 적어서 위탁생들이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은 가족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성을 고려한 접근에서 가족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Greene and Associates, 1998; Ellis et al., 1999: 30), 여자비행의 원인으로 가족 요인을 중요하게 다루는 경험적 연구들을 고려해 본다면 가족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부모를 대상으

로 한 교육이나 부모자녀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㉔ 위탁시설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자금지원

여자청소년에 대한 위탁시설은 기타 소년보호시설로 분류되어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거의 받고 있지 못하며,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⁴⁵⁾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자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수행하기 어렵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경우를 보면 소년사법부서가 여자비행청소년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Winokur, 1999 : 19). 우리나라의 경우도 위탁시설의 구분에 관계없이 자금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 소년원

㉕ 인성교육의 강화

소년원이 학교체제로 전환된 후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교육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강화되었지만, 인성적 측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소년원의 교정교육이 교정보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별처우에 근거한 심리치료와 인성변화를 중점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여자청소년의 경우 관계적 측면에 중요성을 두고 있으므로(Kempf-Leonard, 2000 : 117)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㉖ 가족관련 프로그램의 강화

여자비행청소년에 대한 가장 좋은 중재는 가족을 강화시키는 것이라

45) 위탁시설은 아동복지시설과 소년보호시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아동복지시설은 위탁소년의 처우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80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지만 소년보호시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해당법원소년부에서 비정규적으로 소액지원을 하고 있을 뿐이다(공정환, 1986 : 89).

고 논의되기도 한다(Gowdy et al., 1998). 특히 시설내에 있는 경우 가족과 격리되어 있으므로 부모-자녀의 유대를 유지시키거나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참여부모에 대한 인센티브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바. 교도소

㉠ 개별적인 처우의 보완

여자소녀 수형자가 몇 명 안되는 상황에서 여자 소녀 교도소의 설립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소녀의 특성을 고려한 소녀교도소에서의 처우가 여자청소년들에게는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여자청소년 비행자가 성인여자 범죄자와 공유되는 특성을 지닌다는 논의(Greene and Associates, 1998)를 고려한다면, 여자교도소에서의 기본적인 처우는 이들의 필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들이 성인이 아닌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처우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여자소녀 수형자들이 원하는 특별활동의 기회나 개별적인 관심과 보호가 성인여성에게 비해 더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 가족참여

현재 여자청소년 수형자는 입소전 거주지와 상관없이 주로 청주교도소에 수용된다. 이렇듯 거주지와 교도소사이의 먼 거리는 가족관계를 유지, 회복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공통적인 과제

모든 처우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을 제시해 보면, 첫째, 직원교육이 필요하다. 여자비행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고려하여 보다

적절한 처우를 하기 위해서는 여자청소년에 대한 처우를 맡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이다. 성을 고려한 접근의 요소 중의 하나로도 직원훈련이 제시되고 있다. 직원훈련에서는 여자청소년의 발달과정, 여자청소년 비행의 위험/차단 요인, 여자청소년의 문화에 대한 지식에 초점을 맞춘다고 논의된다(Greene and Associates, 1998). 우리나라에서도 여자비행청소년에 대한 처우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훈련의 내용에는 학대, 여자청소년의 발달적 특성, 성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훈련은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여자청소년이 임신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중에서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면 잠시 쉬었다가 부과시간을 마치도록 한다. 소년원의 경우에는 가퇴원을 시킨다고 한다. 이러한 처우를 보면 임신한 여자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제공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냥 가퇴원을 시키거나 봉사명령의 일시중단 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임신한 십대의 경우에는 심리적,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므로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이나 상담이 필요하며, 이를 고려한다면 이들을 미혼모담당기관에 연결해 주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여자비행청소년과 같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한 성인여성과 접촉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기회는 여자비행청소년들에게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자비행청소년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보다 낮다는 논의들을 고려해 볼 때 이런 기회를 통해 자신감을 갖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성을 고려한 접근에서도 이러한 멘토링이 하나의 구성요소로 언급되고 있다(Greene and Associates, 1998; Winokur, 1999 : 32). 우리나라의 경우 여자비행청소년에 대한 처우에서 이러한 멘토링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는데, 앞으

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전을 극복한 성인여성을 선도위원으로 선정하거나, 보호관찰기간에 이런 여성을 만날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설내 처우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이런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여자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처우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처우방안들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사회적 지원대책

(1) 여자청소년 보호시설의 활성화 대책

① 시설개선

청소년 보호시설의 적합한 위치는 지하철역에서 도보 10분 이내의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이 바람직하다. 내부공간은 업무공간과 생활공간이 분리되어야 한다. 또한 숙소의 경우 가급적 사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큰방 하나보다는 작은방 여러 개를 만드는 것이 좋다.

② 인력구조 개선

직원의 자격은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상담심리사 등으로 전문가를 채용해야 한다. 특히 야간생활 지도담당은 단순히 청소년의 생활지도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상담이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 이는 보호시설은 일반 상담실과 달리 24시간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주간보다 야간에 문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실제 심야시간대에 개별상담, 부모상담, 퇴소상담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

따라서 예산지원을 통해 전문상담원이 3교대 근무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③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어린 시절에 성적으로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여자들이 나중에 성매매를 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 이것은 성적 학대가 가출, 약물남용, 혹은 다른 비행과 같은 요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매매에 가담할 확률을 높인다고 한다. 한편 성매매는 낮은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이것을 성폭력 경험과 관련시켜 보면, 성폭행을 당한 경험은 자신이 순결하지 못한 존재라는 생각으로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아지게 되고 이러한 낮은 자아존중감은 쉽게 성매매를 하도록 이끌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여자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존감 향상, 문제해결능력 향상 등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④ 직업의식 고취 및 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현재 선도보호시설에서는 미용, 양재, 제빵, 컴퓨터 등 직업훈련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교육대상자가 교육의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또다시 원조교제 및 향락산업으로 재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니고 있는 기술과 기능을 바탕으로 노동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직업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⑤ 사후지도를 위한 멘토 프로그램의 활성화

비행청소년들은 대부분이 누군가로부터 애정을 안정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과 생활을 공유하면서 이들 청소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심리적 지원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단기간의 프로그램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지속적으로 이들을 도와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또 이들을 옆에서 보살피 주고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다. 멘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멘토 프로그램은 보호시설 퇴소 및 퇴소예정 청소년들에게 대인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초태도 및 기술훈련을 통해 사회복귀 시 적응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일대일 의미 있는 관계형성을 통하여 적절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 모델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청소년들의 재범을 방지 할 수 있다. 지역사회구성원에게 여자비행청소년에 대한 이해의 증진 및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내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협조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⑥ 경제적 자립지원체계 구축

비행청소년들은 가출한 상태인 경우가 많고 가정에도 문제가 많다. 따라서 이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기보다는 이들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이 또다시 비행에 빠지지 않도록 자립할 때까지 위탁 보호할 수 있는 소규모의 중·장기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직업교육 이후에는 일자리를 소개해 주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예: 자립생활관, 전환생활프로그램)

⑦ Out-Reach 프로그램의 활성화

일시적 충동 가출자들을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쉼터에서 가출청소년들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가출청소년들이 많이 모여있는 현장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거리상담프로그램은 길거리를 배회하면서도 쉼터를 찾아오기를 꺼려하여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돕고자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즉 가출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면서 유해환경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청소년담당실무자들이 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 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길거리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거리상담프로그램에서는 성적으로 착취당하거나 착취당할 위험에 놓여있는 가출소녀들에게 치료, 상담,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의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가출청소년 중에는 길거리생활을 하는 가운데 임신중인 가출소녀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전에 병원진찰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거주지 등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집을 나와서 길거리에서 지내다보면 전반적인 건강에 이상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영양실조, 피부질환 뿐만 아니라 이들 대부분은 성병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성병관리가 소홀하고 약물사용에 관한 지식도 부족하여 자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인식하지조차 못하고 있다.

따라서 거리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에게 안전, 위기개입, 즉각적인 의료보호, 옷, 음식, 쉼터 등과 같은 당장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이들이 더 이상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사회의 주류 속으로 들어오게끔 하여야 한다.

(2) 성매매 여자청소년 보호프로그램 운영 대책

① 성매매경험 청소년에 대한 가족지지

성매매경험 청소년의 대다수가 가족에게 의지를 하고 싶어하고 가족으로부터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하나 가족은 성매매경험 청소년을 거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찰이나, 시설에서는 성매매경험 청소년이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타 가족들로부터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근원적인 욕구를 충족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전문분야 지도자 배치

성매매경험 청소년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는 반드시 전문가(사회복지사, 상담가, 교사 등)로 구성된 프로그램 지지 집단이 되어야 하며 가급적 입소 보호인원과 입소 청소년의 문제유형에 따라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전문분야의 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가정위탁이나 가정보호의 경우 부양부모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하여 소정의 신청절차에 의해 선택되어야 하며, 또한 성매매경험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와 모범적인 가정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 자연스럽게 가족구성원끼리의 역할이행에 관한 학습이 되어야 한다.

③ 충분한 보호기간 확보

보호기간은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 스스로 귀가 하도록 하고, 가족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이들의 경우 그룹홈으로 전환하여 성인으로 자립할 수 있는 학습적, 경제적, 사회적인 여건을 만들어 준다.

④ 시설과 프로그램의 전문성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자아정체감 고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생활습관, 소비습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이행 등에 관하여 세부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아정체감 고취 프로그램은 균일한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되는 것보다는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하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학교 중퇴의 경우 학점 이수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생태프로그램 등의 간접적으로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생태적 시각을 지닌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⑤ 실질적 자원 중심의 네트워크 형성

보호시설의 네트워크는 성매매경험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 연결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현재 성매매 경험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의 가능성을 신뢰하고 경험의 끝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한없는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실행 정신이다.

공 백

VII. 외국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1. 미 국
2. 일 본
3. 독 일
4. 스웨덴
5. 핀란드
6. 덴마크
7. 영국
8. 프랑스
9. 호주
10. 싱가포르

공 백

VII. 외국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본 장에서는 외국의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았다. 각 국가별로 ‘청소년 관련 행정조직 체계’, ‘청소년 영역별⁴⁶⁾ 문제행동 예방 및 대책 관련법’, ‘청소년 영역별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사업 및 프로그램’의 순으로 서술하였다.

1. 미 국

1) 청소년 관련 행정조직 체계

미국에는 청소년복지정책만을 전담하는 연방정부 부처가 없다. 다만 ‘보건 및 인간서비스성(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에서 여러 사회복지정책과 함께 청소년 정책을 함께 다루고 있다. 그리고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청소년 관련 부처도 주와 지방마다 다르지만 주로 ‘복지부(Welfare Department)’에서 다룬다.

연방정부의 ‘보건 및 인간서비스성(DHHS)’의 조직을 보면 사회보장국, 보건 재정국, 공중보건 서비스국, 아동및가족 서비스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의 넷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특히 청소년복지정책과 관련된 부서는 네 번째인 아동및가족서비스국(ACF)이다. 여기에서는 AFDC, WIN 및 아동지원강화를 포함하여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주정부의 경우 공공복지청에 가족·아

46)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관련법과 정부차원의 사업 및 프로그램 부분에서는 빈곤과 결손가정 청소년, 가출 및 비행청소년, 학대·유기·미혼모 청소년, 일반청소년에 관한 내용을 주로 살펴보았다.

동서비스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밑에 사회복지과가 있으며, 그 산하에 아동·가족 서비스사무소가 설치되어 요보호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지방정부의 경우 인간서비스 행정청 산하에 청소년국, 사회복지서비스국 등에서 청소년 복지서비스 업무를 맡고 있다.

청소년복지를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은 특히 주와 지방정부에서 직접 운영해 오던 것을 1975년의 '사회보장법 Title XX'와 1981년의 '총괄예산법'⁴⁷⁾, '사회복지서비스 통합법' 등의 제정으로 민간복지기관에 넘기고 돈만 정부가 대주는, 다시 말하여 '정부투자', '민간복지기관운영' 체계가 지금까지 일반화되고 있다. 미국 청소년복지를 포함한 공공복지의 연방-주-지방정부로 이어지는 행정체계를 보면 연방정부는 주와 지방에 대해 매우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최소한의 기준과 프로그램 범주를 정하고 프로그램 시행의 세부적 사항은 각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주별로, 지방별로 조직형태나 프로그램의 내용이 상이한 특징을 갖는다고 하겠다(조홍식, 1993, pp. 157-158).

2)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대책 관련법

미국의 경우, 가출 및 비행청소년을 위한 법으로 소년사범 및 비행방지법, 가출청소년 및 집 없는 청소년법, 청소년비행예방법 등이 있으며, 학대·유기·미혼모 청소년을 위한 법으로는 청소년 건강서비스 및 임신예방과 보호에 관한 법, 청소년가족생활법, 직업과 책임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일반청소년을 위한 법으로는 청소년 통행금지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

47) 이 법의 골자는 지금까지의 57개의 개별적인 부조프로그램들을 9개의 큰 통합적 부조로 바꾸어 연방정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비용에 대한 지출을 줄이자는 데 있었다. 그 결과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후 제정된 '사회복지서비스 통합법'에 따라 지금까지 제공되던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몇 개의 형태로 통합되는 바람에 아동과 청소년들을 비롯한 대다수 복지는 예산이나 규모면에서 축소되었다(조홍식, 1993, p. 156).

(1) 소년사법 및 비행방지법

소년사법 및 비행방지법(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은 가출청소년과 무단결석자,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책임을 미연방 사법부(U.S. Department of Justice)의 소년사법 및 비행방지실(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과 미연방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건강, 교육 및 복지실(현 가족 서비스 및 청소년 서비스국(Family and Youth Services Bureau))에 위임하였다. 이 중 Title I, II와 IV는 미연방 사법부가 관장하고, Title III만을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의 목적은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예방 및 전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청소년의 권익을 보장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정하며, 주 및 지방정부에서 청소년들을 성인 감옥으로부터 분리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은 1992년 9월 30일 이후로 제승인 되었다(최인섭·원혜옥·강은영, 2000, p. 21)

(2) 가출청소년 및 집 없는 청소년법(舊 가출청소년법)

소년사법 및 비행방지법의 Title III을 구분하여 부르는 명칭인 ‘가출청소년법’⁴⁸⁾은 1977년에는 집 없는 청소년을 포함시켜 ‘가출청소년 및 집없는

48) 가출청소년법(Runaway Youth Act)은 그 이전에 존재했던 청소년범죄방지법을 재인가 및 확대하고자 상정된 몇 가지 법안 중의 하나로, 1974년 9월 7일 포드 대통령에 의해 법제화되었다. 이 법의 목표는 가출청소년들이 가족과 재화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범죄가 아닌 행동을 한 청소년들을 수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출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개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의 제정으로 가출청소년 쉼터와 상담서비스의 설치, 가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 수백만 달러의 연방예산이 쓰일 수 있게 되었다(최인섭·원혜옥·강은영, 2000, p. 22).

는 청소년법(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가출청소년만이었던 서비스 대상이 집 없는 청소년에로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이 법은 독립 생활 프로젝트(independent living project)를 통해 서비스 수혜 대상자를 16세 이상 가출 및 집 없는 청소년에까지 확대하였으며, 1988년부터는 전국 긴급전화, 모델 프로그램 개발, 연구조사,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기 시작하였다(최인섭·원혜옥·강은영, 2000, p. 22).

(3) 청소년비행예방법

미국의 청소년비행관련법으로는 청소년비행예방법(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1974)를 들 수 있다. 이 법은 불필요한 청소년의 구금을 줄이고, 청소년비행의 예방과 처우를 위해 주정부가 행하는 각종 사업에 연방정부의 보조가 주어지도록 하는 법이다(조홍식, 1993, p. 155). 이외에도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청소년 비행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법률로 사회보장법 Title XX⁴⁹⁾(1975), 장애아동교육법⁵⁰⁾(The Education of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1975), 입양부조와 아동복지법⁵¹⁾(The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Law, 1980),

49) 1962년 '사회보장수정법' 이후 개별적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연방정부 재원을 주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남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 법을 통하여 연방정부 보조의 한도액을 설정하고 각종 서비스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였다. 즉, 많은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이 연방정부나 주정부와 직접 계약하여 아동 및 청소년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은 오늘날의 각종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주된 재정원천이며, 사회사업전문직과 가장 관련이 많은 법이 되고 있다(조홍식, 1993, p. 155).

50) 장애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각종 교육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가능한 장애아동들을 정상아동의 학급에 넣어 사회적 통합화가 이루어지게 한 법률이다(조홍식, 1993, p. 155).

51) 청소년복지정책에 가장 영향을 끼친 법 가운데 하나로서 기존의 사회복지

가족지원법⁵²⁾(Family Support Act, 1988), 인디언아동보호와 가정폭력에
 방법⁵³⁾(Indian Child Protection and Family Violence Prevention Act,
 1991) 등이 있다.

(4) 청소년 건강서비스 및 임신예방과 보호에 관한 법

카터(Carter) 행정부⁵⁴⁾는 십대 임신을 정부의 개입이 요구되는 심각한
 국내사회문제로 규정하고 1978년 ‘청소년 건강서비스 및 임신예방과 보호
 에 관한 법(Adolescent Health, Services and Pregnancy Prevention and
 Care Act)’을 제정하여 임신중이거나 아동을 양육중인 십대와 그들의 자
 녀를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임신프로그램(Office of Adolescent Pregnancy
 Program)’을 설립한 이래 정부의 개입하에 체계적으로 청소년 임신문제
 에 대처하고 있다(윤혜미, 1999, p. 173).

(5) 청소년가족생활법

1981년에 레이건(Reagan) 행정부는 ‘청소년가족생활법(Adolescent Life
 Act)’를 통과시키게 되는데 이 법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행동을 자제하
 고 출산한 아동의 입양을 권장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하고 있다. 즉, 십
 대 임신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 보다 보수적인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를 수정하여 효과적인 실천방법의 적용과 지침을
 마련하여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이를 따를 때에 한하여 연방정부의 지원이
 가능하게 하였다(조홍식, 1993, p.156).

52) 저소득층 가족들로 하여금 가족해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조홍식, 1993, p. 156).

53) 인디언 아동에 대한 학대예방과 함께 1992년에서 1995년까지 매년 천만불
 씩 인디언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학대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에 관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였다(조홍식, 1993, p. 156).

54) 미국은 청소년 임신에 따른 미혼모 청소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980년에 중
 합보건교육법을 제정하여 유치원부터 성교육을 하고 있다.

시작한 것인데, 이러한 경향은 1994년 클린턴(Clinton) 행정부의 사회보장 개혁의 일환으로 등장한 "직업과 책임성에 관한 법률(Work and Responsibility Act)'로 더 심화되고 있다(윤혜미, 1999, p. 173).

(6) 직업과 책임성에 관한 법률

'직업과 책임성에 관한 법률이 법률(Work and Responsibility Act)'은 AFDC 수급자의 경우 18세까지는 현금부조를 최대 24개월까지로 한정하고 복지수급자인 미혼모에게 아동의 아버지의 양육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아이의 아버지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협조하도록 요구하고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에는 부모나 후견인 등 성인과 함께 살아야 하며 학교에 다녀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AFDC를 수급 받고 있는 중에 아이를 더 출산하는 여성에게는 주정부가 급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함으로써 혼전 성행동의 연기와 심대의 임신을 예방하려는 데에 주된 법제정의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사회사업가들로부터 미혼모들에 대한 복지수급을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 어린 미혼모의 개별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처사로 아동빈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법정책이 그간 AFDC급여가 심대의 출산을 부추긴다는 증명되지 않은 가설에 근거한 것으로 실천시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정책이 본래의 목적인 심대의 혼전 성행동과 임신의 예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처벌적인 규정보다는 교육과 직업의 기회, 안전하고 저렴한 아동보호서비스와 보건서비스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윤혜미, 1999, p. 174).

(7) 청소년 통행금지에 관한 법률

일반 청소년에 대한 법률로는 청소년문제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고 청

소년들을 야간에 일어 날 수 있는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통행금지에 관한 법률’이 있다. 시카고시는 조례로 17세 미만의 청소년은 21세 이상의 동반자 없이는 매일 22시(단, 일요일은 23시 30분)부터 익일 6시까지 외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고, 일리노이주는 18세 이상의 동반자 없이는 매일 23시(단, 토요일은 0시 1분부터 익일 6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있음)로 정하고 있다. 청소년의 부모나 법률상의 보호자가 그 점을 알면서 청소년의 통금 위반을 용인했을 때에는 그 부모나 법률상의 보호자를 즉결 재판에 회부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법규의 위반이 없는 한 통금위반만으로 청소년을 처벌치는 않는다(김홍록·정민영·이정원, 2000, p.60).

3)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사업 및 프로그램

미국의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사업 및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빈곤과 결손가정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부양가족을 가진 가족을 위한 보조 프로그램, 전국학교점심프로그램·학교조식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가출 및 비행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⁵⁵⁾으로 안전하고 약물 없는 학교 프로그램, 기초센터 프로그램, 집 없는 청소년을 위한 과도기 생활프로그램, 국립가출전화 등이 있다. 미혼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틴 프래그넌시 프로젝트가 있다.

55) 미국의 경우 청소년 비행에 관한 프로그램과 가출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가출 청소년에 관한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집을 떠난 일반적인 가출청소년, 집을 팽개친 채 떠돌이 생활을 하는 가출청소년, 마약복용 가출 청소년 등 대체로 3가지 유형의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조홍식, 1993, p. 149).

(1) 부양가족을 가진 가족을 위한 보조 프로그램

‘부양가족을 가진 가족을 위한 보조(AFDC)프로그램’은 사회보장법 Title IV-A에 기반하여 AFDC판정을 받은 가족이나 양부모, 보호시설에 지원되고 있다. 결손가정이나 장애 청소년 등이 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각 주 정부가 지방정책으로 대상자나 지원금액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연방 정책은 원칙적인 규제만 하도록 하고 있다. 대개 연방정부가 주정부보다 높게 지급액의 50%이상을 책임지고 있다(조홍식, 1993, pp. 145-148).

(2) 전국학교점심프로그램 · 학교조식프로그램

1977년 ‘식품구매권(Food Stamp)법’ 제정에 근거해 저소득가정과 청소년 개인에게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구매권 정책과 함께 1946년부터 시작된 청소년 영양사업의 하나인 학교급식을 위한 ‘전국학교점심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이 미국 빈곤청소년을 위한 식품영양사업의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66년부터 ‘학교조식프로그램(School Breakfast Program)’이 시행됨으로써 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기숙시설 등 제한된 규모에서의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들을 위한 여름철 식품 제공사업, 지역사회 아동영양사업, 우유급식, 요보호모 자녀의 영양보존사업 등도 다양하게 청소년의 건강과 영양을 도와주는 미국 청소년 복지정책의 일환이 되고 있다(조홍식, 1993, pp. 147).

(3) 안전하고 약물 없는 학교 프로그램

교육부 초·중등교육실(Offic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의 ‘안전하고 약물 없는 학교 프로그램(Safe and Drug-Free Schools

Program)’의 목적은 2000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약물과 폭력, 총기나 알코올 문제를 추방하고 보다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교내, 혹은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예방하고 알코올, 담배, 약물 등의 불법적인 사용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약물남용교육과 예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약물예방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학부모뿐 아니라 연방, 주정부, 지역공동체의 노력과 자원을 규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약물남용과 예방 서비스의 활용가능성을 확대시켰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최인섭·원혜옥·강은영, 2000, p. 44).

(4) 기초센터 프로그램

보건사회부의 ‘기초센터 프로그램(Basic Center Program)’은 1974년 입법화된 ‘소년사법 및 비행방지법(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에 의해 만들어진 가출청소년 프로그램으로 가출청소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발견,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돕기 위해 연방정부가 만든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가출청소년들을 가족과 재결합하도록 도와주고, 그들의 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서 가족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며 가족과의 재결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청소년이 기거할 수 있는 곳을 찾아주어 제반 생활여건을 안정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기초센터 프로그램의 서비스 수혜 대상은 법원에서 쉼터에 보내지지 않는 12-18세 가출청소년들로서 이들을 위한 단기 거주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최인섭·원혜옥·강은영, 2000, p. 46).

(5) 집 없는 청소년을 위한 과도기 생활프로그램

보건사회부의 ‘집없는 청소년을 위한 과도기 생활프로그램(Transitional Living Program for Homeless Youth: TLP)’은 16세에서 21세까지의 나이 많은 집 없는 청소년들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청소년들이 과도기를 이겨내고 자립적인 생활로 전환하고, 장기간 서비스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인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과도기 생활프로그램은 집 없는 청소년들에게 과도기적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 비영리 단체들에게 기금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최인섭·원혜옥·강은영, 2000, p. 46).

(6) 국립가출전화

국립가출전화(National Runaway Switchboard)는 비밀이 보장되고 24시간 이용가능한 전국적 규모의 무료 긴급직통전화(1-800-621-4000)를 말하며, 자원봉사체제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일리노이주, 시카고 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안전 보호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는 국립가출전화에 연락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립가출전화는 가출 청소년, 집 없는 청소년이나 기타 위기에 처한 청소년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출청소년이나 집 없는 청소년들이 이 전화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이들을 긴급 보호소, 상담센터, 진료소 그리고 법률 구조기관과 같은 지역사회 자원에 의뢰하게 된다(최인섭·원혜옥·강은영, 2000, p. 48).

(7) 틴 프로그래니시 프로젝트

미국의 대표적인 미혼모 관련 프로그램⁵⁶⁾으로 조지아 주의 '틴 프로그래니시 프로젝트(Teen Pregnancy Project)'를 들 수 있다(윤혜미, 1999, p. 174). 미국조지아주에서 실행하고 있는 틴 프로그래니시 프로젝트(Teen Pregnancy Project)는 임신한 십대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임신한 십대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서비스의 구성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프로그램은 크게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우선 미혼부모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있어 신생아의 양육법이나 병든 아이를 간호하는 법, 아동발달과 훈육에 대해 교육하고, 둘째, 조부모 지지그룹을 통해 미혼부모의 부모가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하는데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직해주고, 셋째, 미혼부 프로그램을 통해 미혼부에 대한 케이스워크 서비스, 집단활동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 및 직업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넷째, 훈련 및 고용 프로그램을 통해 미혼부모의 고용을 돕고, 다섯째,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여섯째, 지역사회 교육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 임신을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윤혜미, 1999, p.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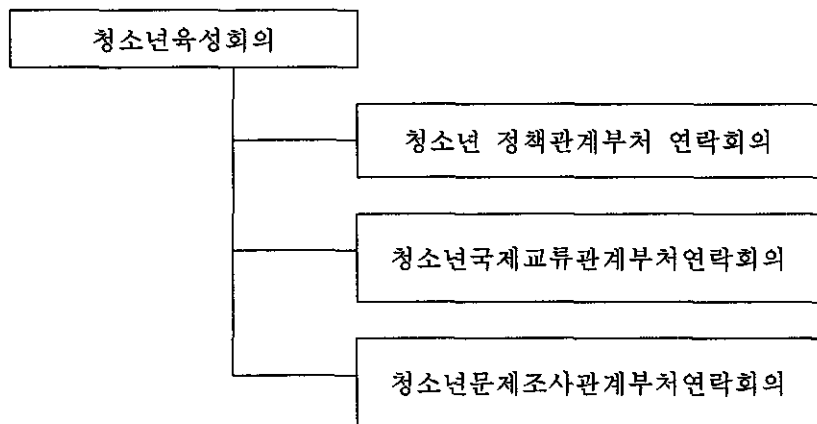
56) 미국은 십대 임신이 우리나라의 10배에 달하는 등 문제의 정도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다방면에서의 연구와 정책적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980년대부터 다양한 성교육이 국가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5년 현재 22개 주에서 성교육이 학교교육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85%이상의 학교에서 성병과 AIDS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성교육도 그 기반에 따라 학교중심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화되어 있고 연령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도 차별성이 있다(윤혜미, 1999, p. 174).

2. 일 본

1) 청소년 관련 행정조직 체계

일본 정부는 청소년 육성을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간주하면서 청소년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행정의 범위가 교육, 복지, 보건, 보호 교정 등의 각 분야에 걸쳐 있어 관련 행정기관도 많다.

따라서 청소년에 관한 사무는 <표 VII-1>과 같이 각 부처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즉, 청소년 교육은 문부과학성, 청소년의 범죄·비행대책은 경찰청, 청소년의 인권 옹호나 비행소년 등의 갱생보호는 법무성, 청소년 복지와 근로청소년은 후생노동성 등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각각의 부처의 책임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청소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각부에서는 [그림 VII-1]과 같이 내각부 사무차관이 주재하는 관계부처의 국장급 회의인 「청소년육성추진회의」 및 과장급의 관계부처 연락회의를 개최하면서 관계부처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그림 VII-1] 청소년정책관계부처의 연락체제

<표 VII-1> 청소년시책관계성청의 사무분담

관계부처	중앙정부 부처의 담당 사무
내 각 부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관한 사항의 기획 및 입안, 종합조정 등에 관한 사무, 남녀공동참회사회 형성의 촉진에 관한 기획 및 입안, 종합 조정에 관한 사무
경 찰 청	소년비행의 방지, 소년복지를 해하는 범죄의 단속에 관한 사무
총 무 성	지방공공단체 등에 관한 사무, 전기통신·방송에 관한 사무
법 무 성	비행소년에 대한 검찰, 교정, 갱생보호, 인권옹호 등에 관한 사무
외 무 성	외국과의 문화협력, 청년의 해외협력활동의 촉진 등에 관한 사무
재 무 성	담배사업에 관한 사무
국 세 청	주류제조판매업의 감독에 관한 사무
문부과학성	학교교육, 사회교육, 가정교육, 스포츠, 유네스코활동 등에 관한 사무, 청소년의 건전 육성 추진에 관한 사무, 과학기술의 이해증진 등에 관한 사무
문 화 청	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무
후생노동성	아동의 사용금지, 심신의 육성 및 발달, 보건향상, 보육, 양호, 학대방지, 노동청소년의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무
농림수산성	농촌청소년에 대한 기술 및 지식의 보급에 관한 사무
경제산업성	문화관련산업 등에 관한 사무
국토교통성	관광레크리에이션지구의 정비 등에 관한 사무, 도시공원·녹지정비 등에 관한 사무
환 경 성	자연공원의 보호·정비·진흥에 관한 사무
최고재판소	소년사건의 조사·심판, 소년의 복지를 해하는 성인의 형사사건의 재판 등에 관한 사무

자료: 문부성, 『2003년청소년백서』 (문부성:동경, 2003), p.32.

(1)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내각부의 역할

① 청소년행정의 종합적인 추진

기본방침 등의 작성, 관계행정기관의 연결회의의 개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예산 책정 등을 한다. 청소년플랜(가칭), 청소년육성추진요강의 작성, 청소년육성 추진회의의 개최, 청소년 백서의 간행한다.

② 정책의 기본사항의 종합적인 조사

특별연구조사로 세계청소년의식조사, 정보화사회와 청소년에 관한 조사, 청소년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기본조사 등을 행하고, 특정과제연구조사로 2001년도에는 청소년의 사회참가활동에 관한 조사와 2002년도에는 청소년상담기관의 연계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③ 지방 공공단체 및 민간의 단체 등과의 연계와 국민계몽활동으로 도도부현·지정도시의 청소년행정주관과의 연계, 소년 보도 센터 활동의 추진, 청소년육성 국민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④ 청소년의 국제교류로 각 국에 파견·초대사업, 배를 이용한 다국간 교류사업(세계청년의 배, 동남아시아청년의 배) 등을 행하고 있다.

내각부에서는 청소년 육성의 기본적인 방향 등에 관해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2002년에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유식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2003년에 「청소년 육성에 관한 유식자 간담회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청소년에 관련되는 장소의 상황(가정, 학교, 직장, 지역, 정보·소비의 장소), 각 연령기의 과제(수유아기, 아동기, 사춘기, 청년기), 기본적 대응의 방향 등에 관한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2) 문부과학성의 역할

문부과학성에서는 청소년행정 가운데 주로 교육에 관한 정책을 행하고 있다. 학교교육(초등중등교육국, 고등교육국), 사회교육(평생학습정책국, 스포츠·청소년국), 문화(문화청)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하여 다양한 국과(局課)가 관계하고 있다.

① 평생학습정책국

평생학습정책국에서는 교육개혁의 추진을 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의 기획·입안, 사회교육의 진흥, 가정교육의 지원, 남녀공동참획 등에 관한 생애를 통한 다양한 학습기회의 정비, 방송대학과 전수학교·각종 학교교육 진흥 등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또한 교육개혁과 중앙교육심의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정책과, 학교주5일제에 대응한 부모와 자식 플랜의 추진을 담당하는 평생학습추진과, 사회봉사활동의 추진, 성인교육, PTA활동, 인권교육의 진흥, 사회교육지도자의 양성·연수, 공민관·도서관·박물관 등의 사회교육시설, 사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사회교육과, 여성교육의 진흥, 가정교육의 지원시책 등을 담당하는 남녀공동참획학습과 등 6개 과가 있다.

② 초·중등교육국

초·중등교육국에서는 초중고등학교, 맹농양호학교 등의 교육과정의 기준을 설정, 학생지도와 진로지도의 충실, 지방교육제도, 학급편성, 교직원수, 공립학교 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학교의 체험활동의 추진, 학생지도 등을 담당하는 아동지도과, 교육과정과 등 10개와 하나의 참서관실이 있다.

③ 스포츠 청소년국

주로 학교체육·스포츠의 충실, 생애스포츠 사회의 실현 등 각종 스포츠 진흥 시책의 추진, 건강교육의 충실, 청소년교육을 비롯한 청소년

건전육성 시책의 추진 등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여기에는 종합형 지역 스포츠클럽의 전국전개 등의 지역에 스포츠 활동의 추진 등을 담당하는 평생스포츠과, 성교육, 약물남용교육 등의 학교보건, 학교안전, 학교 급식 등을 담당하는 학교건강교육과, 청소년의 학교외활동의 추진, 청년의 집, 소년·자연의 집 등의 청소년교육시설, 청소년 단체 활동의 추진외, 아동의 독서활동의 추진,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환경 대책 등을 담당하는 청소년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청소년 건전육성 담당 참서관 등 5개의 과와 두 개의 참서관실을 둔다.

(3) 청소년행정 조직의 변천

청소년 행정의 담당조직은 1949년 청소년문제대책협의회설치로 시작하여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2001년 1월부터 내각부의 정책통괄관(종합기획조정담당)이 청소년행정의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1949년6월에 처음으로 발족한 청소년문제대책협의회(사무담당:내각관방)에서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정책기획의 검토, 청소년문제에 관한 종합적 정책 등이 수립된다. 1949년에 중의원에서 「청소년범죄방지에 관한 결의」, 참의원에서 「청소년 불량화 방지에 관한 결의」가 실시되어 내각관방에 「청소년문제협의회」가 설치된다. 1950년4월에 총리부 설치법의 일부 개정으로 인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청소년문제대책협의회」가 총리부의 부속기관인 「중앙청소년문제협의회」로 바뀌게 된다. 이 협의회의 주요 임무는 청소년 지도, 육성, 보호 및 교정에 관한 종합적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심의, 상기의 종합적 시책의 적절한 조정 등이다. 이 때 1949년부터 1950년에 걸쳐 모든 도도부현에 청소년문제대책협의회가 설치된다. 1953년에 중앙청소년문제협의회와 함께 지방청소년문제협의회에도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기 위해 청소년 문제협의회

설치법이 제정된다.

1966년4월에 총리부청소년국 청소년문제심의회가 설치된다. 청소년문제협의회 및 그 사무국을 개편하여 총리부에 「청소년문제심의회」 및 「청소년국」을 설치한다. 또한 청소년육성국민운동을 개시하였다. 청소년국은 청소년의 지도, 육성, 보호 및 교정에 관한 기본적·종합적 시책의 수립, 청소년의 지도, 육성, 보호 및 교정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 및 사무의 종합적인 조정을 행한다. 청소년심의회는 청소년의 지도, 육성, 보호 및 교정에 관한 기본적·종합적 시책에 관한 사항의 조사심의이다.

1968년6월에는 「청소년국」을 총리부기관인 「청소년대책본부」로 개편한다. 대책본부의 사무는 이전의 청소년국의 사무가 그대로 이관되어 실시되었고, 청소년 문제협의회도 이전의 청소년문제심의회 사무를 그대로 이관하여 추진하였다. 도시화로 인한 농촌청소년의 대량 도시이입 등 청소년문제 해결이라는 국민적 합의와 접근을 필요로 한 것이다.

1982년에 각료회의 결정 「청소년의 비행방지 대책에 관하여」를 바탕으로 총리부에 비행방지대책 추진연결회의를 설치한다. 1984년7월에는 총무청의 설치로 「청소년문제심의회」 및 「청소년대책본부」를 총리부에서 총무청으로 이관시킨다. 또한 관계부처의 국장 등으로 구성된 「비행방지대책 추진연결회의」의 개최를 관계 부처에 신청한다. 1989년에는 「비행방지대책 추진연결회의」를 대신하여 「청소년대책추진회의」의 개최를 관계부처에서 신청하게 된다.

2001년1월에는 내각부정책총괄관(종합기획조정담당)이 신설된다. 중앙부처의 개혁과 함께 「청소년문제심의회」 및 「청소년대책본부」를 폐지시킨다. 정책총괄관의 임무는 행정각부의 시책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의 기획 및 입안, 종합조정에 관한 사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사무의 연결 조정 및 그것에 필요한 사무 실시의 추진에 관한 것 등이다.

(4) 청소년 행정조직의 특징

청소년 행정 대상의 다양성과 행정기관의 분립은 각각 구체적이기는 하지만, 청소년 문제의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관계기관의 연결조정을 위한 종합적 기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연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① 대상의 다양성

청소년행정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은 각각의 행정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즉 의무교육이나 특수교육의 대상으로서의 청소년, 사회교육의 대상으로서의 청소년, 건전 육성 그리고 체육·학교보건에서의 청소년, 유아, 고아, 우랑아, 정박아, 불량아동 등 이른바 문제아동으로서의 청소년, 농가후계자로서의 청소년, 연소노동자로서의 청소년, 소년의 보호, 범죄의 예방 및 범죄청소년의 보호교정의 면에서 비행청소년 등 각각의 정책과 행정목적에 따라 행정대상이 다르다.

그리고, 청소년은 그 연령층에 따라서도 행정대상의 다양성을 가진다. 수유기아동(0-1세)은 모자보호법, 1-3세의 유아는 영유아복지법, 15세 미만의 아동은 노동기준법, 학령아동 중 6-15세까지의 아동에서 중학생까지는 학교교육법, 20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법, 18세 미만의 연소자는 연소노동면에서 노동기준법,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법, 미성년자 음주금지법 및 미성년자 각연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② 실시기관의 분립성

청소년 행정의 분립성 즉, 청소년에 관한 행정은 각각의 행정에 따라 주관하는 부처가 달라 각각의 행정을 실시하는 기관이 필연적으로 분립되어 있다.

㉦ 후생노동성에 관한 행정

민생부 및 위생부, 복지사무소, 보건소, 아동상담소, 노동 주관부, 공공직업 안정소, 공공직업훈련소, 도도부현의 노동기준국의 노동기준감독서, 도도부현 부인소년실이 있다.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에는 복지사무소, 보건소가 있다.

㉧ 문부과학성에 관한 행정으로 정부, 도도부현에는 교육주관부서,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있고, 시정촌에 교육위원회의 부서가 존재한다.

㉨ 경찰행정에는 경찰청과 도도부현公安위원회와 도도부현 경찰본부, 경찰서 등의 실시기관 등으로 나뉘어져 청소년 행정이 실시되고 있다.

2) 청소년문제 예방 및 대책 관련법

(1) 소년사법의 형성

소년사법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그것에 따라 청소년의 권리도 소년사법의 발전단계에 따라 의식되고 주장되었다. 소년 범죄자에 대한 대응과 성인에 대한 대응의 차이는 ① 실정형법의 형사책임연령제도의 성립 ② 감옥에서 성인과 소년의 분리 ③ 소년에 대한 특별한 처분과 치우시설의 확립 ④ 소년심판제도의 성립 ⑤ 소년에 대한 특별한 경찰활동의 성립 등이다. 이상의 내용을 좀더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형사미성년의 제도에 의해 그 연령에 달하지 않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형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14세 미만의 어린이에 한 해 형사미성년자로서 취급하고 있다.

형벌집행 단계에서 소년과 성인과 분리한다. 성인의 수형자로부터 소년이 범죄의 방법이나 범죄자로서의 생활양식을 배우는 등 감옥 안에서 복종이 강제되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감옥 안에서의 성인과 소

년을 분리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소년형무소는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감옥계보에 속하는 것이다.

소년은 인격적으로 가역성이 높고, 교육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금형 대신에 보다 유연하게 교육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제도의 설치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일본에서 보호처분으로서는 소년원 송치, 교호원·양호시설송치, 보호관찰 등이 있다. 보호처분은 비행소년에 대해 교육적, 복지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학교교육제도나 아동복지제도의 혜택을 입게되어, 그 제도들과의 효과적인 연계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소년은 성인과 달리 형사수속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곤란이 있고, 형사재판에서의 재판관의 신문이나 검찰관의 공격에 대해 적절한 방어가 곤란하다. 따라서 형사재판수속으로부터 독립한 소년심판수속의 확립이 도모되었다. 일본에서의 소년심판제도는 소년재판소와 가정재판소를 설치하였다.

소년사건의 발견·수사는 형사수속의 수사와 같다. 소년범죄의 수사에 관해 소년법은 일정의 특별법규를 설치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고, 성인과 같이 취급된다.

아래 <표 VII-2>와 같이 아동 및 청소년에 관련된 법률을 목적별로 구분하면 생활보호, 의료보장, 교육보장, 고용보장, 환경보장, 기타로 나눌 수 있다. 생활보호에 관련된 법은 생활보호법을 비롯하여 10개, 의료보장에 관한 법은 아동복지법을 비롯하여 8개, 교육보장은 교육기본법을 비롯하여 7개, 고용보장은 노동기준법을 비롯하여 7개, 기타는 소득세법을 비롯하여 3개이다.

<표 Ⅶ-2> 아동에 관한 주요한 법률

생활보호 (경제보호)	각종 공적 연금법(유족·보장연금법)
	심신장애자 부양보험 제도(사회복지 사업 진흥회 운영)
	사회복지사업법(1951, 법45호)
	생활보호법(1950, 법144호)
	모자복지법(1964, 법129호)
	국민연금법 무처출 유족연금법(1959, 법141호)
	미망인복지 자금대여(1969, 省發102호)
	특별아동 부양수당법(1964, 법134호)
	아동부양 수당법(1961, 법238호)
의료보장	아동수당법(1971, 법73호)
	각종의료보험법·생활보호법·공해건강피해보상법
	아동복지법(1947, 법164호)
	학교보건법(1958, 법56호)
	모자보건법(1965, 법141호)
	우생보호법(1948, 법156호)
	각종예방법(결핵, 전염병, 한센병 등)
	신체장애자복지법(1949, 법283호)
교육보장	정신박약자복지법(1960, 법37호)
	교육기본법(1947, 법25호)
	학교교육법(1947, 법26호)
	학교급식법(1954, 법160호)
	맹, 농 양호학교에의 취학장려에 관한 법(1954, 법144호)
	소년법(1948, 법168호)
	소년원법(1948, 법169호)
노동(고용) 보장	소년심판규칙(1948) 이외 아동복지법
	노동기준법(1947, 법49호)
	여자연소노동자규칙(1947, 省令8호)
	노동안전위생법(1972, 법57호)
	직업훈련법(1969, 법64호)
	신체장애자고용촉진법(1960, 법123호)
	노동청소년복지법(1970, 법98호)
	노동부인복지법(1972, 법113호)
패적생활관련 환경보장	육아휴업법(1975, 법62호)
	각종 공해관계법
	도시정비관계법
	주택 그 외

그 외	소득세법(1965, 법33호)
	물품세법(1962, 법48호)
	법인세법(1965, 법34호)

자료: 佐藤進編、児童問題講座 3『児童の權利』(東京: ミネルヴァ서방, 1976)

(2) 아동학대방지법

일본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에 의해 아동이 목숨을 잃거나 상처를 입는 사건이 다발하고 아동상담소에서의 상담처리 건수도 급증하는 등, 아동에 대한 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조기대응, 피학대아동의 적절한 보호 등이 긴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중의원의 ‘청소년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는 1999년 제 145회 국회이래 아동학대문제에 관하여 활발한 협의가 거듭되었다. 그리고 동년 제 146회 국회의 본위원회에서 ‘아동학대의방지등에 관한건’이 결의되었고, 제 147회 국회의 2000년 5월 17일 ‘아동학대의방지등에관한법률’이 성립하여 5월 24일 공포되었다. 2000년 법률시행후 관계부처는 아동학대의 대응을 가일층 촉진시키고 있다. 또한 법무성은 아동학대가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신체적·성적 학대 등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더욱 주지시키는 한편, 아동학대방지법 제 5조의 취지에 따라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조기해결을 위해 ‘아동인권위원회’에 의한 인권상담체제를 더욱 추진하고 있다(윤철경·정희옥·박병식·조아미·Anna Hui·Ju Qing, 2001, p. 60-61).

(3)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정의

① 형법범소년

형법범 소년은 형법, 도범 등의 방지처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결투죄에 관한 법, 폭발물 처벌규정, 항공기의 강제탈취 등에 관한 법률, 화염병의 사용 등에 처벌에 관한 법률, 항공의 위

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인질에 의한 강요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유통식품에 독물 혼입 등의 방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린(독극물) 등의 인신 피해 방지에 관한 법률,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칙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알선행위에 의한 이익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죄로서(교통사고에 의한 업무상과실 치사상, 위험 운전치사상은 제외한다) 경찰에 검거된 14세이상 20세 미만을 말한다.

② 특별범법소년

위의 형법범소년 이외의 죄(교통사고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위험 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자동차의 보관장소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도로교통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죄는 제외한다)로서 경찰에 검거된 14세 이상 20세 미만을 말한다.

③ 축법소년

형법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4세 미만을 말한다.

④ 우범소년

성격, 행장 등으로 판단해서 장래 죄를 범하고 또 형법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20세 미만을 말한다.

(4) 소년보호사건의 수속흐름

불량행위 소년의 보호사건의 수속과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⁵⁷⁾

불량행위소년 - 경찰관(검찰청경유), 시민, 아동상담소, 조사관에 의한 비행소년(범죄소년, 축법소년 등)의 발견 → 가정재판소에서의 조사 → 관호조치 소년감별소, 역송(검찰청), 심판불개시, 심판개시 → 심판(시험관찰) → 불처분, 도도부현 지사·아동상담소장, 교호원·양호시설, 보

57) 渥美雅子, 『子どもたちの法律問題』(東京:岩波書店, 1983). p.106.

호관찰, 소년원(초등, 중등, 특별, 의료)

가정재판소에서의 조사로 검찰청에 역송된 경우→ 기소→ 간이재판소 (약식재판) → 벌금 → 지방재판소 → 집행유예, 실형 → 소년형무소로 이어진다.

① 발견

비행소년은 여러 가지 수속을 거쳐 여러 종류의 처분을 받는 수속을 받는다. 우선 가장 많은 사례는, 경찰관이 비행을 발견해서 검찰청을 경유해 가정재판소에 보내는 것이다. 그 경우 교통위반 등과 같은 처벌내용이 벌금만의 경우의 사건은 경찰서에서 직접 가정재판소로 보낸다. 그 외의 사건은 검찰청을 경유해서 검찰관이 조사를 한 뒤, 사건을 가정재판소에 보내게 된다. 또 일반시민이나 아동상담소, 조사관 등이 비행을 발견하면 비행사건을 가정재판소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

② 가정재판소의 조사

가정재판소에서 취급하는 사건은 가정재판소의 조사관이 조사를 개시한다. 조사의 단계에서 필요하다면 재판관이 관호조치결정을 발휘할 수 있다. 관호조치결정이란, 소년을 소년감별소에 수용해 전문 기관에서 소년의 소질, 지능, 성격, 장애의 유무 등을 밝히기 위해 심리테스트를 이용해 감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소년의 처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용되는 기간은 보통 2주간으로 길어도 4주간으로 되어있다(소년법제17조).

③ 심판

만약, 단순한 경우라면 조사관이 면접조사를 끝낸 상태에서 「심판 불개시」가 결정된다. 또는 심판을 개시하더라도 사건이 가볍고 소년도 반성을 하고 있으며 소년의 생활환경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다시 비행을 저지를 우려가 없어 보인다고 재판관이 판단하면 「불처분」으로

결정한다. 심판은 개시했다고 하더라도 처분은 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것이 전체사건의 약35% 정도를 차지한다. 이 「심판불 개시」와 「불처분」을 합하면 전체사건의 약65%에 달한다. 이것은 가정재판소에 송치된 비행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3분의2가 특히 처분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나머지의 3분의1만이 처분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되어진다.

④ 처 분

나머지 3분의1의 처분은 다음과 같다. 조사단계에서 ‘이 사건은 가정재판소에서 처분할 사건이 아니다’ 라고 생각되는 사건은 다시 한번 검찰청으로 보낸다. 이것을 「역송」이라고 한다. 역송이 되는 경우는 소년이 16세 이상으로 ‘사형,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의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의 결과, 그 죄질 및 정상참작 위에 형사처분에 상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년법제20조)이다. 즉 사안이 중대해서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성인과 비슷한 재판을 거쳐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경우이다. 이렇게 역송되는 사건이 8-9%정도이다. 하지만 아주 중대한 사건이 전부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는 교통사고나 교통위반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종류의 사건이 검찰청에 역송되면, 검찰관은 간이재판소에서 약식재판을 청구하고, 간이 재판소에서는 간단한 조사 위에 벌금형을 언도하고 종료시키는 것이다. 역송사건 중에서는 이러한 벌금형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말 중대한 사건으로 지방재판소에서 정식재판을 받는 소년은 아주 극소수이고, 그 중 80%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20%를 실형에 언도한다. 실형이 언도되면 소년은 소년형무소에 수용되고, 이렇게 소년형무소에 수용되는 소년의 수는 연간 약140명 정도이다.

⑤ 보호처분

가정재판소에서 보호처분에 상당하는 사건은 가정재판소의 조사관이

상당히 세밀한 조사를 한다. 소년과의 면접이나 테스트를 통해 때로는 가정방문, 학교방문, 직장방문 등을 시행한다. 그리고 소년이나 소년의 근친한 사람들의 성격, 행동, 교우관계 등을 체크하고 가정환경, 직장환경, 학교생활에 있어서의 양육환경, 보호능력의 유무 등을 중심으로 해서 비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조사해,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환경조정을 시행한다. 그리고 심판이 행해지고 있을 때에는 재판관에게 조사의 보고를 함과 동시에 조사관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심판에 있어서 조사관의 의견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심판이 조사관의 의견대로 결정된다고 보아도 무관할 것이다.

이러한 순서를 거쳐 언도되는 심판의 내용에는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교호원 또는 양호시설에의 송치로 세 가지가 있다(소년법제24조). 이 세 가지 중에 보호관찰이 압도적으로 많아 90%이상을 차지한다. 보호관찰이란 소년을 보호 관찰소에서 감독하는 보호사의 지도, 감독, 원조에 맡기는 것이다.

이상이 크게 구분한 비행소년에 관한 가정재판소에서의 수속의 흐름이다.

3) 청소년문제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사업 및 프로그램

(1) 청소년행정의 종합적인 시책의 추진

내각부에서는 「청소년육성시책대강」의 책정으로 청소년행정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홍보계몽 활동이나 청소년육성국민운동 등의 지원 등 국민적인 참여를 꾀하고 있다.⁵⁸⁾

58) 文部科學省, 『2003年版青少年白書』(동경:문부과학성, 2003). pp. 15-31.

① 종합적인 시책의 추진

㉠ ‘정부의 청소년정책의 기본이 되는 계획(가칭 청소년플랜)을 책정해야 한다’라는 1999년7월의 청소년문제심의회답신의 제안으로, 2002년4월부터 「청소년육성에 관한 유식자 간담회」가 개최되어 2003년4월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동 간담회의 보고서의 내용을 전제로 청소년시책대강(청소년플랜)의 책정을 향해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 관계성청과의 밀접한 연계로 청소년시책을 종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성청의 국장급 회의인 「청소년육성추진회의」및 그 밑의 과장급 각종 연결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책의 정합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청소년육성추진회의에서는 정부의 청소년행정의 기본적 방침 등을 토대로 한 「청소년육성추진요강」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2002년10월에는 「만남사이트」에 관련된 아동매춘 등의 피해를 입는 연소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만남사이트」에 관련되는 아동매춘 등의 피해에서 연소자를 지키기 위해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 2003년6월에는 청소년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해 정부일체가 되어 보다 강력한 청소년 시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해, 전 각료로 구성되는 청소년 육성 추진본부를 각의 결정 의해 설치하려고 하고 있다.

② 청소년문제에 관한 연구조사

청소년의 실태, 의식, 문제점 등을 구명하기 위해, 년도별로 테마를 정하여 대형 전국조사나 국제비교조사인 「특별연구조사」, 청소년의 비행방지를 위해 「특정과제연구조사」등의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③ 청소년육성 국민운동

1965년11월에 정부가 국민의 총력을 결집한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운동을 제창함으로써 시작된 청소년육성국민운동 (어른이 변화면 아이

들도 변하는 운동 등)의 지원과 동시에 매년7월을 「청소년 비행문제 단속의 전국 강조의 달」, 11월을 「전국 청소년 건전 육성 강조의 달」로 정해, 각 행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육성 및 비행방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 육성 국민운동을 한층 충실히 하려고 도모하고 있다.

(2)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①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의 추진

㉠ 2002년부터의 완전학교주5일제의 실시를 계기로 「새로운 어린이 플랜」을 책정해 관계부처,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인재를 활용하는 어린이의 주말 활동 지원이나 자원봉사활동 등의 봉사활동·체험활동의 종합적인 추진을 꾀하고 있다.

㉡ 가정·지역의 어린이들과의 만남이나 대화의 기회를 충실히 가정과 동시에 그 중요성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와 이야기하자」 전국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서 「어린이 전학의 날」을 실시해 어린이들이 지역사회를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2002년8월에는 「어린이들의 독서활동추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으로 「어린이의 독서활동의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이 각의로 결정되었다. 그것으로 인해 어린이의 독서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시책을 한층 충실히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학교 내·외를 통해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봉사 체험활동, 자연체험활동 그 외의 체험활동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계획들을 진행중에 있다.

㉤ 환경기본계획(2000년12월 각의 결정)을 바탕으로 학교교육, 사회교육 그 외에 다양한 장소에서 환경교육·환경학습 등의 추진, 환경보전

의 구체적인 활동을 촉진, 환경에 관한 정보제공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② 단체·그룹활동의 촉진

PTA, 모친클럽 등의 아동의 육성단체나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단체가 실시하는 자연체험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체험활동, 연구협의회가 실시하는 사업 등에 대해 원조를 하는 한편, 청소년단체의 지도자를 대상으로 연수들을 실시하여 단체·그룹활동의 촉진을 꾀하고 있다.

③ 문화활동의 장려

어린이들에게 문화활동에 참가하거나, 우수한 예술문화·역사적인 문화의 소산을 접하는 것으로 풍부한 인간성·다양한 개성을 심어주기 위해 학교, 지역사회, 문화시설 등의 상호연결을 밀접하게 하여 학교의 내외에 있어서 문화활동·감상을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④ 체육·스포츠의 보급과 진흥

1964년, 정부에 의해 광범위하게 실시된 국민운동으로서 체력단련국민운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매년10월을 「체력단련강조의 달」로 정해, 국민의 건강·체력단련을 장려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체력·운동능력이 저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2002년9월의 중앙교육심의회답신 「어린이의 체력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방책에 대하여」를 바탕으로 어린이들이 보다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적절한 생활습관, 스포츠 습관을 익히기 위한 「체력향상 캠페인 등의 사업」과 「스포츠·건강수첩의 작성, 배부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체육·보건체육이나 운동부활동등을 통해서 학교의 체육·스포츠 활동

을 충실하게 함과 동시에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모두가 생애에 걸쳐 언제든 어디서든지 스포츠에 친숙해 질 수 있도록 「평생 스포츠 기금」의 실현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

⑤ 건전 육성 시설의 정비, 청소년지도자의 육성과 확보

청소년의 학습이나 활동의 장소가 되는 사회교육시설, 스포츠시설, 노동청소년복지시설, 아동후생시설, 도시공원, 자연공원, 여행·관광시설 등의 정비나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을 진행하고, 사회교육지도자, 스포츠지도자, 근로청소년지도자, 아동 건전 육성 지도자, 농림수산업관계지도자, 청소년육성국민운동추진지도자·청소년육성 국민운동 추진원 등의 청소년지도자 육성과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3) 가정에 관한 시책

① 가정교육의 진흥

2002년7월의 「향후의 가정교육지원의 충실에 대한 간담회」보고서를 바탕으로 육아강좌 등 가정교육에 관한 학습기회의 확충, 「육아 서포터」·「가정교육조언자」의 배치를 확대, 상담체제의 충실, 「가정교육수첩」·「가정교육노트」등의 작성·배부 등을 통해 가정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② 가정아동건전육성사업

아동상담소를 비롯해, 가정아동상담원, 보건소, 아동가정지원센터, 보육소등에 있어서 가정이나 아동에 대한 상담·지원활동을 행하고 있다.

③ 사회적 원조를 필요로 하는 아동, 가정의 복지시책

양호하지 못한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거나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2002년도에 입양제도의 개정을 실행하는 등 유아원, 아동양호시설,

보육소등의 정비·충실을 꾀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모든 아동의 건전한 심신의 성장,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발생예방에서 부터 조기 발견, 조기대응, 보호·지원·애프터케어까지 끊이지 않는 종합적인 지원을 노력하고 있다. 모자가정의 복지대책을 위한 시설, 모자보건·유아보건을 위한 시설, 장애아의 복지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학교교육에 관한 시책

① 완전학교주5일제의 실시

학교 주5일제는 1992년9월부터 월1회, 1995년4월부터 월2회로 단계적인 실시를 진행해 왔지만, 학습지도요령의 개정 등의 제도개정을 실시한 후에 2002년4월부터는 완전 학교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② 유아교육의 충실

2001년3월, 이후의 유아교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실시계획인 「유아교육진흥프로그램」을 책정하여, 2001년부터 2005년도를 계획실시기간으로 정하여 유치원의 교육활동, 교육환경의 충실, 유치원에 있어서의 육아지원, 초등학교나 보육소와의 연계 등의 시책을 전개 중에 있다.

③ 의무교육의 충실

2002년 4월부터 신학습지도요령을 실시하면서 「마음의 교육」의 충실과 「확실한 학력」의 향상이라는 두 가지의 큰 기둥으로 정책을 진행 중에 있다. 마음의 교육의 충실은 어린이들이 익히는 도덕의 내용을 알기 쉽게 표시한 「마음의 노트」를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부함과 동시에 지역의 인재 등을 「마음의 선생님」으로서 학교에 파견하는 사업 등

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각 학교에 있어서 「확실한 학력」의 향상을 위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지도 중점을 요약한 「배움의 제안」을 2002년 1월에 공포했다. 2003년도부터는 개인지도의 충실, 학력의 질의 향상, 개성이나 능력의 신장, 영어실력·국어실력의 향상을 기본으로 하는 「학력향상액션플랜」을 실시하고 있다.

「e-Japan중점계획」 등을 기본으로 2005년도를 목표로 모든 교실 수업에서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용 컴퓨터정비, 인터넷접속, 교원연수의 충실, 교육용 콘텐츠 개발 등의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에서 과학교육은 신학습지도요령에서도 개선을 꾀하고, 과학기술, 과학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해 정책을 종합적·일체적으로 추진하는 「과학기술·과학 대 선호 플랜」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의 문제행동 등에 대응하기 위해 스쿨카운슬러의 배치를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부등교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협력자회의」를 발족시켜 2003년3월에 부등교에 대응하는 자세에 대해 토의하는 한편, 2003년도부터는 부등교의 조기대응과 가정에 있는 아동에 대한 학교복귀지원을 위해 지역전체의 네트워크를 정비하기 위한 신규사업 「스쿨링서포트네트워크정비사업(SSN)」을 실시하고 있다. 게다가 2001년7월에는 출석정지제도의 개정을 실시해 요건·수속의 명확화, 출석정지기간 중의 아동의 학습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교육법을 개정했다. 문제를 일으키는 아동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한편, 「서포터팀 등 지역지원시스템 만들기 추진사업」을 실시하는 등 시책의 충실에 노력하고 있다.

아동·학생의 짝연, 음주, 약물남용의 문제나 성에 관한 지도, 학교치과보건지도 등에 대해서는 교사용 참고자료를 작성 배부하여 교원에 대한 연수회 등을 개최하는 등 지도의 충실을 꾀하고 있다.

④ 고등학교 교육의 개선·충실과 중고일반교육의 추진

고등학교교육의 개선·충실을 위해 종합학과나 단위제 고등학교 등 새로운 타입의 고등학교를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특색 있는 학교, 학과, 코스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개설 등에 의해 학생의 선택을 중심으로 하는 커리큘럼 작성을 진행하고 있다.

1999년4월부터 중·고 일관교육의 도입이 가능하게 되어, 1998년도부터 각 도도부현 등에 대해 연구사업의 위탁, 「중고일관교육추진포럼」을 개최하고, 2001년부터는 기존 중고일관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중고일관교육개발지정교사사업을 각 도도부현등에 위탁하는 등 중고일관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등학생이 학습내용이나 장래의 진로선택 등에 관련된 취업체험을 실시함에 따라 높은 교육효과가 기대되므로 1999년도부터 교육계·산업계의 관계자들이 모여 전국포럼을 개최하는 등 인턴십의 적극적인 추진을 실시하고 있다.

⑤ 장애가 있는 아동 한사람 한사람의 필요에 대응한 교육

장애의 종류·정도에 따라 특별한 교육과정, 소인수의 학급편성, 특별한 배려를 바탕으로 작성된 교과서, 전문적인 지식, 경험이 있는 교직원, 장애를 배려하는 시설, 설비 등의 지도가 행해지고 있다. 근년 아동의 장애가 무거워지고 또 중복화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학습장애, 주의결함·다동성 장애 등의 아동의 교육적 대응이 요구되어지는 등 장애를 가진 아동의 교육을 둘러싼 최근의 동향을 전제로, 2003년3월부터 실시된 「특별지원교육의 방향에 관한 조사연구협력자회의」의 최종보고의 실현을 향해 시책·제도 등의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⑥ 고등교육의 충실과 개혁

진학률의 향상, 학술연구의 고도화, 국제화·정보화의 진전, 18세 인구의 감소, 사회전체의 학습요구가 높아지는 등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

하고 있어서, 중앙교육심의회 대학분과회에서 심의 등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의 다양화·제도의 탄력화 등의 고등교육개혁의 추진을 피하고 있다.

⑦ 전수학교교육의 진흥

사업구조의 변화와 급속한 기술개혁의 진전과 함께 전수학교가 가지는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수학교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2003년도부터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의 양성을 기획하기 위해 e-러닝의 활용, 학교간의 원격교육 등 긴급히 대응해야하는 과제에 대해 새로운 교육방법 등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전수학교 선진적 교육연구개발사업」을 새롭게 실시한다.

(5) 직장에 관한 시책

① 신규학교졸업자의 고용에 관한 시책

신규학교졸업자가 그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선택을 행하고 바른 직업인,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안정기관은 학교 등의 교육기관 및 그 외의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연계 하에 직업지도, 직업소개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니어 인턴쉽을 실시하고, 2002년도는 신규중학교, 고등학교졸업자의 힘든 고용상황을 고려해 미내정자에 대한 취직지원을 실시하는 잡서포터(Job Supporter)를 배치해, 학교와 연계하여 구인개척이나 멘토맨의 취직지원강화를 꾀하고 있다.

학생 등이 재학 중에 스스로의 전공, 장래의 캐리어에 관련된 취업체험, 이른바 인턴쉽에 대해서는 2001년12월부터 인턴쉽실시기업개척사업을 경제단체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다. 대학은 졸업예정자의 취업활동에 대해서는 대학 측이 「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전문학교 졸업 예정자에 관한 취업에 대해」를, 기업 측은 「신규학졸업자의 채용, 선고에 관한

기업의 윤리현장」을 각각 정해, 쌍방이 각 대학·기업을 충분히 알고 존중하는 가운데 취직·채용활동이 행해지고 있다.

② 노동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시책

노동청소년의 복지대책은 근로청소년복지법, 근로청소년복지대책 기본방침 등에 의해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③ 청소년 노동자의 직업능력의 개발에 관한 시책

청소년 노동자의 고용을 둘러싸고 높은 실업률, 높은 수준의 미취직 졸업자수, 조기 이직의 증가, 후리타(직업이 없이 생활하는 젊은이)의 증가 등의 문제로 청소년노동자자체의 지식사회에의 부적응, 그리고 산업전체가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없어 결국은 고실업화 현상을 일으킨다는 우려로 인해, 캐리어형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주 등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공공직업훈련의 추진, 직업능력평가제도의 정비를 포함해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④ 농·산·어촌 청소년의 육성에 관한 시책

농·산·어촌 청소년의 육성을 위해서는 도도부현 등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비롯한 각종사업에의 조성 등을 실시하고 있다.

(6) 사회환경의 정비에 관한 정책

① 유해환경의 정화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업계에 의한 자주규제, 주민의 환경정화의 지역활동, 풍속법「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청소년의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한 규

제 등의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관계업계에 대해서는 청소년육성추진 회의나 관계부처 등이 자주규제의 요청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매춘, 아동 포르노법 위반이나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복지범은, 소년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건전한 육성을 크게 저해함으로써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피해소년의 발견보호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만남사이트」를 이용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을 함과 동시에 범죄피해방지를 위한 홍보계몽활동을 비롯해, 프로바이더 및 사이트관리자에 대해 아동의 이용방지를 위한 표시를 행할 것을 적극요청하고 있다.

② 청소년의 인권보호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정비와 청소년 스스로 바른 인권존중사상을 가져, 심신이 함께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육성될 수 있도록 홍보계몽 활동이나 인권침범사건의 조사, 처우 등의 제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③ 청소년의 사고방지대책 등

교통사고, 영유아 사고, 유아·아동 등의 범죄피해, 수난·산악사고 등 청소년의 사고방지대책이나 환경보전대책에 노력하고 있다.

(7) 소년의 비행방지와 비행소년의 대응

① 소년비행의 방지활동

소년의 비행방지를 위해, 「청소년의 비행문제 단속 전국 강조의 달」 등을 통해, 청소년의 규범의식의 양성이나 사회환경의 정화를 도모하는 것을 비롯해 각 시책 및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소

년보도센터, 소년서포트센터, 소년보도원협의회, 어머니 회 등 지역에 있어서의 비행방지조직이 각각의 입장과 특성을 살리면서 가두보도, 소년상담, 유해환경의 정화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② 비행소년의 처우

비행소년에 대해서는 그 건전한 육성을 위해, 경찰, 검찰청, 가정재판소, 소년가별소, 소년원, 소년형무소, 지방更生보호위원회, 보호관찰소 등의 많은 기관이 각각의 단계에 맞춰 처리·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③ 청소년의 각성제 등의 약물남용대책

청소년에 의한 약물남용의 근절을 위해, 약물남용방지교실의 실시, 약물남용방지교육의 충실, 홍보계발활동의 철저, 단속의 강화 등 관련시책의 충실에 힘쓰고 있다.

(8) 국제교류에 관한 시책

① 청소년의 국제교류

내각부에서는 국제청년육성교류사업, 일본·중국청년친선교류사업, 일본·한국청년친선교류사업, 세계청년의 배 사업, 동남아시아청년의배 사업, 21세기 르네상스청년리더 초대사업, 국제청년의 촌 사업 등의 청년 국제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사회활동의 중핵을 책임질 청년리더의 육성을 목표로 [청년사회활동 코어리더육성프로그램]을 개시하였다.

외무성에서는 해외청년을 초대하는 사업인 단기청년초대 및 장기청년초대사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ASEAN 각국의 청년을 초대하는 사업인 「21세기를 위한 우정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또 정부에서 기술협력의 일환으로서 청년해외협력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것은 2003년3월

말 현재 66개 국가에 대해 2,315명을 파견 중에 있다.

문부과학성에서는 21세기초에 10만 명의 유학생을 받아들일 계획으로 「유학생10만 명 계획」을 실시하고, 독일 전부터 귀국 후까지 체계적인 유학생사업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2년5월1일 현재, 일본의 유학생수는 9만5550명이 되어, 올해에는 「유학생10만 명 계획」이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포스트10만 명 계획을 포함한 새로운 유학생정책을 검토 중에 있다.

일본은 외국어교육의 충실·지역수준에서의 국제교류의 진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학지도를 위한 외국청년초대유치사업(JET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2002년도에는 세계 38개 국가에서 외국어지도조수, 국제교류원, 스포츠국제교류원 등 6,273명을 초대했다.

3. 독 일

1) 청소년 관련 행정조직 체계

독일의 청소년관련업무는 '아동청소년국(Children and Youth Office)'에서 수행하고 있다. 아동청소년국의 운영을 위한 주된 정책은 연방아동청소년플랜(The Children and Youth Plan of the Federation)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구체적인 법령과 연방아동청소년플랜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정책 목표를 수립한다. 아동청소년국이 수행하는 주요업무영역은 자원봉사활동(Voluntary Work), 청소년 범죄의 예방 및 통제, 아동 성착취(특히 매춘관광) 문제 등이며, 이러한 영역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청소년관련 활동가, 법률관련 종사자, 전문가 집단, 여행사 및 여행관련종사자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독일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된 정책에서 특이한 사항은 개별적인 연구자

집단에 의해서 행해진 아동과 청소년의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정부의 양 의회에 제출하게 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독일 청소년 상황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물론, '아동청소년국(Children and Youth Office)'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아동청소년국은 이러한 보고서를 근거로 자신들의 업무를 수정, 보완, 수행해 나간다(<http://esa.un.org/socdev/unyin/compare5.asp>).

2)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대책 관련법

독일의 청소년관련법으로는 아동·청소년서비스법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아동·청소년서비스법은 일반청소년의 교육, 지원을 위한 규정뿐만 아니라, 빈곤청소년·일탈청소년 등 모든 영역의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1) 아동·청소년서비스법

독일의 청소년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은 1990년도 6월 26일에 공포된 아동·청소년서비스법(Child and Youth service Act)이다. 아동·청소년 서비스법의 1조1항은 '모든 아동·청소년들은 그들이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혜택과 적절한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1조 3항에서는 청소년 업무와 복지 서비스의 역할과 관련하여 '국가는 청소년의 개인적 사회적 발달을 추구하고, 그들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부모 혹은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적인 카운슬링을 제공해야 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안녕(well-being)에 대한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위해 긍정적인 생활 환경을 유지,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서비스법은 다양한 조직과 기구들의 다양한 수단과 절차를 통해 청소년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청소년 서비스기관과 자발적인 청소년 서비스기관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이러한 자발적인 청소년 서비스기관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서비스법에서는 청소년 활동을 몇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주요분류를 살펴보면 (i) 일반상식·정치·사회·문화·건강·자연과학·기술 교육을 포함하는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교육, (ii) 스포츠·게임·사회생활 영역에서의 청소년 활동, (iii) 독일청소년과 외국인 청소년 활동, (iv) 학교와 가족에서의 직업관련 활동, (v) 청소년을 위한 휴일 및 여가 프로그램, (vi) 청소년지침 등이 있다.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규정에서는 청소년 활동은 물론,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가족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내용으로는 가족상담, 편부모가정을 위한 지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사회적 지원,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이 있다⁵⁹⁾ (<http://www.esa.un/socdev/unyin/compare5.asp>).

59) 아동청소년서비스법 외에도 고용증진법(Promotion of Employment Act)이나 연방사회지원법(Federal Social Assistance Act)도 청소년관련활동에 관한 재정지원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법률들이다 (<http://www.wen.org/socdev/unyin/>).

3)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사업 및 프로그램

독일에서는 청소년 가출 예방 및 집단 따돌림 해결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집약적·사회 교육적 개별보호프로젝트와 버스프로젝트(Bus-Projekt), 모빙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1) 집약적·사회 교육적 개별보호프로젝트

독일에서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아동·청소년서비스법 제 35조에 근거하여 사회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둔 '집약적·사회 교육적 개별보호프로젝트(Intensive sozialpädagogische Einzelbetreuung (ISE)-Projekt)'를 실시하였다. 집약적 사회 교육적 접근방식을 시도하고 있는 본 사업은 단기간(3개월)이지만 집중적으로 청소년문제에 개입한다는 측면에서 독일의 가족지원서비스와 유사한 형태를 띄며, 소그룹(4-5명의 담당자)이 기존의 지역사회 자원을 보완하거나 연계관계를 체계화하는 작업을 주도한다. 즉 이 프로젝트는 가출청소년과 지도자가 개별적인 관계와 신뢰를 형성하고, 도달할 수 있는 목표지점을 함께 설정하며 그에 따른 계획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ISE 프로젝트의 지도자들은 청소년의 편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청소년과 관계된 모든 기관 및 사람들 사이의 매개자 역할을 수행한다(최인섭·원혜옥·강은영, 2000, p. 121).

(2) 버스프로젝트(Bus-Projekt)

쾰른시의 버스프로젝트는 쾰른시의 보건부가 주도한 거리사회사업의

한 형태로서, 가출청소년에 대해 원조의 정도가 낮은 대책에서 강한 대책으로 자연스럽게 전이될 수 있다면 가출청소년을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적인 원조가 실행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수립된 대책이다. 이 프로젝트는 'Auf Achse연맹(노숙자보호동맹협회)'가 필른 보건부와 연계하여 역부근에서 생활하는 12살 이상 30살 이하의 청소년을 위한 원조프로그램으로 시행한 것이다. 이는 주로 낡은 버스를 개조하여 이동적이면서도 출입이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최인섭·원혜옥·강은영, 2000, p. 123).

(3) 모빙 프로그램

독일에서 이전에 실시된 청소년 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따돌림에만 특정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고 인종주의자, 나치주의로부터 영향 받은 청소년들의 폭력행동을 함께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학교, 정부, 경찰의 협력 하에 시행되어 왔었다. 그러나 독일정부는 1994년부터 올베우스(Olweus)의 집단따돌림 프로그램을 국가차원에서 실시하고 평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이 모빙 프로그램(Mobbing: Prevention of Violence in Schools in Schleswig-Holstein)이다. 47개의 참가학교를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각 학교별로 학교의 예방과 대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학교회의를 열게 하여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였으며, 1년후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11학년과 12학년을 제외한 저학년에 이 프로그램은 집단 따돌림 피해 빈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냈다(Smith, Morita, Junger-Yas, Olweus, & Slee, 1999; 박금주, 1999, p. 70에서 재인용).

4. 스웨덴

1) 청소년 관련 행정조직 체계

스웨덴에서는 ‘공공행정부(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의 ‘청소년부(Youth Affairs Division)’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자문위원회(Consultative Committee on Children and Young People)’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 청소년에 대한 정부 정책을 추적하고 조정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 청소년의 생활, 훈련, 고용 조건을 연구하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정부정책에 적용시키는 역할을 하는 ‘청소년을 위한 국가 평의회(National Council for Youth Affairs)’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http://esa.un.org/socdev/nyin/compare5.asp>).

2)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대책 관련법

스웨덴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구체적인 법은 존재하지 않고, 사회서비스법에서 청소년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1) 사회서비스법

다른 나라처럼 스웨덴에서도 청소년만을 위해 만들어진 법은 없는 실정이다. 단지 ‘사회서비스법(Social Service Act)’이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과 개인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기술하고 있다. 스웨덴은 ‘아동권리에 대한 유엔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을 비준하였으며, 1993년부터는 정부가 아동권리에 대한 유엔협약 조항의 적용여부를 감시·감독하기 위해 아동권리를 위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http://esa.un.org/socdev/nyin/compare5.asp>).

3)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사업 및 프로그램

스웨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혼모 관련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웨덴은 청소년의 혼전 성관계에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으나 십대 미혼모 방지를 위해 가정과 사회가 10대를 대상으로 한 피임법에 주안점을 둔 매우 철저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42년부터는 성교육을 학교 교육에 포함시켰고 1956년에는 이를 의무화하였으며, 1970년대부터는 취학전 아동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였다. 14~16세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내용에는 성과 도덕, 사생아, 자연 및 인공유산, 피임법, 성병, 폐경, 성적 이상 등이 포함되어 있고, 학교에서도 미혼모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처벌하기보다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학교를 끝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윤혜비, 1999, p. 176).

5. 핀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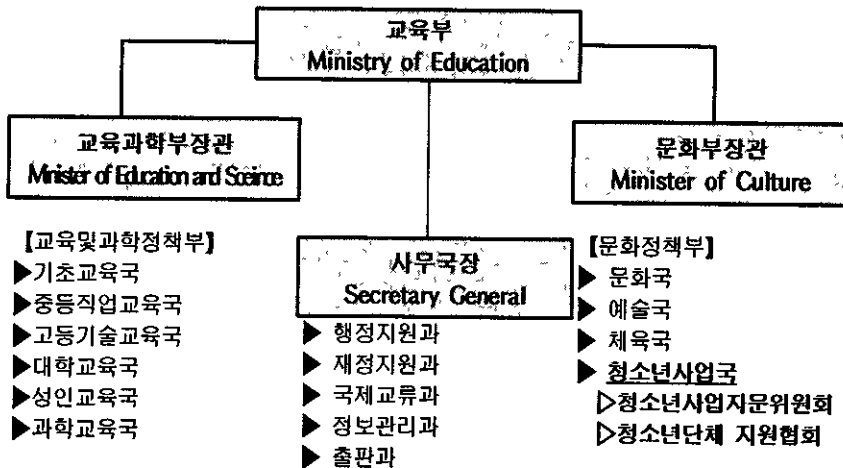
1) 청소년 관련 행정조직 체계

핀란드의 청소년정책 담당 부서는 중앙의 교육부와 지방의 자치정부내의 청소년 사무국에서 주로 관장한다.

우선, 1997년에 개편된 중앙 정부의 교육부의 계선 조직 체계를 살펴보면 [그림 VII-2]과 같다. 체계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 사업 담당 부서는 교육부내에서도 문화정책부 아래 청소년사업국에서 관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선 조직 체계 내에서 중앙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가 '청소년사업국'이라면 청소년 업무와 관련된 자문조직으로 '청소년사업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for Youth Affairs)'와 '청소년단체지원협회

(Youth Organization Subsidies Committee)'의 2개의 조직이 있다. 청소년 사업자문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청소년 생활조건을 파악하고 발전시키는 것, 청소년의 사회화와 생활관리를 지원하는 것,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 문화 및 사회영역과 연계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최윤진, 1998, p. 131).

한편, 지방자치제도가 확고히 정착되어 있는 핀란드에서는 청소년 정책도 각 주(州)별로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나 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형성되고 운영되고 있다. 핀란드에는 총 6개 주(남부, 서부, 동부, Oulu, Lapland, Aland)가 있는데 각 주정부의 행정조직 체계 및 청소년 담당 부서는 크게 내무부, 사회복지·건강부, 교육·과학·문화부, 교통·통신부, 통상산업부, 농림부, 법무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중 교육·과학·문화부 산하에 체육청소년국이 청소년관련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 (최윤진, 1998, p. 132).



[그림 VII-2] 핀란드의 청소년관련 행정조직

* 출처: 최윤진, 1998, p. 131.

2)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대책 관련법

핀란드는 약 30년 전에 처음으로 수립된 ‘청소년사업법(Youth Work Act)’제정 이후로 몇 번의 개정 및 변화과정을 거쳐왔으며 1995년에 핀란드 청소년 정책의 근본방향을 새롭게 설정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기반을 제시한 ‘신청소년사업법(The New Youth Work)’⁶⁰⁾이 제정되었다. 이전의 청소년 관련 법률이 주로 지방정부와 단체에 대한 재정적 할당 및 지원에 그친 데 비해서, 신 청소년 사업법에서는 국가에서 청소년의 생활상태와 조건들을 진단하고 개선하는데 직접적인 관심과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세대간, 성별, 다른 종교집단의 평등과 다양한 문화이해와 관용을 촉진시키며 자연에 대한 지속적 개선을 촉진시키는데 있으며 청소년 정책의 가장 기초가 되는 두 가지 개념 ‘청소년사업(Youth Work)’과 ‘청소년활동(Youth Activities)’에 대해 청소년 사업은 ‘청소년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의 시민활동을 위한 조건을 창출하는 수단’이라고,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들의 개인적 성장과 시민성 기능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민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최윤진, 1998, p. 130).

3)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사업 및 프로그램

핀란드의 청소년관련 중앙정부의 기능은 지방 자치기구나 청소년단체, 센터, 청소년관련기구, 조직 등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규제 및 감독, 관리기능보다는 지원, 보조, 조장행정적 특성

60) 핀란드 청소년정책은 1995년 새롭게 개정된 ‘청소년사업법(Youth Work Act)’에 근거해서 중앙 및 지방정부와 청소년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이끌어가고 있다.

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역점을 두고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청소년 워크숍 프로그램과 같은 청소년 직업교육프로그램이나 국제교류 활동, 문화활동, 정보화관련 활동 등이며 그 외에도 청소년 관련 연구활동이나 지도자 교육 및 훈련 등에도 상당액의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가출 및 비행청소년을 위한 EELIKA 훈련프로그램과 NUOSTRA프로그램을 살펴보겠다.

(1) EELIKA 훈련프로그램

핀란드에서는 문제청소년의 지도를 위해 여러 형태의 아웃리치(outreach) 프로그램이 전개되고 있다. 음주운전 및 차량절도 청소년 증가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1996년도에 헬싱키에서는 EELIKA라는 특별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도하고 있다(최윤진, 1998, p. 135).

(2) NUOSTRA

NUOSTRA는 1990대 경제 침체기 이후 새롭게 제기된 청소년실업문제(Youth Unemployment), 청소년소외문제(Young People's Exclusion), 시민으로서의 청소년의 위상정립 및 사회참여문제(Young Citizens and Participation)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젝트이다. 여기에서는 지도자들의 지원활동이 책임강조의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수준으로 발전되어야 함과 청소년들의 권리인식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인 권리행사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최윤진, 1998, p.133-135).

6. 덴마크

1) 청소년 관련 행정조직 체계

덴마크에는 청소년관련사항만을 전담하는 전담 부서는 없다. 교육, 고용, 주거와 관련된 청소년 관련사항은 이와 관련된 각각의 영역에서 다뤄지고 있다. '덴마크 청소년 협의회(Danish Youth Council)'나 스포츠관련 조직에 관한 업무는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의 '아동·성인 학교의 교육 및 훈련부(Department of Out-of-school Education and Training for Adults and Young People)'에서 이루어지고 있다(<http://esa.un.org/socdev/inyin/compare5.asp>).

2)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대책 관련법

덴마크의 법 중 학교의 교육에 대한 'Folkeoplysning법', '사립학교관련법', 주정부단위의 '성인 교육법' 등 성인에 대한 법들은 많은데 반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은 없는 실정이다(<http://esa.un.org/socdev/inyin/compare5.asp>).

3)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사업 및 프로그램

덴마크는 청소년기 혼전 성관계나 임신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사회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원치 않는 임신이 문제화함에 따라 1960년대 초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교육부를 통한 학교 성교육을 의무화하였다. 1971년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성교육을 의무화하기 시작

해, 1975년 공립학교령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성교육이 시작될 것을 명시하고 있다(윤혜미, 1999, p. 176).

7. 영 국

1) 청소년 관련 행정조직 체계

영국에는 실질적인 청소년업무전담 조직은 없으며, 교육·고용성(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의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차관의회(Parliamentary Under-Secretary of State for Lifelong Learning)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교육·고용성의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 차관의회는 건강·사회보장성(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curity)이나 주택성(Housing Office)과 같은 다른 정부부처와 협력하여 부처와 관련된 청소년과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영국 전역에 걸쳐서 지방정부는 그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지방정부는 다양한 지역 사회 서비스에 제공할 재정의 총량을 결정하기 위한 광범위한 틀을 짜야 하며,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지방 정부에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들은 지역의 필요와 우선성을 고려하여서 재원을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 어떻게 분배할 수 있을지를 결정한다(<http://esa.un.org/socdev/ynyin/compare5.asp>).

2)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대책 관련법

영국의 문제행동 예방 및 대책 관련법은 크게 가출 및 비행청소년을 위한 관련법과 일반청소년을 위한 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출 및 비행청소년을 위한 법으로는 형사재판법⁶¹⁾, 아동복지법을 들 수 있으며, 일반

청소년의 경우 교육법을 들 수 있다.

(1) 형사재판법(Criminal Justice Act, 1991 & 1993)

영국의 경우 비행청소년에 대한 형사재판법의 적용은 1908년의 범죄행위방지법(Crime Prevention Act, 1908)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 법은 특히 16세-21세까지의 문제 청소년에 대한 소년원(Borstal Institutions)의 설립의 근거가 되었으며, 1925년에 개정된 법은 청소년들의 비행행위에 대한 형사법의 적용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하였다. 1961년 법은 21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중기형(Medium-term Custodial)의 선고는 소년원에서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1982년 법의 개정은 소년원 훈련의 미결정 판결대신에 소년원 수용선고를 결정하도록 하였다(Faulkner, 1995; 문선화, 1997, p. 12에서 재인용)

1991년에 개정된 형사재판법은 형사재판에서 보다 표준화된 선고-판결 원칙을 체계화하여야 된다는 요구에 따라 사법제도의 '응분의 처벌(just deserts)원칙'을 적용하여 정말 심각하지만 재활이 필요한 청소년 범죄자(여기에는 성인과 청년을 포함시킨다)에 대한 비수용선고(지역사회내 처벌)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 법은 무조건의 사회복귀를 지양하고 형벌의 공정성(fairness)과 응분의 처벌(just desert)에 근거한 정의모델(Justice Model)에서 보호관찰이 자유의 제한과 배상을 중심으로 실시됨으로 그의 사회적 책임이 수반되도록 한 것이다(오영근, 1990; 문선화, 1997, p. 13에

61) 영국은 1991년 형사재판법(Criminal Justice Act 이후 CJA)의 통과(실시는 1992년 10월부터)로 인하여 그동안 산만했던 청소년 비행 및 범죄자에 대한 처우가 하나의 제도 아래 모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재판법의 통과가 가능하게 했던 1989년 아동복지법(Children Act)은 복지적 관점에서 사회내 처우를 합리화하였으나 불과 2년 후의 형사재판법은 비록 같은 맥락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사회내 처벌을 전제로 하였다. 이들 두 개의 법은 매우 다른 두 개의 법이지만 서로 분리하여 논하기는 어렵고,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우를 위하여 항상 함께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 재인용).

이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10세-13세로 규정)과 청소년(14세-17세로 규정)의 비행·범죄 사실에 대하여 그 행위의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서 심판을 결정한다. 둘째, 1933년 아동·청소년법 제 44조의 아동복지우선의 기본적 원리와 균형을 이루며, 계속하여 소년법정에도 적용됨을 명시한다. 셋째, 아동의 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16세까지이다. 넷째,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한 새로운 범위는 특히 16-17세의 청소년은 성인에 가까우므로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의 적용을 의미한다. 다섯째, 이 법의 또 하나의 새로운 영역은 보호관찰관에 의한 판결전보고서(Pre-Sentence-Report)이다. 이것을 위하여서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범법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질적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지침서(National Standards)를 마련한다. 여섯째, 모든 사법제도에 관련된 종사자의 성별/인종적 차별에 대한 부적절한 실천을 방지하기 위한 서약을 명기한다. 그리고 일곱째, 범법자의 대안적 형의 언도로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형의 집행을 위한 기관상호간의 협력적 관계를 권장한다.

소년비행법에 대해 그전까지는 형사재판소(Crown Court)에서 20세까지 가정법원에서 18세까지 취급하였으나 새로운 CJA는 소년이라는 용어에서 청년(young adult)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21세까지 청소년재판소(Youth Court)에서 심판을 받게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문선화, 1997, p. 13).

(2) 아동복지법(Children Act, 1989)

1908년에 처음 제정된 영국의 아동복지법은 1989년에 전면 개정되어 1991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전통적인 국가의 아동에 대한 보호권이라는 개념이 다시 법적으로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아동복지법은 청소년사법제도나 아동 및 청소년의 범법행위에 대한 구

체적 조처나 판결에는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나 1991년의 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소년법원이 결정하는 지도감독명령이 준거해야 할 기준이 된다. 즉 지도감독명령(아동복지법 제17조(1)과 제27조)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하여서는 아동의 복지와 관련하여 그 아동에 적절한 장소, 요구, 아동의 배경이나 연령에 합당한 사항 등을 아동복지법의 제 4장 제 31조의 2항과 9항 그리고 제 35조 1항에 근거하여 내려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감독명령의 해지는 제 39조에 의하여 만 18세가 되었거나, 기간의 만료나 혹은 청소년 법정(Youth Court)에서 부모나 보호자가 이 아동을 책임진다는 서약을 받은 후에 가능한 것이다(문선화, 1997, p. 15).

(3) 교육법

영국은 헌법과 법률에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 서비스에 대한 법은 1996년에 시행된 교육법(Education Act)의 2절과 508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것은 1944년에 제정된 교육법(Education Act)의 41절과 53절을 수정한 것이다. 이 규정은 사회적 교육(Social Education)과 심리적 교육(Psychological Education), 그리고 레저활동(Leisure Activities)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 서비스의 기반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강화시키기 위하여 더욱 세분화된 법률을 추가하려 하고 있다(<http://esa.un.org/socdev/unyin/compare5.asp>).

3)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사업 및 프로그램

영국에서는 가출 및 비행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영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보호관찰 프로그램으로는 파.에

이.씨.티(PACT; Probation Action Challenge and Training), 휠 프로젝트(WHEEL Project)가 있다.

(1) 피.에이.씨.티.(PACT: Probation Action Challenge and Training)

PACT 프로젝트는 특히 심각하고 계속하여 비행을 저지르는 17세에서 20세까지의 청소년을 위하여 개발된 영국의 대표적 집단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해진 규율이나 그 범위가 명확하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훈육중심이지만 상당히 창조적이며 융통성 있는 것으로 일년에 약 60명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이 프로그램을 위하여 보통 한 청소년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약 2,000 파운드 정도이다. 이것은 이들을 소년원에 보냈을 때 약 10,000 파운드가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상당한 비용절감이라고 할 수 있다. PACT는 17세-20세의 구금이 필요한 청소년을 지역사회의 대안적 프로그램으로 발달시킨 것으로 1989년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소년법정은 보호관찰관의 개별적 계획을 참조한 후, 이 소년에게는 이러한 훈련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지역 사회 지도감독 명령과 병행하여 이 훈련에 참가할 것을 지시하나 이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이 훈련에 참가하겠다는 계약서에 동의한 후에 실시된다. 이 훈련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그리고 '그곳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다.

이 PACT는 보통 보호관찰소와 경찰이 협동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지지만, 집단활동이 주가 된다. 특히 일주일간의 산악지대에서의 야영은 워커나 클라이언트에게 많은 준비와 노력 그리고 인내심을 요구하는 훈련이다. 내용은 집단을 통한 훈련과 기술의 습득이며, 때로는 성인교도소에서 하루를 보내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

에는 지역사회봉사도 포함된다. 이 프로그램은 매우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중도탈락자가 60%정도를 차지 하지만, 일단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들의 재범율은 5%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문선화, 1997, p. 30).

(2) 휠 프로젝트(WHEEL Project)

영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청소년들의 자동차관련 범죄가 많다. 상당히 낮은 차의 핸들에까지도 자물쇠를 채우고 있다. 그러므로 비행의 상당 부분이 이 범죄와 연결되므로 이를 방지하고 또한 이들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이 휠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보호관찰소가 주제를 하지만 내용이나 프로그램은 보호관찰경험이 있는 집단사회사업전공교수가 주로 보호관찰소의 의뢰를 받아 만들게 된다. 프로그램 진행은 경찰, 검사, 피해자, 심리학자, 보호관찰관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매우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주로 윤리적 측면과 도덕적 훈련을 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만약 비행청소년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된다는 명령을 받으면 보통 4주간, 일주일에 5일간 매일 집단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문선화, 1997, p. 31).

8. 프랑스

1) 청소년 관련 행정조직 체계

청소년과 관련된 정부정책을 이행하는 조직은 청소년·체육부(The Ministry of Youth and Sport)의 청소년국(Department of Youth and Associative Life)이다. 청소년국의 구성은 (i) 도시지역 아동·청소년부문(The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the City Division), (ii) 주도·통합부

문(The Initiatives and integration Division), (iii) 파트너십과 국제관계 부문(The Partnetship and International Relations Division), (iv) 자원부 문(The Resources Division)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육부, 문화부, 사회부, 도시관할부, 노동부, 직업훈련부와 밀접한 업무협조체제를 통해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청소년·체육부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표준화된 지침을 설정하여 이러한 지침이 청소년 분야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행정부분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청소년관련분야 공무원들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해 나간다. 이들은 주로 소외된 청소년을 지원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공간 확보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훈련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청소년 정책의 주된 목표는 (i) 청소년의 사회적 응집성과 통합성(integration)의 증진, (ii) 건강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증진, (iii) 범죄예방, (iv) 청소년의 사회적 직업적 융합, (v)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 함양, (vi)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위한 직업캠프의 운영 등이다. 이들은 이를 위하여 주말캠프와 레저 센터시설의 향상과 지도자 배치, 지도자의 훈련에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 의회에는 청소년만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별도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청소년문제는 국회내의 문화, 가족, 사회문제 위원회(Culture, Family and Social Affair Committee)와 상원의 사회문제 위원회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http://esa.un.org/socdev/uryin/campare5.asp>).

2)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대책 관련법

청소년·체육부의 설립근거가 된 1977년 4월 26일 법령은 청소년·체육부의 설립 뿐만 아니라 청소년·체육부의 주된 역할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에 규정된 청소년·체육부의 주된 역할로는 (i) 청소년

의 주된 관심사에 대한 대처 방안 수립, (ii) 교육과 스포츠기회의 증진, (iii) 청소년 여가활동의 촉진 (iv) 다양한 교육 및 훈련,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확충 등이 있다(<http://esa.un.org/socdev/nyin/campare5.asp>).

3)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사업 및 프로그램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데피죄느, 방학 및 여가센터 등이 있다.

(1) 데피죄느(DeFi jeunes)

청소년·체육부가 주관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15세부터 28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구성한 일정한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해 주고 경제적 도움을 제공할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1987년에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이후 90년과 96년 두 차례에 걸쳐 개선되어졌으며, 고용 및 사회연대성 담당 부처, 우체국, 프랑스의 교육 및 평생교육연맹 그리고 기타 이에 관심 있는 민간조직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체육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15세에서 28세 사이의 청소년들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일정한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있는 경우 거주지역별 청소년·체육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서류 접수후 적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특화된 전문가 연계망으로부터 그들의 계획에 대한 진단, 조언 등을 받을 수 있다(윤철경·정희옥, 2001, p. 230-231)

(2) 방학 및 여가 센터(CVL)

방학 및 여가 센터(CVL: Les Centres de Vacances et de Loisirs)는 청소년들이 정규수업 이외에 교과과정 또는 자격증 교육을 제외한 창조적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성된 정규요원 및 자원봉사 요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이들의 방학 및 방과후 이루어지는 활동을 위해 마련된 모든 종류의 일시적 혹은 지속적 기관들로 구성된다. 주요 대상은 4세이상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며, 이들 기관에서는 최소 12명 이상의 수용인원이 5박 이상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윤철경·정희옥, 2001, p. 233).

9. 호 주

1) 청소년관련 행정조직 체계

(1) ACYS (Australian clearinghouse for youth studies)

ACYS는 가족과 지역 봉사 활동의 부문에서 활동하며, 부분적으로는 출판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이며,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로부터 부분적으로 자금을 공급받는 비영리 기관이다.

ACYS는 청소년 현장에서의 조사 정보 서비스로써, provider뿐만 아니라 신문(호주와 청소년의 조사 출판물)의 출판사이다. ACYS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청소년과 청년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은 지역, 조사원, 정책 수립자, 근로 청소년과 청소년의 서비스 provider(학생과 부모님뿐만 아니라)의 건강과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사회현장과 사회 적응 준비를 위한 청년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ACYS는 청소년에게 일어나고 있는 복잡하고 광범위한 이슈를 알아 커뮤니티를 돕고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제공한다. ACYS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 서비스에는 다른 조직에 의해 편집된 도서, 청소년의 공공 공간 정보 등을 제공한다. 그것은 청소년의 조사를 용이하게 하는 연구 과정의 가이드로 적합한 기능을 하며, 호주에 관한 연구를 위한 정보의 유용한 근원이 되기도 한다.

(2) ATM(Anglicare Tasmania & Miscellaneous)

ATM(Anglicare Tasmania & Miscellaneous)은 Anglicare Tasmania를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더하기 위해 확립되었다.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Anglicare가 사회적인 정의를 이루고, Anglicare의 자원내에서, 삶의 충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존재한다. Anglicare는 가난을 막고, 사회적인 정의를 위해 확실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1978년에 영국 교회의 회의는 교구에서 조사하고, 사회 복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 복지 위원회를 설립했다. 교회 회의는 특히 실업과 청소년의 homelessness에 응답할 필요를 확인했다. 3년의 숙고 후, 사회 복지 위원회는 델버튼의 복지 컨설턴트 대부제 David Chambers에게 사회적인 책임의 인식에 대한 최초의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Fonda Arnold (사회 복지의 Tasmanian 회의장)은 비상근의 기초에 교구의 복지 필요성을 결정하고, 이 필요성이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방법에 관해서 연구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Anglicare의 상담가는 성인과 청소년들의 여러 국면으로서 훈련을 완료한 자격이 있는 심리학자와 사회 복지사가 담당하고 있다. 품질 서비스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모든 상담가는 지속적인 전문 발달에 참여하고 있다. 관계 카운셀러는 가치 체계의 가장 엄한 비밀성과 코드를 위임받게 된다. 상담가가 주로 하게 되는 일은 다음과 같다.

① 숙박설비(Accommodation)

어떤 타입의 숙박 설비를 이용할수 있는가의 정보를 긴급 입수하여 숙박 설비를 포함하도록 하고, 숙박 설비를 지원한다. (Access, 청소년 대피소, PASS 서비스 실시)

② 상담 및 지지(Support)

지지의 실제적이고, 감정적인 다른 형태를 제공할 수 있다. 내담자의 필요성을 충분히 아는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낀다면, 상담가들은 다른 기관의 서비스에 청소년을 맡길 수 있다. (재정 상담, 결혼교육, 관계상담 서비스 실시)

③ 변호(Advocacy)

정부와 민간의 서비스를 중개한다.

(3) YAPA(Youth Action Policy Association)

YAPA는 NSW에서 청소년의 서비스를 위해 일하고 있는 최고의 커뮤니티 그룹이다. NSW에서 청소년의 통제하는 행동과 결정에 관계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며, 사회적인 자원으로서의 배출을 돕는다.

YAPA는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의 적절한 준비를 포함하며, 청소년을 위해 사회적인 정의를 이루려고 노력한다. YAPA는 모든 청소년의 인권 실현을 위해 지지하며, 그들의 사회 경제학적인 상황, 민족성의 결과, 삶의 커뮤니티(성)로부터의 배제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을 지지한다.

YAPA는 대학교에 다니고 싶은 많은 청소년을 위해, 사회적 장벽에 관해 인식을 돌리려고 한다. YAPA는 청소년 서비스와 커뮤니티의 다른 회원이 포함되어 보도록 권하고 있다. 공교육은 모든 것을 위해 자유로워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YAPA의 설립 가치관은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에 관한 모든 행동 안에서, 공공·개인 사회 복지 학회, 법정, 행정 당국 또는 입법부 안에서, 청소년의 이익은 최고의 중요한 점이어야만 한다.

② 청소년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정의에 있어야 한다.

③ 청소년은 접근과 기회의 동등에 있어야 한다.

④ 청소년은 교육과 훈련, 공공의료, 법의 처치, 정부 서비스 등에 있어서 공정하고 같은 접근을 가져야 한다.

⑤ 청소년은 사회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지지와 정보 등과 같은 자원과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⑥ 청소년에게는 그들의 의견이 있고, 그들의 인생에서의 결정에 참여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⑦ 청소년에게 제공할 품질 서비스에 대해 촉진시키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YAPA의 역할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정책과 제안을 감시하고, 응답한다.

② 청소년의 서비스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슈들을 지지하며 촉진한다.

③ 청소년들의 이슈에 대해 함께 행동하기 위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게끔 한다.

④ 매체나 커뮤니티에 청소년의 명백한 프로필을 올리기 위해 일한다.

⑤ 청소년이나 직원들에게 훈련, 포럼과 회의를 제공한다.

⑥ 정보와 조화를 제공한다.

⑦ 자원, 출판물과 뉴스 레터의 범위를 생산한다.

(4) Tasmania의 청소년 네트워크 기관 (YNOT: Youth Network Of Tasmania)

YNOT는 태즈메이니아 민간 청소년들을 위한 최고의 단체이다. 그것은 교육 부문에 의해 Youth Affairs 센터로 통하여 자금이 공급되며, 청소년 논쟁들로부터 Tasmanian 커뮤니티의 반응을 개선시키는데 있다.

YNOT은 청소년 논쟁에 있어서 청소년들을 포함한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적당한 전략과 정책을 제공해주고, 용이한 기계장치의 조화를 통하여 청소년 부문의 발달을 초래한다. 그리고 청소년과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논쟁에 대한 응답을 해주고, 정부와 또 다른 정부기관들에게 조언을 제공해주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다.

YNOT는 연차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뽑히는 위원회에 의해 관리된다. 관리 위원회의 회원은 주의 모든 지역에서 선발이 되고, 청소년, 개개의 직원과 주 3개의 지역 청소년 조직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YNOT는 청소년과 서비스 공급자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다. 그 회원은 관리 위원회로 뽑는 연차 총회에서 최소한 한해에 한 번 만난다. 그것은 조직에 대한 법적이고 재정상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관리 위원회는 조직의 활동을 지도하기 위해 매월 만난다. 청소년 영역의 발달에 관계가 있고, 흥미가 있는 개인과 조직은 YNOT의 회원이 될 것을 요청받는다.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는 25살 미만의 청소년, 청소년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거나, 표현하고 있는 민간 청소년 조직과 그룹, 청소년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개인이면 YNOT 회원이 될 수 있다. YNOT의 역할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청소년 그리고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상담 기계장치 제공
- ② 독자성의 차이와 청소년들의 서비스에 우선하는 규정
- ③ 청소년 정책들에 대한 발전도상의 비평

- ④ 정부와 청소년 논쟁의 공동체 그룹들에 대한 전체 수준의 조언
- ⑤ 나라와 주 정부, 민간의 청소년 영역 사이에서의 동등을 제공하는 것
- ⑥ 지방의 지역 주 전체와 국립 청소년 조직간의 연결
- ⑦ 연구 조사와 다른 정보들을 수집하고, 널리 보급
- ⑧ 청소년기의 커뮤니티 교육
- ⑨ 청소년들이 그들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권하는 공개포럼을 개최
- ⑩ 청소년과 서비스 공급자들과의 효과적인 상담을 용이하게 하는 개발도상 구조
- ⑪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의 준비에서 추체성의 차이와 우선도를 확인하는 것
- ⑫ 청소년과 서비스 공급자에 관련되어 개발하고, 청소년의 정책을 재조사하는 것
- ⑬ 정책, 우선도, 이슈와 자원 위에 정부와 커뮤니티 그룹의 모든 수준에게 청소년의 필요성을 만나도록 가르치는 것
- ⑭ 정부와 지방의 주정부, 민간 청소년 부문 사이에서 일관되고 협력적인 방법을 조장하는 것

2)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사업 및 프로그램

(1) 청소년 조사 중심 센터(YRC; Youth Research Centre)

YRC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끼치는 교육, 이행 보도, 사회적인 정의와 세계 이슈에 관한 연구에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YRC는 조사를 떠맡고, 정책 수립자와 청소년의 부문을 위해 결과를 출판한다. 정보와 정책 조언을 정부와 다른 조직에 제공한다. 또한 청소년과 일하고 있는 개인 또는 그룹을 돕고,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은 청소년이 직접

관리하는 조사이다.

① The Youth Affairs Research Network(YARN) - 전자 네트워크가 멜버른의 대학에서 청소년의 관한 조사에 집중하면서, (<http://yarn.edfac.unimelb.edu.au/>) 이 사이트는 호주의 청소년에 관한 연구에 집중한다.

② The Australian Directory of Youth Researchers - 호주 청소년을 조사한 데이터 베이스는 청소년의 연구와 태즈메이니아 대학을 위해 ACYS와 함께 공동으로 관리된다.

(2) Homelessness 프로그램

① 숙박설비 지원 프로그램(Supported Accommodation Assistance Program:SAAP)

이 프로그램은 집 없는 사람에게 지지와 숙박설비를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1985년 이후, 공화국 정부와 영토 정부는 국가로서 조화시키게 되었던 정책 방법을 homelessness의 사회적인 현상에 맞추고, 지지와 서비스를 집 없는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원되었던 숙박 설비 지원 계획(SAAP)에 공동으로 자금을 공급했다. SAAP의 3 단계는 다음과 같다. ㉠ 상담 단계 ㉡ 발견으로부터의 평가 ㉢ 평가의 중요한 이슈와 제안의 통합

② Reconnect 프로그램

Reconnect 프로그램은 가구와 지역봉사활동(FACS)의 의해 집행되고, 집없는 청소년의 특별 위원회의 최종적인 보고서의 추천에 의하여 확립되었다. 목적은 가구, 일, 교육, 훈련과 커뮤니티와 함께 집이 없거나 homelessness의 안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12살 - 18살의 청소년들의

연락처를 구축하고, 개선하기 위해 실행된다. 초기의 나이에 시작될 수 있는 homelessness를 상담, 지지, 간섭 등으로 중재적 역할을 함으로써, 실제적인 도움을 가족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정부는 2000 만달러의 자금 제공을 연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을 강화하는 Government's 전략과 커뮤니티를 중요한 구성요소로 꼽고 있다. 대도시와 시골의 커뮤니티를 위한 Indigenous Reconnect Services를 확립하는 커뮤니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 다음은 Reconnect 프로그램의 효과이다.

- ㉠ 청소년과 그들의 가족 사이의 화해를 이룬다.
- ㉡ 청소년이 생활하는 상황의 안정성을 개선한다.
- ㉢ 청소년들이 그들의 커뮤니티와 함께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한다.
- ㉣ 서비스의 분명성, 완전성, 신속성이 청소년들의 커뮤니티 능력을 만들 수 있다.
- ㉤ 서비스의 모자른 부분을 보충하고, 기술을 습득하면 커뮤니티의 하부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예 : provider는 기술 발달을 훈련 받아서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의해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 ㉥ 학교와 더불어 더 밀접하게 일한다.
- ㉦ 커뮤니티를 통해 청소년과 가족의 필요성에 응답하기 위해 서비스 네트워크의 수용력을 개발할 수 있다.

(3) 약과 알코올 사용 · 남용에 관한 프로그램

① NSW 알코올 정상 회담과 청소년

이것은 NSW 청소년들의 알코올에 관한 해로움을 줄이는 것을 돕는 길을 논의하는 학자와 다른 소비자들의 정상급 회담이다. 이 회담에는

의회, 산업 대표자,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회원들이 참여하게 된다. 청소년을 위한 NSW 위원은 청소년의 참가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서 정상회담은 청소년의 알코올 포럼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 청소년 포럼에서는 청소년 정상 회담 대표가 의회에 참가를 할 것이고, 일하는 그룹에 참여할 것이고, 토론을 할 것이고, 투표도 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그들 자신의 chill-out 공간을 포함하는 사이트에 지지를 가질 것이다. 그로 인하여 지지 회원도 생길 것이다.

② 국가의 약 캠페인 뉴스(NIDC)

NIDC 웹 사이트에는 가구,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바이더와 매체를 위해 약에 관한 정보가 실려 있다. 그 목적은 ㉠ 청소년과 부모의 의사소통 기술을 개선 ㉡ 불법 약의 사용을 저지 ㉢ 부모에게 약물 정보에 관한 television commercials과 인쇄 광고, 그리고 웹 사이트와의 링크를 위한 소책자와 팸플릿을 지원하는데 있다.

③ 알코올 캠페인

요즘 공화국 정부 프로젝트는 과도한 10대의 음주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사이트는 부모님, 매체, 서비스 프로바이더, 통신 학생을 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출판물, 다운로드 가능한 텔레비전 커머셜과 관계가 있는 다른 웹 사이트와의 링크를 포함하여 캠페인에 대해 여러 가지 자원을 제공한다. 사이트는 16개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님을 위한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사이트 중의 1개는 청소년을 위한 것이다.

④ 약과 알코올의 교육과 정보 센터(Centre for Education and Information on Drugs and Alcohol: CEIDA)

약과 알코올의 교육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약과 알코올

(CEIDA)에 관한 교육과 정보를 위한 중심은 시드니에 있고, NSW 건강 관리부에 의해 자금이 공급된다.

⑤ National Centre for Research into the Prevention of Drug Abuse

- 약물 남용의 방지에 관한 연구를 위한 국립 센터

⑥ 약과 알코올에 관한 조사를 위한 국립 센터(National Drug and Alcohol Research Centre)

국가의 약과 알코올 조사를 중심에 두는 NDARC는 1986년 5월 뉴사우스 웨일스 대학에서 확립되고, 국가의 약 전략의 일부로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 의해 자금을 공급받는다. NDARC는 'Centrelines' 라고 불리는 뉴스레터를 년 4회 생산한다. 뉴스레터의 신청은 자유롭다.

⑦ National Drug Research Institute (NDARC; 국립 약 조사 학회)

국가의 약 전략에 총체적인 목적을 두고, 약 사용과 관련하여 해로움을 조사하고 줄이는데 공헌하는 학회이다.

⑧ Ted Noffs Foundation

Ted Noffs Foundation의 본질적인 목적은 homelessness, 실업, 정신 건강과 같이 약과 알코올 남용과 관련되어 신체나 감정적으로 청소년과 가족에게 문제가 되는 남용의 이슈에 대하여 대책을 제공한다. Ted Noffs Foundation는 청소년과 그들의 가족에 대해 직접적인 공헌을 한다.

⑨ Youth Substance Abuse Service(청소년의 물질 남용 서비스; YSAS)

YSAS는 약 이나 알코올의 오래된 사용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손이 닿는 범위의 정보와 주거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YSAS는 물질 남용 이슈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8개의 출장소의 팀을 대도시의 멜버른과 지역 빅토리아를 통해 위치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팀에게 유용한 이슈와 함께 도울 수 있도록 약 사용에 관한 정보와 교육을 실시하여, 임상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YSAS는 주거의 서비스 및 숙박 설비가 완비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의 화해를 도모한다. YSAS line(주 전체의 전화 서비스)는 YSAS의 팀에 24시간 접근, 정보, 전화, 카운슬링을 제공하고 있다.

(4) Health에 관한 프로그램

① 가구와 지역 봉사활동 서비스(Commonwealth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이것은 호주 정부의 솔루션으로 이루어지며, 공화국과 보건부에 의해 자금을 공급받는다. 인간의 건강에 관한 품질 정보를 제공하여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의 건강을 증진하려고 하는 서비스이다.

② NSW Center for the Advancement of Adolescent Health (CAAH)

청소년기의 건강 진보를 위한 NSW 센터로서, NSW CAAH의 임무는 조사를 통하여 뉴 사우스 웨일즈에 살고 있는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좋은 것을 촉진하고, 개발하고,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문가를 교육하며, 청소년을 대신하여 변호를 하게 된다. CAAH는 1998년 NSW 청소년의 건강 정책에 의거하여 NSW에 의해 자금을 공급받는다. CAAH는 규칙적인 ‘청소년의 건강 포럼’을 조직하여 제공한다.

③ Australian Association for Adolescent Health (AAAH)

NAAH는 12세 - 25세의 청소년의 건강 촉진을 위해 일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협회이다.

④ 호주의 건강과 복지학회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오스트레일리아의 건강과 복지 통계와 정보를 위한 국립 기관으로서, 건강과 복지 통계를 위해 개발하고 표준과 분류를 출판하여 제공한다.

(5) 청소년의 지지 프로그램

① 배치와 지지 서비스

(The Placement and Support Service, PASS)

PASS는 Anglicare 남쪽의 숙박 설비 서비스의 프로그램으로서, 안전한 숙박 설비를 필요로 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해 배치의 범위를 제공하고 있다. PASS는 지금 주 전체의 서비스이다. 북쪽과 북서 서비스는 Anglicare와 Glenhaven Family Care 사이에서 협력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남쪽의 PASS 프로그램에는 3명의 청소년 직원과 배치 provider 지지 직원이 있다.

㉠ Community Placement

PASS는 집이 없어서 위험에 처해 있는 청소년에게 단기 매체와 장기 배치를 줄 수 있다. 서비스는 그들 자신의 집에서 숙박 설비를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보호자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보호자의 역할은 안전한 환경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청소년이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배치된 청소년은 PASS에서 보호자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는다. 또한 배치된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거나 다른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지된다.

㉠ Self Selected Placements

때때로 집이 없는 청소년은 그들 스스로가 친구와 다른 가족 구성원들간의 적응을 발견한다. 보호자가 있는 곳의 청소년에게서 “선택되는 자아”의 최초의 평가가 일어나면 PASS 팀은 이 배치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청소년과 “보호자”의 지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② 청소년 지지 프로그램 (Bonza)

이 프로그램은 커뮤니티안에서 청소년이 새 친구를 만들고, 새 것을 경험하고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에 관해 발견하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건강, 일, 교육, Australia의 삶과 많은 다른 재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Bonza는 전 세계의 청소년을 위한 그룹이다. Bonza는 청소년들이 새 친구를 만들 수 있고, 새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활동은 스포츠, 미술과 공예, 요리, 캠핑과 파티를 포함하고 있다.

(6) 상담 서비스(Counselling Services)

카운셀러는 인생에서 기회를 경험하게 하고 어려움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다. 상담시 내담자와 카운슬러 사이에 모든 것이 교섭한다. 카운슬러는 내담자가 해야 할 것에 대해 구술하지 않고, 내담자와 내담자의 상황을 위한 적절한 대책들을 설명하지 않는다. 상담 서비스는 내담자의 금융, 도박 문제를 개인의 관계와 함께 돕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님과 십대가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을 개선시켜 주고, 싸움을 해결하는 것을 도와준다.

① 가족 관계 Counselling

Anglicare Tasmania는 공인된 Relationship Counselling 기관으로서,

아동과 가족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연방 사법 장관의 기구(Federal Attorney-General's Department)로부터 자금 제공을 받는다.

Anglican의 가족 서비스(AFCS)는 공식적으로 1983년 3월 1일에 생겨났다. 이름은 Anglicare Financial로 나중에 바뀌었다. 결혼 교육은 Anglicare의 주요한 활동이다. 이것은 처음에 Anglican의 교구에서 맡게 되는 커플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었다. 그 후 그것은 결혼할 예정의 누구에게라도, 그리고 벌써 결혼한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② 재정상의 상담

Arnold는 이용할 수 있는 재정상의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 태즈메이니아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재정상의 상담 서비스가 설립될 것을 권했다. 태즈메이니아의 경제 환경과 높은 실업 수준은 재정 지원을 가져오게 했다. 특히 재정상, 예산을 짜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며, 낮은 수입 가구와 개인에게는 '부채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③ 실업자에 대한 상담

1995년에 Anglicare는 실직한 사람에게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시작했다. 최근의 1996의 케이스로 관리는 Devonport와 일 클럽까지 확장시키게 되었다. 그리고 구직 활동 지원 프로그램은 Hobart, Glenorchy와 Burnie의 면에서 지탱되었다.

1996말에 지적인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공유되는 집 프로그램은 Anglicare의 숙박 설비 서비스의 새 방향을 시작하고 있는 Launceston에서 열렸다. 이 프로그램은 4개 그룹의 집을 처음에 제공하고, 중앙의 5세대 안에 1997를 늘렸다. 1997년 11월에 Hobart의 2개의 집을 프로그램에 더 추가하게 되었다.

④ Tasmanian 청소년의 상담 위원회

상담 위원회는 태즈메이니아 청소년의 네트워크, 청소년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 Youth Affairs에 의해 1998년에 설립되었다. 설립 목적은 청소년의 이슈에 대해 상담하고, 알려주고, 행동하는 것이다. 상담위원회는 청소년을 위해 목소리를 낼 명백한 결의가 있는 흥미로운 정력적인 개성으로 가득한 동적인 그룹이다. 청소년의 상담 위원회는 정부에게 조언하기 위해 청소년의 중요한 이슈를 제공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하며, 태즈메이니아를 대표하는 청소년과 정부 및 다른 기관들과의 면회를 제공한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의 발달에 대한 아이디어를 동력화하며, 청소년의 미디어 적용에 대한 방법을 제공하는 활동들을 한다.

(7) Tasmanian의 청소년 자살 방지 포럼

Tasmanians 청소년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자살 방지에 관한 특정의 초점과 더불어 협력적인 응답을 찾음으로써, 청소년의 건강과 안녕을 지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주 체의 기계 장치는 청소년의 자살 방지와 정신 건강에의 반응을 조화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청소년 이슈에 집중하여 기존의 지방과 지역 그룹의 활동을 보충하고, 지원하는 일과 이슈에 관해서 청소년 영역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 결합을 개선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다음은 청소년 자살 방지 포럼의 활동 효과들이다.

㉠ 교육과 훈련

- 적당한 교육과 훈련은 정책 발달에 공헌
- 교육과 훈련기회의 용이성
- 독자성과 촉진은 최고의 훈련에서 나온다는 조사

㉠ 서비스의 배달

- 서비스의 계획과 독자성이 확인되는 서비스 gap의 감소
- 협력적인 독자성과 발달
- 최고의 독자성과 축진은 서비스 배달을 모델로 한다.

㉡ 소비자와 보호자

- 개선되었던 이슈의 접근과 서비스의 응답을 용이하게 한다.

㉢ 자금의 제공 기회

- 독자성과 잠재적인 자살방지 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소식통을 촉진시킬 수 있다.

㉣ 지역 발달

- 지역 자살 방지 포럼의 발달을 용이하게 한다.

(8) 청소년 범죄 통제 프로그램

① 청소년 범죄자를 위한 통제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범죄자를 위한 통제 중심으로 계획되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범죄자들의 재범에 대한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계획하기도 한다. 그것은 단지 적당한 역할을 결정하기 위한 한정적인 대답이나 범죄 통제 도구로서 공헌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범죄방지 & 커뮤니티 안전 회의

범죄 방지와 커뮤니티 안전 회의의 설립은 테즈메이니아를 더 안전하고, 범죄 방지의 완전한 길을 개발하기 위해 만든 정부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회의이다. Australia와 증거들은 강한 범죄 방지 프로그램의 완전한 길을 통하여 실제 범죄의 장기 감소와 커뮤니티안의 범죄에 대한 공포의 감소가 단속될 수 있을 것을 제안한다. tasmania내에서는, 집

중적인 범죄 방지 솔루션을 위한 협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회의는 정부 기관, 민간의 조직과 커뮤니티 회원 사이에서 협력을 개발하는 것에 집중했다. 회의는 커뮤니티 회원의 조언을 태즈메이니아의 범죄 방지와 커뮤니티 안전에 관해서 정부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태즈메이니아에서 범죄 방지와 커뮤니티 안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지방의 솔루션을 개발해 보도록 권하고 있다. 회의는 경찰과 공공 안전의 부문에 위치하는 비서실에서 지지한다.

10. 싱가포르

1) 청소년관련 행정조직 체계

(1) YMCA

대도시의 YMCA(MYMCA)은 개인의 성장, 마음과 신체에 대해 기회를 제공하고, 성격 발달, 지원 활동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MYMCA는 130 이상의 나라에서 회원 YMCA와 함께 YMCA의 세계 결연에 소속된다. MYMCA는 YMCA의 세계 도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회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전세계 중요한 도시에서 YMCA을 링크할 수 있다. 설립목표는 마음과 신체를 성장시키기 위해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강한 커뮤니티를 건설하는 것이다. 다음은 YMCA의 활동들이다.

① 육아 서비스(Child Care Services)

싱가포르 섬 전역에 18개월에서 6세까지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 훈련 받은 선생님이 배치된 13개의 육아시설을 만들어서 서비스한다. YMCA는 정신, 마음과 신체에서 아이의 총 성장을 거둔다.

② 학생 서비스(Student Care Services)

맞벌이 가정의 7살에서 13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선생님들은 그들의 학업을 감독하고, 그들의 발달을 위해 교과과정을 계획하게 된다. 또한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방과 후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내의 평화를 즐길 수 있게 도와준다.

③ 지속적인 교육 & 부유 학습(Continuing Education & Enrichment)

YMCA는 미술, 드라마적인 예술, 음악, 댄스, 언어와 같이 아이들과 성인을 위해 광범위하게 유용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학자를 제공한다. 그리고 새 기술을 가르치고 그것을 취미로 나타내게 하면서 새 친구들을 만들게 해준다.

④ Swimming

대도시의 YMCA는 25미터, 4차선의 수영 풀, 옥내의 배드민턴시설, 에어로빅과 댄스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다. Y는 인생이 즐거워지고 열의가 가득해 지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수영은 어떤 나이이라도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학급은 증명되는 교사와 작은 그룹을 구성해 훈련시키게 된다.

⑤ 강함과 건강훈련 (Strength and Fithness Training)

격려를 해줄 수 있으며, 자격이 갖춰진 교사가 적당한 양의 훈련으로 몸시 유쾌한 경험을 만들어 줄 것이다.

⑥ 캠핑(Camping)

독립의 감각을 가르쳐 주고, 팀워크를 만들고, 통신과 통솔력 기술을 날카롭게 한다.

⑦ Volunteer at the Y

청소년 또는 궁핍한 가구의 생명의 차이를 약간의 생각, 시간과 노력을 주는 것에 의해 만들 수 있다. 삶의 기술을 그들에게 베풀고, 핸디캡이 있는 아이들을 위해 장난감을 꿰매며, 점심을 결핍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가난한 가구에서 수업을 어린이에게 제공한다. 또한 모든 기증

은 면세이다.

⑧ Stay at the Y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품질과 함께 다음 서비스와 시설을 제공한다.

(예 : 대도시의 Y 호텔, 메트로-Y 아파트, 메트로-Y 레스토랑, Conference Packages 등)

(2) Counselling & Care Centre

정신건강과 사회복지에서 심리학의 조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훈련을 통한 전문가에 의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 비영리 단체로서, 사회복지의 국가회의와 싱가포르의 커뮤니티의 회원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

임무와 목적으로는 정신 건강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생활을 위해 충고하는 것이며, 컨설턴트업, 훈련, 출판물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족 생활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에 관련되서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Counselling, 상담과 임상감독, 훈련, 공교육등이 있다.

2) 청소년문제행동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사업 및 프로그램

(1) Student Care Services

YMCA는 싱가포르에 커뮤니티를 긴 세월 활발히 공급하고 있다. 목표는 커뮤니티의 바뀌는 요구를 채우고 이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육아서비스 외에, YMCA의 불가결한 또 다른 서비스는 가족에게 제공하는 Student Care Services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① 아이들

의 학업과 연구를 감독하고, 안내해 주는 것 ② 아이들의 잠재성을 개발하는 것을 돕는 것. (자기인식, 자신감과 자기신뢰, 개인과의 관계, 가치발달, 학업 성적, 신체 검사 기술의 감각 등) ③ 성장과 학습을 위한 안전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도움이 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음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활동 내용들이다.

① 창조적 시간 : 자발적인 활동이다. 여기서 아이들은 스스로 숙제를 하고, 읽고, 선생님의 감독하에서 개개의 프로젝트에 맞추어 활동을 한다.

② 프로젝트 시간 : 선생님이 이끄는 활동으로서, 아이들이 프로젝트의 독창성을 자극하기 위해 하는 것이며, 기초적인 능력을 늘릴 수 있는 도전이다. (기술, 개발도상, 통솔력 등을 배우는 것)

③ 놀이시간 : 신체 발달 활동이다. 여기서 아이들은 물리적으로 지향하는 게임, 보드게임과 개개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④ People Time : 그룹 토론 시간이다. 아이들은 이 활동을 통해 의사결정 기술을 개선하고, 자기 신뢰의 감각을 강화하게 되며, 그들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있게 하기 위해 참여하게 된다.

⑤ Holiday Time : 협회의 체육과 Educational & Enrichment Departments이 함께 즐거움에 가득차고 교육 행락지를 위해 부모들은 아이들을 참여시킨다.

(2) Diploma Program

① Postgraduate Diploma in Family and Marital Therapy(PGD; 2003-2005)

이 대학 졸업 후의 diploma program은 정상 근무 시간의 일부, 가족의 기술을 습득하고 싶어하는 구조의 전문가를 위해 디자인된 2년 과정

의 결혼 요법이다. 그것은 가족요법(런던)의 학회와 상담센터, 더불어 공동 Birkbeck 칼리지(런던대학)과 함께 협조한다. 이것의 목적은 ㉠ 피 훈련자의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하여 ㉡ sysemic한 생각의 원리를 주기 위하여 ㉢ 가족과 결혼 요법의 여러 가지 이론적인 기초를 알기 위하여 ㉣ 가정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을 기술하고,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직접 감독하에 커플과 가족과 함께 참여하게 되며, 과정과 준비의 비디오 비평에 참가뿐만 아니라 동료와 감독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치료의 관찰을 하게 된다.

② Diploma in Counselling practice(DCP)

DCP 프로그램은 권위있는 상담 서비스를 위해 구조의 전문가에게 지식과 본질적 기술을 익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것은 참가자의 전문 발달과 개인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300여개의 상담 프로그램 안에 65%를 포함하는 것이 상담 연습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참가자를 도와주는 것이다;

- 상담의 개념을 확실히 해야 한다.
- 연습 모델로서 문제 해결 접근법을 이용한다.
- 카운슬링 기술을 기록하고, 식별하고, 보여주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 특정의 의뢰인 그룹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 live 감독을 통하여 연습기술을 배우게 된다.

③ Diploma in Clinical Supervision (임상감독)

이 프로그램은 사회 복지 전문가가 임상 일에서 상담 감독 연습을 전개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계획된다. 임상감독은 사회복지사와 카운슬러

가 그들의 일상 기능의 일부로서 책임지기로 예정되어 있는 작업이다. 그것은 매우 간단하고 매우 이론적이었다. 이 작업은 서비스의 높은 수준으로 직원들의 전문 성장을 추진하고, 직원들을 지지하기 위해 중요하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임상 감독의 여러 가지 형태가 그들의 관리 지식과 기술을 강화한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데 있다. 또한 직원, 기관과 의뢰인의 감독자에게 필요에 맞는 관리의 방법을 개발하는데 두고 있다.

㉠ 과정

이 200시간의 프로그램은 이론적인 지식과 기술 훈련을 제공한다. 그것은 매주 실시된다. 처음 2 학기는 임상 감독에 관한 문헌의 대규모적인 비평과 더불어 2개의 교육을 하는 주간일 것이다. 남아있는 세션은 live 감독의 여러 가지 형태를 포함하고 있으며, 임상 연습으로 나뉘질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특징은 참가자가 속해있는 기관에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과 내용, 구조가 유사한 프로그램을 모델화하여 이용해보고, 감독과 더불어 자신의 경험으로 널리 이용한다.

(3) Certificate Program

㉠ Certificate in Counseling Skills(상담기술의 증명서)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에게 있는 문제를 거들 수 있도록 기술을 익히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상담의 기술에 대한 특정의 주의와 함께 상담하는 개요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참가자를 도와주는 것이다.

㉠ 더 큰 자기 인식을 참가자의 가치의 효과와 문맥에 조언하는 것이다.

㉡ 카운슬링 기술을 기록하고, 식별하고, 보여주는 것이 중심이 된다.

㉢ 기술 연습을 통하여 상담하는 것을 개발해야 한다.

㉣ 참가자의 한계를 알고, 적당한 전문가와 커뮤니티 자원을 참조할 필요를 인정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영준. “조기유학 보내기가 겁난다.” 「뉴스메이커」 제 542호.
- 강현두·홍두승·강명구(1990). 공단 근로청소년의 문화수용과 문화의식. 사회과학과 정책연구11권 3호.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 경찰청 (2001), 경찰백서.
- 고재일(1985). 교도활동 강화를 위한 중학교 생활지도의 조직과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금주(199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 외국사례. 1999년 한국심리학과 심포지엄, pp. 57-74.
-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 「1999 귀국학생 교육담당 초등교육 연수」.
- 교육부(2003). 교육통계연보.
- 구중희(1995). 근로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심리적 특성 연구: 특히 산업사회사업적 접근. 강남대한국사회복지 2('95.12).
- 권이중(1992). 청소년과 교육병리. 서울: 양서원.
- 김병무(1990). 근로청소년 교육모형 개발에 관한 일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선희·김홍록(1998). 근로청소년의 근로현황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가 활동 지원 현황에 관한 고찰. 청소년학회.
- 김성언·노성호(1999). 청소년범죄추세분석: 1996-199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성이(1997). 청소년 일탈행위와 전문직의 역할, 학교폭력과 사회복지의 과제. 학교사회사업학회 제 1회 학술대회.
- 김순홍 외(2003). 청소년 생활 통계 연보 2003, (사)광주사회조사연구소.
- 김영갑(1983). 중학교 생활지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수·정영국(1996). 「탈북 귀순자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 서울:통일연수원.

- 김용웅(1985). 중학교생활지도의 조직과 지도체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호 외(1993). 학교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준호(1990).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공부압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준호·이동원 (1990), 범죄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외 (2003), 청소년비행론, 청목출판사.
- 김지선 (2002a), 4호처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 (2002b), 비행청소년을 위한 멘토링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진화 외(2002). 청소년 문제행동론. 서울: 학지사.
- 김한경(1994). 남녀 근로청소년의 성형태 비교연구. 성공회대학논총
- 김형수(2001). 등교거부 사례. 한국청소년 상담원 상담사례연구집 2001. pp.220-238.
- 김혜경(1998). “일제하 ‘어린이기’의 형성과 가족변화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홍록·정민영·이정원(2000). 건강한 여가사회를 위한 청소년 폭력대책방안.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 19권, pp. 55-67.
- 김홍주. “조기유학(유학이민)의 현황 및 국민의식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의 현실과 조기유학(유학이민)의 명암」. 2001년도 제 1차 KEDI 교육정책포럼.
- 노동부(1995). 근로청소년 관련법령집.
- 노동부(2003). 연소근로자보호 지침서.

- 노동부(각년도). 노동백서.
- 노동부(각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 노성호 외 (1994), 소년범의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 노성호(1992). 한국청소년 비행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대검찰청 (1975, 1976, 1981, 1982), 범죄분석.
- 류철원 외 (1995), 범죄경력에 관한 연구.
- 모지환(1997). 근로청소년복지정책연구: 노동복지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중앙 승가대. 불교와 사회복지 2('97.11).
- 문선화(1997). 영국에 있어서 비행청소년을 위한 사회내 처우에 대한 연구: 보호관찰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제 5호, pp. 9-46.
- 문화관광부 (2002), 청소년백」.
- 문화관광부(2002). 청소년 백서.
- 문화관광부(2003). 우리는 청소년.
- 박노자(2003). “‘국민’이라는 이름의 감옥: 구한말의 국민담론을 중심으로.” 강수돌 외. 「탈영자’들의 기념비」. 서울: 생각의 나무.
- 박명운(1993). 근로청소년들의 흡연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시내 일부 직업훈련생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2('93.3).
- 박선경(1998). “탈북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 박종철·김영윤·이우영(1996).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박창남 외(2001). 중도탈락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 한국 청소년개발원 p.134, 재구성.
- 박창남(1999). 실업계 고졸청소년의 직업적 성취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

- 년개발원.
- 박효정 외(2002).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Ⅱ)-중·고등학교 생활지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2-3.
- 백형기(1999). 빼돌게만 나가는 18세 휴학생과 그 어머니.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사례연구집 1999. pp.155-165.
- 법무연수원 (1996, 1998, 2000, 2001, 2002), 범죄백서.
-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 창립총회」. 1999.11.3.
- 서울특별시 자녀 안심 운동 서울협의회(2000). 청소년 문제행동의 이해. 2000년도 보고서.
- 서정배(1999).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지원문제.” 경남대 북한대학원 세미나.
- 선한승(1995). 「북한 탈북 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송연경·정영순(2001). 청소년의 원활한 고용진입을 위한 학교세팅에서의 업교육 강화 방안 연구: 한국과 미국 비교. 한국사회복지학(45).
- 순천용담초등학교. 「교육부 지정 시범학교 운영보고서(2/2): 귀국학생의 학교생활 조기 적응과 해외 경험 살리기」. 1999. 11. 17.
- 신종순(1991). 고등학생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용철(1992). 심리적 성장환경과 자아개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심용철·최광현. “비행청소년의 자아 개념연구”, 『행동과학연구』 8:275-282.
- 안종현(1993). 중등학교 학교상담 실태와 그 실효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국선, 장성숙(2001).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특성 연구: 야간실업고등학교 근로청소년 대상.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3권 제3호.

엄경남(2001). “탈북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심리·사회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 논문.

오혜정(1995).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서강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오혜정(1999). “남과 북을 이어주는 북한이탈주민.” 통일과 가톨릭 사회복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21세기 가톨릭 사회복지 심포지엄 자료집.

원호택(1993). 학교상담의 전문화를 위하여. 카운슬러 협회보, 19(1), 1-3.

유정이(1997). 한국학교상담 형성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유홍준외(1999). 학교생활 요인과 학교 청소년 비행. 사회과학 제38권 제1호(통권 제48호), 123-150.

윤덕룡·강태규(1997). “북한이탈주민의 실업과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통일한국에서 예상되는 사회갈등과 그 대책」.

윤여각 외(2002). 학업중단 청소년 및 대안교육 실태 조사. 한국 교육개발원 연구보고 CR 2002-9.

윤여상(1994).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 귀순자 수기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여상(2002). “재중 탈북 청소년 인권실태와 대처방안.” 북한인권 및 남북인도적문제: 현황과 대책 비공개 워크숍.

윤여상(2002).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와 과제」 통일교육원, 2002.10.18.

윤여상(2001).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부적응」. 서울: 세명.

윤용규 외(2000). ‘우리나라 소년사범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일고찰’, 형사정책연구 제11권 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인진(1999). “소수자 연구 시각에서 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 과정.” 경남대 북한대학원 학술회의발표논문.
- 윤철경·정희옥(2001). 유럽 국가의 청소년 정책.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윤철경·정희옥·박병식·조아미·Anna Hui·Ju Qing(2001). 미국·일본·중국·홍콩의 청소년정책.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윤희미(1999). 청소년 임신·출산의 경향과 사회적 대책. 한국아동복지학, 제 8호, pp. 161-186.
- 이경은(1998). 학교생활 부적응 유형과 요인에 따른 학교사회 사업서비스 요구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동원(2000). “청소년 범죄피해실태의 변화 - 1990년과 1999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8:267-293.
- 이미나(1991). 청소년의 교육과 직업성취. 한국청소년연구(4).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미나(2001). “한국교육의 현실과 조기유학.” 한국교육개발원. 「2001년도 제1차 KEDI 교육정책포럼: 한국교육의 현실과 조기유학(유학이민)의 명암」.
- 이성식(1996). 처벌의 낙인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순래 외(1995).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시형(1997). 학교폭력 실태와 그 예방. 대한의사협회지, 40(10), 1268-1273.
- 이영석. 다리공동체(2003). “북한이탈주민민간단체협의회 아동청소년분과 세미나 토론.” 2003.10.10.
- 이영주(2003). 하늘꿈학교, 북한이탈주민민간단체협의회 아동청소년분과 세미나 토론. 2003.10.10.
- 이윤선(2003). “귀국학생의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 이윤호(1994). 미국에 있어서의 청소년비행자를 위한 거주 및 지역사회

- 봉사의 추세. 교정연구, 제 4권, pp. 127-162.
- 이정우·오연옥(1995). 근로청소년(여성)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95.12).
- 이종원 외(2001). 「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연구」, 한국청소년
개발원 연구보고 01-R 15.
- 이종원·임성택·최원기·최종현·심진예(2001). 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연구 - 기초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철우(1996). "탈북귀순자의 한국사회적응력 제고력에 관한 정책적 대
응방안 연구." 통일원 신진학자 지원연구.
- 이형득(1993a). 학교상담의 전문화와 대중화. 상담과 지도, 제28호.
_____(1993b). 학교상담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카운슬러 협회보, 19(2),
1-3.
- 이형삼. 귀국학생들 2: 파란 눈 친구, 선생님이 그리워요, 「NEWS+」
제77호, 4월 3일자.
- 이호중(2000) '회복적 사법: 이론과 법이론적 쟁점들' 국제형사학 심포지움
발표논문.
- 임영식(1997). 청소년기 우울의 특징과 문제행동. 사회과학연구 제10집,
1-23,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임용우(1992). 학교상담의 과제와 발전방향. 학교경영, 5(2).
106-109.
- 임은미 외(1999). 사이버상담 운영 보고서, 한국 청소년 상담원.
- 장석민(2002).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진로 문제와 지도 대책」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청소년 상담문제 연구보고서 46,
pp 51-82.
- 장선규(1995). 학교상담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국민학교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병제(1993). 「사회심리학」. 서울: 경문사.

- 전우택(1995). 「통일후 예상되는 북한주민들의 통일사회 적응에 대한연구」. 통일원 95년도 연구용역 과제.
- 전우택·김명세·박중규(1997). “북한이탈주민들의 주요 사회 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통일한국에서 예상되는 사회갈등과 그 대책」.
- 전정태(1997). 청소년 복지의 발전 방향: 직업 근로청소년을 중심으로. 건전사회교육연구 제2권 제1호 제2집.
- 정영순(2002). 한국과 영국의 청소년 고용증진정책 비교연구: 직업훈련 중심. 한국사회복지학(49).
- 정지민(1998).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공격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진경(2003). “문화간 훈련 이론의 개괄.” 남북문화통합 워크숍 발제문. 2003.5.9.
- 조완제. “조기유학 보내기가 겁난다.” 「뉴스메이커」 542호.
- 조종희(1990). 학교상담활동의 활성화 방안.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홍식(1993). 미국 청소년복지정책의 현황과 성격. 서울대학교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제 5권, pp. 141-167.
- 주은희(2001). “청소년 친구관계와 가족.” 손승영 외. 「청소년의 일상과 가족」. 서울: 생각의 나무.
- 차경수(1998). “다문화시대의 귀국학생 국내교육 적응방안.” 「귀국학생 조기적응 교육 및 국제성 유지 신장 방안」.
- 참실위 실업교육분과(1993). 근로청소년 교육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나. 월간 중등우리교육(44).
- 청소년 폭력예방재단(1996). 학교폭력,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 한울림.
- 청소년대화의 광장(1992). 청소년 일상생활 실태조사, 체육청소년부 청소년대화의 광장.

- 청소년보호위원회(2003).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소년보호위원회.
- 최영신(2001). 청소년 폭력범죄자 재활 프로그램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윤진(1998). 핀란드의 청소년 정책. 한국청소년연구, 제27호, pp.125-145.
- 최인섭·원혜옥·강은영(2000). 외국의 가출청소년 대책.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최화순(1990). “해외 귀국아동의 적응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03). 경제활동인구연보.
- 통계청(2003). 장래인구추계.
- 통일부(1998).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분석결과보고서」.
- 통일부(1999).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 운영 개선방안」.
- 통일원(1994).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사회통제」. 서울:통일원.
- 통일원(1994). 「인권관련 법규 및 동·서독 사례연구」.
- 한국교육개발원(1994). 「내가 받은 북한교육」.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여성개발원(1985). 한국소년 비행의 실태에 관한 연구: 소년원생을 중심으로.
- 한국청소년교육연구회(2000). 학교부적응 실태조사 및 적응 프로그램.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가석방의 실태와 효율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강력범죄에 대한 선고형량이 재범방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재산범출소자의 재범에 관한 연구.
- 한준상(1995). 학교 스트레스: 시험제도의 개혁.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홍혜영(2000). 청소년 면접상담사례 ‘학교부적응으로 고민하는 청소년’. 서울청소년상담연구, 제2권, 제1호, 83-102.
- 황응연(1994). 교육-생활지도와 인간교육. 상담과 지도, 제29호 24-41.

- 황정규(1990). 한국학생의 스트레스 측정과 형성. 사대논총 4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 YMCA(200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 Agnew, R. (1985), 'Social control theory and Delinquency: A longitudinal test', *Criminology* 23:47-61.
- Akers, R. (1985), *Deviant Behavior: A Social Learning Approach*, 3rd ed., Belmont, CA: Wadsworth.
- Allison, P. D. (1984), *Event History Analysis: Regression for longitudinal event data*,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Asarnove, H. R., & Horton, A. A. (1990). Coping and stress in families of child psychiatric inpatients: Parents of children with depressive and schizophrenia spectrum disorder.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1, 145-157.
- Baird, S. C., G. M. Storrs & H. Connelly (1987), *Classification of Juveniles in corrections: A model systems Approach*, Washington, D.C.: Arthur D. Litte.
- Barnes, G. M., Farrell, M. P., & Banerjee, S. (1995). Family influences on alcohol abuse and white Americans. In G. M. Boyd, J. Howard, & R. A. Zucher(Eds.), *Alcohol problems among adolescents*, Hillsdale, NJ: Erlbaum.
- Blumenthal, S. J. & Kupfer, D. G. (1998). Overview of early detection and treatment strategies for suicidal behavior in young peopl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7, 1-23.
- Blumstein, A., J. Cohen, J. A. Roth & C. A. Visher (1986), *Criminal Carrers and Carrer Criminals*. Vol. (1),

- Washington, D.C. : National Academy Press.
- Britannica(1994).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 10.*
By Encyclopaedia Britain Inc.
- Buckland G. & A. Stevens (2001), "Review of Effective
Practice with young Offender in Mainland Europe",
European Institution of Social Service, Univ. of Kent at
Canterbury.
- Bursik, R. J. Jr. (1980), 'The dynamics of specialization in
Juvenile offenses', *Social Forces* 58(3): 851-864.
- D. Perluss and J. F. Hartman(1986). "Temporary Refugee:
Emergence of a Customary Norm."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6.*
- Datesman, S. K. & M. Aickin (1984), 'Offense specialization
and escalation among status offenders', *Criminology*
:1246-1277.
- Dielman, T., Schullenberg, J., Leech, S., & Shope, J. T. (1992).
Reduction of susceptibility to peer pressure and alcohol
use/misuse through a school-based prevention program.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Washington, DC.
- Dishion, T. J., Andrew, D. W. & Crosby, L. (1995). Antisocial
boys and their friends in early adolescence,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quality and interactional process, *Child
development*, 66, 139-151.
- Dodge, K. A., Bates, J. E. & Pettit, G. S. (1990). Mechanism in the
cycle of violence, 250, 1678-1683.

- Dryfoos, J. G. (1990). Adolescent at risk: Prevalence and prevention. NY: Oxford University Press.
- Evans, R. C., Levy, L., Sullenberger, T., & Vyas, A. (1991). Self Concept and Delinquency: The on-going Debate.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16(3-4), 59-74.
- Farrington, D. P., H. N. Snyder & T. A. Finnegan (1988), 'Specialization in Juvenile court careers', *Criminology* 26 (3):461-485.
- Fitt, W. H., & Hammer, D. 1969. The self concept and delinquency, Nashville :Mental Health Center (Research Monograph No. 1).
- Garmezy, N. (1985). Stress-resistant children: The search for protective factors. In J. E. Stevenson (ed.), Recent research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pp.213-233).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Book Supplement No. 4).
- Gerler, Edwin R. & Anderson, Ronald F. (1986). The effects of classroom guidance and counseling programs. Alexandria, VA: *American Association for Counseling and development*.
- Gottfredson M. R. & T. Hirschi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 : Stanford Univ. Press.
- Grasmick, H. G. C. R. Tittle, R.J. Burshik, Jr. & B. J. Arneklev (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1): 5-29.
- H. F. Shaffer(1956). *The Psychology of Adjustment*. Houghton Mifflin co.

- H. J. Eysenk(1959). *Handbook of Abnormal Psychology*. New York: Basic Books.
- Harold Kerbo(1982). "Movements of Crisis and Movements of Affluence: A Critique of Deprivation and Resource Mobilization Theori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26, No.4, December.
- Hawkins, J. D., Catalano, R. F., & Miller, J. (1992).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alcohol and other drug problems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Implications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2, 64-105.
- Hawkins, J. D., Farrington, D. P. & Catalano, R. F. (1998). Reducing violence through the schools. In D. S. Elliotts, B. A. Hamburg & K. R. Williams(Eds.). *Violence in American schools: A new perspectives*, 188-21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wkins, J. D., Kosreman, R., Catalano, R. F., Abbott, R. D. & Hill, K. G. (1996). Promoting academic success and preventing crime in urban America: six year follow-up effects of the Seattle Social Development Project.
- Heckman, J. (1981), 'Statistical models for discrete panel data', in C. F. Manski and D. McFadden (eds.), *Structural Analysis of Discrete data with Econometric Applications*, Cambridge, Mass.: Mit Press.
- Hirschi, T. & M. Gottfredson (1993), 'Commentary: Testing the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1):47-54.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 Huff, C. R.(1996) The Criminal behavior of gang members and non gang at risk youth In C. R. Huff et al *Gangs in America* (2nd ed. pp75-102)Thousand Oaks, Cal, Sage.
- Hughes, S. O., Power, T. G., & Francis, D. J. (1992). Attachment, autonomy, and adolescent drinking: Differentiating abstrainers, experimenters, and heavy user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Washington, DC.
- Idem, M. N. (1991). Youth needs: contextual variations and approaches to change. Evans, K. and Haffenden, I. G.(Ed.), *Education for young adults: International perspectiv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87-94.
- Jessor, R. (1991). Risk behavior in adolescence: A psychosoci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actio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2. 597-605.
- John T. Doby, Alvin Boskoff, and William Pendletoe. *Sociology: The Study of Man in Adaptation* (Lexington, Mass.: D. C. Heath and Co., 1973).
- Keane, C., P. S. Maxin & J. J. Teevan (1993), 'Drinking and Driving, self-control, and gender: Testing a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1): 30-46.
- Ketterlinus, R. D., & Lamb, M. E. (1994).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Issues and Researc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Klein, M. W. (1984) 'Offense specialization and versatility among juvenile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24(2): 185-194.
- Krisberg, B. et. al. (1995), *Guide for Implementing the Comprehensive strategy for serious, violent and chronic juvenile offenders*, U. 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Lab, S. P. (1984), 'Patterns in juvenile misbehavior', *Crime & Delinquency* 30(2):293-308.
- Le Blanc, M. & M. Freshette (1988), *Male Criminality Activity from Childhood through Youth: Multileve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 New York: Spriger-Verlag.
- Lee, W. (1993). *Social Resources, Social Networks, and Juvenile Delinquency: An Examination of the Strength of T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 Lemert, E. (1972), *Human Deviance, Social Problems and Social Control*. 2nd ed., Englewood Cliffs, NJ:Prentice-hall.
- Loeber Stouthmer-Lorber, M. (1998). Development of juvenile aggression and violence : some common misconceptions and controversies, *American Psychologist*, 53, 242-259.
- Lyntton, H. (1995). Child and family predictors of conduct disorder and criminality.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
- M. Gordon.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The Role of Race, Religion and National Origin*. Oxford Uni. Press. 1964.

- Massey, J. & M. Krohn (1986),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an integral social process model of deviant behavior', *Social Forces* 65:106-134.
- McCord, J. (1980), 'A longitudinal perspective on patterns of crime,' *Criminology* 19(2):211-218.
- Meier, R., S. Burkett and C. Hickman (1984), 'Sanctions, peers and deviance: preliminary models of social control process', *the sociological Quarterly* 25:67-82.
- Morrill, Weston H. Oetting, E. R., & Hurst, James C. (1980). the Methods of intervention. In W. H Morill, J.C, Hurst, E. R. Oetting, & Others(Eds), *Dimensions of intervention for student development*. New York: Jhon Wiley & Sons.
- Nagin, D. S. & D. P. Farrington (1992), 'The onset and persistence of offending', *Criminology* 30(4):501-524.
- Nagin, D. S. & D. P. Farrington (1993), 'The stability of criminal potential from childhood to adulthood', *Criminology* 30(2):235-260.
- Nagin, D. S. & R.. Paternoster (1991), 'On the relationship of past to future participation in delinquency', *Criminology* 29(3): 163-189.
- Osborn S. G. & D. J. West (1978), 'The effectiveness of various predictors of criminal careers', *Journal of Adolescence* : 101-117.
- Osgood D. W., L. D. Johnston, P. M. O'Malley and J. G. Bachman (1988), 'The generality of deviance in late

-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Feb.): 81-93.
- Petersen, A. C. (1988). Adolescent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9, 583-607.
- Polakowski, M (1994), 'Liking self and social control with deviance: Illuminating the structure underlying a General theory of Crime and its relation to deviant activit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0: 4-77.
- Polk, K. (1975), 'Schools and the delinquent experienc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315-388.
- Quinney, R. (1975), *Criminology: Analysis and Critique of Crime in America*, Boston: Little, Brown.
- R. Bennett. *Aging, Isolation and Resocialization*.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1980.
- Reasoner(1994). Self-esteem as an antidote to crime and violence.(ERIC Document ED 373281)
- Rich, Yisrael (1987), The potential contribution of school counseling to school integra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5, 495-498.
- Rowe, D. C. W. Osgood and ... A. Nicewander (1990), 'A latent trait approach to unifying criminal careers', *Criminology* 28: 237-270.
- Rubenstein J. L., Halton, A., Kasten, M.A., Rubin, C. & Stechler, G. (1998). Suicidal behavior in adolescence: Stress and protection in different family contex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8, 274-284.

- Rudolf H. Moos, PH. D. 1987. Correctional Institutions Environment Scale Review Set: A Social Climate Scale Second Edition,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Inc, USA.
- Rutter, M. (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316-331.
- Santrock, J. W. (1996). *Adolescence*(6th ed.); An introduction. Brown & Benchmark.
- SDDPRK.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econd periodic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s 16 and 17 of the Covenant" 2002.4.9.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1990/6/Add35*.
- Sellin, T. (1931), "The Basis of Crime index, *Journal of Criminal Law*," *Criminology & Police Science* 22.
- Seydlitz, R. (1993). Complexity in the relationships among direct and indirect parental controls and delinquency. *Youth and Society*, 24, 243-275.
- Shannon, L.W., J. L. McKim, J. P. Curry and L. J. Haffner (1988), *Criminal Career Continuity*, New York, NY: Human Sciences Press.
- Shover, N. (1985), *Aging Criminals*, New York:Elsevier.
- Smith, D. R. & W. R. Smith (1984), 'Delinquent career-lines: A conceptual link between theory and juvenile offenses', the *Sociological Quarterly* 25:155-172.
- Smith, D. R. & W. R. Smith (1984), 'Patterns of delinquent careers: An assessment of three perspective', *Social Science Research* 13:129-158.

- Sprinthall, N. A., & Collins, W. A. (1995). *Adolescent Psychology; A developmental view*(3rd ed.). McGraw-Hill, Inc.
- Steinberg, L. (1993). *Adolescence*(3rd ed.). McGraw-Hill, Inc.
- Sykes, G. M. & F. T. Cullen (1992), *Criminology*(2nd. ed.), Fort Worth: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 Tontodonato, P. (1988), 'Explaining rate changes in delinquent arrest transitions using event history analysis', *Criminology* 26(3):439-459.
- Tuma, Margaret R. (1974). *Implementing a program in developmental guidance and counseling*.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2, 376-381.
- UNRISD(1987). *Social and Cultural Conditions and Prospects of Guatemalan Refugees in Mexico*. UN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 UNRISD(1983). *Sustaining Afghan Refugees in Pakistan Report on the Food Situation and Related Social Aspects*.
- Viney, Linda L., Clark Alex M. & Benjamin, Yvonne N.(1986). *A general systems approach to the patient, hospital staff, family, and community: Implications for health care services*. *Behavioral Science*, 31, 239-252.
- Walgrave, L. & J. Mehlbye (1998), "Confronting Youth in Europe", *Juvenile Crime and Juvenile Justice*
www.afk.dk/eng98/juvenile.htm
- Wells, L. E. & J. H. Rankin.(1983). "Self-concepts and a Mediating Factor in Delinquency." *Social Psychological Quarterly* 46:11-22.

- Wilson, J. J. and J. C. Howell (1993), A Comprehensive strategy for serious, violent and chronic Juvenile Offenders: Program Summary, U. 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Withr, B.S., Coyne, A. & Adams, M. (1991). A school counseling program that reduces dropout rate. School Counselor, 39, 131-137.
- Wolfgang, M. E., R. M. Figlio and T. Sellin (1972), Delinquency in a Birth Cohort, Chicago, IL: Univ. of Chicago Press.
- Wolfgang, M. E., T. P. Thornberry and R. M. Figlio (1987), From boy to Man, From Delinquency to Crime, Chicago, IL: Univ. of Chicago Press.
- 佐藤進編(1976)、児童問題講座3『児童の権利』, 東京:ミネルヴァ書房.
- 渥美雅子(1983), 『子どもたちの法律問題』, 東京:岩波書店.
- 文部省(2003), 『2003年版青少年白書』, 東京:文部省.
- 臨時行政調査會(1964), 『青少年行政の改革に関する意見』, 東京:臨時行政調査會.
- 津田玄兒(1993), 『子どもの人権時代』, 東京:日本評論社.
- 野口博通編(1984), 『青少年教育の實踐』, 東京:全日本社會教育連合會.
- 全日本社會教育連合會 編(1982), 『青少年非行防止への道』, 東京:全日本社會教育連合會.

青少年の非行データと対策

http://www.jp-health.com/safety/y_juvenile.index.html

澤登俊雄・齋藤豊治(1998), 『少年司法と適正手続』, 東京:成文堂.

青少年育成に関する有識者懇談會(2003), 『青少年の育成に関する

有識者懇談會報告書』,

<http://www8.cao.go.jp/youth/suisin/houkoku/yhoukoku.pdf>

'Comparison of Country Profiles on the Situation of Youth'. [Online].

[2003. 5. 16 인용]. Available form Internet

:<<http://esa.un.org/socdev/inyin/compare5.asp>>

http://152.99.19.110/data_room/행정통계자료/흡연현황.html,

2002년도 청소년유해환경 접촉실태조사, 청소년보호위원회[편]

발행

http://152.99.19.110/data_room/행정통계자료/긴급전화이용현황.html, 한

국금연운동협의회(2002). 2년주기 통계자료. “중·고등학생 흡

연을 변화”.

2003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03-R01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
-청소년 의복문화와 소비-(맹영임 · 구정화)
- 03-R02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I
-청소년 음식문화와 소비-(조혜영 · 김선아)
- 03-R03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II
-청소년 소비생활 문제와 대책-(윤철경 · 조아미 ·
백지숙 · 유혜림)
- 03-R04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 -정책제안 요약집-(임지연)
- 03-R05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 실태연구(이종원 · 유승호)
- 03-R06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김정주 · 김용대 · 성기원)
- 03-R07 청소년의 사이버커뮤니티 참여 및 이용실태 연구
(황진구 · 권태희)
- 03-R08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 방안 연구(최원기 · 전명기 · 이주연)
- 03-R09 중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보호대책 연구
(전경숙 · 노재봉)
- 03-R10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 폭력 대책 연구
(이민희 · 임영식 · 이진숙)
- 03-R11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길은배 · 문성호)
- 03-R12 청소년 리더십 함양을 위한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
모델 개발(우정자 · 김은경 · 김형주)
- 03-R13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김영지 · 이용교 · 김세진)

- 03-R14 청소년 정보소의 실태 조사 연구(김경준·최선희)
- 03-R15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조사개요보고서
(이경상·김진호·오해섭·김희진)
- 03-R16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과 함양방안 연구(김선미·남경희)
- 03-R17 가족복지 가출청소년들의 귀가요인 분석 및 가출청소년지도 방안 모색(방은령)
- 03-R18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 정책적 함의(문성호)
- 03-R19 지방정부의 청소년예산결정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김영호)
- 03-R20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유형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청소년의 자아통제 및 부모감독의 중재효과(김희화)
- 03-R21 청소년 진로개발을 위한 방향성 탐구(최동선)
- 03-R22 청소년의 사이버일탈의 원인에 관한 경험연구(이성식)
- 03-R23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지원 방안(노혁)
- 03-R24 거주지역환경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전신현)
- 03-R25 폭주청소년의 위험행동과 예방에 관한 연구(김문섭)
- 03-R26 자살 사이트의 생성 및 이용, 그리고 운영: 심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사례분석(문성원)
- 03-R27 부모를 위한 청소년지도 가이드(신인순 외)
- 03-R28 한·중·일 청소년 정책비교 연구(이종원)
- 03-R29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컴퓨터 활용과 진로선택 경향 연구(김선미)
- 03-R30 2003전국청소년 자원봉사 주관사업 우수활동사례집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1 2003 대한민국 청소년봉사상 우수활동사례집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2 자원봉사 선진지 연수보고서(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3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메뉴얼(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4 일본자원봉사 지원센터 활동사례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5 한중정책세미나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6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수립 공청회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7 청소년 삶의 질 향상 세미나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8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 연구(김영한·서정아)
- 03-R39 학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이재분·박효정·현주)
- 03-R40 일탈·범죄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김은경·이동원)
- 03-R41 근로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손유미·김상호·조정아)
- 03-R42 귀국 및 탈북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조한범·이금순·이우영·전효관)
- 03-R43 여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이춘화·윤옥경)
- 03-R44 서현청소년문화센터 위탁운영 비용산정에 관한 연구
(김영한·김진호·김갑성)
- 03-R4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연구(길은배·한만길·최영표·강영혜·오해섭·김학성)
- 03-R46 학업중단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분석 및 취업지원 방안
(이경상·조혜영·박창남)
- 03-R47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교육시설 특성화방안
(김정주·김진호·소병조)
- 03-R48 월드컵현상을 통해 본 신세대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과
청소년정책의 과제(이종원·이경상·김종길)

- 03-R49 청소년 책읽기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이춘화·서정아·김상헌)
- 03-R50 선진국형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
(김영지·전경숙·김민)
- 03-R51 청소년정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9회 청소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수상집 모음집-
(황진구·강명숙·임지수)
- 03-R52 2003특성화 수련거리개발 [3]-청소년마을체험
(윤철경·이은경)
- 03-R53 2003특성화 수련거리 개발 [6]-국제언어캠프
(김선미·김호숙)
- 03-R54 2003특성화 수련거리 개발 [7]-환경음식만들기
(서정아·최경학)
- 03-R55 청소년 단체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맹영임·
이광호·김민·임연희)
- 03-R56 연령대별 외국청소년 정책비교 및 정책 대안
(윤철경·이상오·황성하·서수경)
- 03-R57 청소년 개발 지표개발 및 활용방안(김진호·송병국·
임영식·김진화·오해섭·윤명희·정효진)
- 03-R58 선진 각 국의 청소년 보호체계 사례조사(우정자·
김문섭·최종혁)
- 03-R59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 장기발전계획 수립연구
(함병수·임지연·김종두)
- 03-R60 청소년 국제교류 정보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조혜영·최원기·임지연)
- 03-R61 청소년수련시설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마련
(황진구·김경준·이춘화·최창욱)
- 03-R62 인천시 청소년수련관 운영방식 연구(김경준·함병수·
김영한·최창욱)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3-01

연구보고 03-R 38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 연구

인 쇄 2003년 12월 26일
발 행 2003년 12월 30일
발 행 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 행 인 권 이 중
등 록 1993. 10. 23 제21-500호
인 쇄 처 대산문화사
전화 (02) 2278-0958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2188-8844(사무국)

ISBN 89-7816-501-X(93330)

공 백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 연구

연구책임자: 김 영 한(한국청소년개발원)

공동연구자: 이 춘 화(한국청소년개발원)

서 정 아(한국청소년개발원)

김 은 경(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 한 범(통 일 연 구 원)

이 재 분(한국교육개발원)

손 유 미(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본 보고서는 「인문사회연구회 2003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인문사회연구회 소관 5개 국책연구기관이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6
3. 연구방법	7
II. 학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대책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내용	13
3. 연구방법	14
4. 연구결과 및 시사점	15
5. 효과적인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 대책	32
III. 근로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대책	43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45
2. 근로청소년 현황 및 정책	47
3. 근로청소년 근로 및 문제행동 실태 조사 결과	53
4. 근로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대책 방안	65
IV. 탈북·귀국청소년 문제행동 예방대책	73

1. 머리말	75
2. 탈북청소년	76
3. 귀국청소년	99
 V. 일탈·범죄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대책	121
1. 연구목적	123
2. 연구내용 및 방법	123
3. 주요 조사결과	125
4. 조사결과에 드러난 정책 시사점	129
5. 국제적 정책동향 : “회복적 사법”의 등장	135
6. 한국 청소년 재범방지를 위한 정책제언	141
 VI. 여자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대책	151
1. 연구개요	153
2. 조사결과	154
3. 예방대책	163
 VII. 외국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193
1. 미국	195
2. 일본	206
3. 독일	232
4. 스웨덴	237

5. 핀란드	238
6. 덴마크	242
7. 영국	243
8. 프랑스	248
9. 호주	251
10. 싱가포르	267
참고문헌	274

표 목차

<표 II-1> 흔히 발생하는 학교청소년 문제행동 (순위별 결과)	18
<표 III-1> 규범적 문제행동 범주와 단위행동	58
<표 IV-1> 초, 중, 고 유학자수 및 유형별 비율	107
<표 IV-2> 학교급별 연도별 귀국학생 귀국 현황	109
<표 V-1> 조사대상자의 기관별 분포	125
<표 V-2> 조사대상자의 비행·범죄관련 특성	126
<표 V-3> 조사대상자의 문제행동 경험	128
<표 V-4> 미국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종합적 전략	139
<표 VI-1> 문제행동 경험여부	159
<표 VI-2> 문제행동 경험정도	160
<표 VII-1> 청소년시책관계성청의 사무분담	207
<표 VII-2> 아동에 관한 주요한 법률	215

그림목차

[그림 III-1] 규범적 문제행동의 허용도	59
[그림 III-2] 문제행동 경험 비율	68
[그림 VII-1] 청소년정책관계부처의 연락체제	206
[그림 VII-2] 핀란드의 청소년관련 행정조직	239